

the 1990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who are under 15 years of age is expected to increase by 1.5 billion.

As the world's population grows, the demand for food and other resources will increase. The world's population is expected to reach 9 billion by the year 2050. This means that there will be 9 billion people competing for the same resources that we have today. This is a huge challenge for the world's leaders and citizen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to address this challenge is by increasing the world's food production. This can be done by using more efficient farming techniques, such as precision agriculture, and by increasing the world's food storage capacity. This will help to ensure that there is enough food to feed the world's population.

Another important way to address this challenge is by reducing the world's waste. This can be done by recycling more materials, such as paper and plastic, and by reducing the amount of food that is thrown away. This will help to reduce the world's demand for resources and will help to protect the environment.

Finally,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world's resources are distributed fairly. This means that everyone should have access to the same resources, regardless of their location or income. This will help to reduce poverty and will help to ensure that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to live a good life.

There are many challenges facing the world's population, but there are also many opportunities. By working together, we can find the solutions we need to ensure that the world's population is able to thrive in the 21st century.

As the world's population grows, the demand for food and other resources will increase. The world's population is expected to reach 9 billion by the year 2050. This means that there will be 9 billion people competing for the same resources that we have today.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to address this challenge is by increasing the world's food production. This can be done by using more efficient farming techniques, such as precision agriculture, and by increasing the world's food storage capacity. This will help to ensure that there is enough food to feed the world's population.

Another important way to address this challenge is by reducing the world's waste. This can be done by recycling more materials, such as paper and plastic, and by reducing the amount of food that is thrown away. This will help to reduce the world's demand for resources and will help to protect the environment.

Finally,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world's resources are distributed fairly. This means that everyone should have access to the same resources, regardless of their location or income. This will help to reduce poverty and will help to ensure that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to live a good life.

There are many challenges facing the world's population, but there are also many opportunities. By working together, we can find the solutions we need to ensure that the world's population is able to thrive in the 21st century.

As the world's population grows, the demand for food and other resources will increase. The world's population is expected to reach 9 billion by the year 2050. This means that there will be 9 billion people competing for the same resources that we have today.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to address this challenge is by increasing the world's food production. This can be done by using more efficient farming techniques, such as precision agriculture, and by increasing the world's food storage capacity. This will help to ensure that there is enough food to feed the world's population.

Another important way to address this challenge is by reducing the world's waste. This can be done by recycling more materials, such as paper and plastic, and by reducing the amount of food that is thrown away. This will help to reduce the world's demand for resources and will help to protect the environment.

Finally,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world's resources are distributed fairly. This means that everyone should have access to the same resources, regardless of their location or income. This will help to reduce poverty and will help to ensure that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to live a good life.

2024

전역간부 안내서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해당 책자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역간부들의 전역 전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 및 전직준비에 대하여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책자 안내사항 이외에 개인별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제도별로 각 군 규정이 상이하며, 연중에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사오니,
실제 관련 제도를 활용하실 때에는 관련 문의처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홈페이지 정보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 간 사

자랑스러운 국군 간부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위국헌신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임무를 완수하고, 명예로운 전역을 앞둔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간부 여러분들께서 튼튼한 국방태세 완비를 위해 쏟으신 열정과 헌신의 모습은 오래도록 우리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며, 우리 국군이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선진 강군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여 제2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전역 전후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고 관계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역간부안내서를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최신화하여 「2024 전역간부안내서」를 새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전역간부안내서가 여러분들께서 청춘을 바친 군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고, 국방부는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장병 여러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 1. 1.

국방부 보건복지관 고위공무원 김은성

제1편 멋진 군 생활, 명예로운 마무리!

제1장 전역 전·후 체크리스트	17
------------------------	----

제2장 전역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부대에 반납할 사항	18
2. 전역증 신청	18
3. 삼정검 소지 허가 신청(장성 전역자)	19
4. 근로소득세 정산 확인	19
5. 퇴직급여 청구 및 대부 상환	20
6. 명예전역 신청	25
7. 명예진급 신청	26
8. 전직지원 및 구직등록 신청	27
9. 퇴직자 정부포상 신청	31
10.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신청	32
11. 국방대학교 KNDU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신청	33
12. (참고) 전역 전 보안교육 및 준수사항	34
13. (참고) 전역식 행사	35
14. (참고) 전직지원기간 중 유의사항	36

제3장 전역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록(훈장 수훈자)	38
2.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등록	39
3. 제 퇴직금·재해보상 급여 수령	40
4. 맞춤형 복지제도(실손보험 전환) 사용	41
5. 주민등록 전입신고, 건강보험 변동 신청	42
6. 퇴직자 재산변동 신고	43
7. 군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44
8.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이사화물 수송비 수령	45
9. 종합소득세, 연금소득세 신고	46
10. 전직지원금 신청	47

제2편 내 일(My Job)이 있는 삶을 위하여!

제1장 전직! 새로운 출발

1. 전직지원교육 개념	51
2. 전직지원 사업 안내	52
3. 중·장기복무자 전직지원 체계 (중:5년 이상~10년 미만/장:10년 이상)	65
4. 단기복무자(5년 미만) 전직지원 체계	66

제2장 취업지원기관별 지원사항

1. 국방부(국방전직교육원)	67
2. 국가보훈부	71
3. 고용노동부	74
4. 군관련 취업지원기관 문의처	75

제3장 취·창업 정보

1. 취·창업 정보제공 주요 사이트	76
2. 군 내외 주요 일자리	77

제4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1. 목 적	82
2. 관련 법령	82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82
4.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및 행위제한	87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모든 직급에 해당)	88

제3편 제대군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알아보기!

제1장 연금관련 제도

1. 군인연금 급여제도	93
2. 군인 재해보상제도	106
3. 공적연금 연계제도	109
4. 군인분할연금(일시금) 제도	112

제2장 군 복지시설 및 군 병원

1. 휴양시설	114
2. 회관 및 호텔	115
3. 체력단련장	116
4. 영외마트	118
5. 군 병원	122

제3장 군인공제회

1. 저축제도	124
2. 대여제도	131
3. 복지제도	132

제4장 국가보훈부 제공 혜택

1.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	138
2. 중기복무(5년 이상 ~ 10년 미만) 제대군인	141
3. 국립묘지 안장 및 신청 절차	142

제4편 예비군으로서의 새로운 역할!

제1장 예비군 제도 및 동원령 선포 시 행동요령

1. 예비군 제도	147
2. 동원령 선포 시 행동요령	152

제2장 예비역 단체 안내

1. 재향군인회	154
2. 성 우 회	156
3. 예비역 대령연합회	157
4.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158
5.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	159
6.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160
7. 육군발전협회	162
8. 해군발전협회	163
9. 공군발전협회	164
10.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65

제5편 전직지원 길라잡이 Q&A

제1장 전직지원 안내

1. 진로설정 안내	174
2. 전직지원 기간 안내	176
3. 전직지원기간 중 기업 유급 현장연수 제도.....	180

제2장 전직지원 교육 및 취·창업지원사업

1. 진로설계교육	182
2. 진로교육	183
3. 전직기본교육	184
4. 맞춤형 전문교육	186
5.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	188
6.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190
7. 청년장병 뉴스타트	191
8. 창업동아리 멘토링 및 창업경진대회	194
9. 내일희망지원(MyJob+Tomorrow)	196
10. 전직상담	197

제3장 대외기관 사업

1. 직업능력개발교육비(국가보훈부)	200
2. 전직지원금(국가보훈부)	201
3. 내일배움카드(국가보훈부 및 고용노동부).....	202
4. 취업지원프로그램(CAP@) 교육(고용노동부)	203
5. 유관기관 취업박람회	203
6.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204

부록 관련 구비서류 및 각종 양식

붙임 # 1 국방전직교육원 구직등록카드(예시)	206
붙임 # 2 2024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210
붙임 # 3 사망일시금	214
붙임 # 4 민원이용 안내	215
붙임 # 5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216
붙임 # 6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	218
붙임 # 7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신청서	220
붙임 # 8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222
붙임 # 9 국가보훈부 보훈(지)청 연락처	225
붙임 # 10 전국 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전화	226
붙임 # 11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230
붙임 # 12 취업 예정 확인서	231
붙임 # 13 취업승인 신청서	232
붙임 # 14 업무내역서(년차)	233
붙임 # 15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	234
붙임 # 16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236
붙임 # 17 연금 외 소득신고서	237
붙임 # 18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238
붙임 # 1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	240
붙임 # 20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241
붙임 # 21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242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제 1 편

멋진 군 생활, 명예로운 마무리!

제1장 전역 전 · 후 체크리스트

제2장 전역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제3장 전역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제1장 전역 전·후 체크리스트

1. 전역 전

조치시기	내 용	참 고
1~2년 전	· 전직지원기간 신청 및 구직카드 등록	27페이지, 붙임 #1
3개월 전	· 퇴직자 정부포상 신청	31페이지
1개월 전	· 출입증 등 부대 반납	18페이지
	· 전역증 신청	18페이지
	· 삼정검 소지 허가 신청(장성)	19페이지
	· 근로소득세 정산 확인(전역월 급여에서 환급·추징)	19페이지
	· 퇴직급여 청구 및 대부 상환	20페이지
필요 시 조치	· 명예전역 신청	25페이지
	· 명예진급 신청	26페이지
	·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신청(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32페이지, 붙임 #7
	· 국방대학교 KNDU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신청(장성)	33페이지

2. 전역 후

조치시기	내 용	참 고
전역 직후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록(각 보훈지청)	38페이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등록(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39페이지, 붙임 #5
	· 제 퇴직금·재해보상 급여 수령	40페이지
1개월 이내	· 단체보험 가입자 실손보험 전환 신청	41페이지
2개월 이내	· 건강보험 변동 신청(건강보험공단)	42페이지
	· 퇴직자 재산변동 신고	43페이지
필요 시 조치	· 군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44페이지
	·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수령	45페이지
	· 이사회물비 신청	45페이지
	· 종합소득세 신고(각 지방세무서, 재정단)	46페이지
	· 연금소득세 정산신고(각 지방세무서, 재정단)	46페이지
	· 전직지원금 신청(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47페이지, 붙임 #8
	·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	41페이지

제2장 전역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부대에 반납할 사항

- 가. 신분증 : 전역일 이전 / 소속부대 인사담당부서
 나. 출입증 : 전역일 이전 / 소속부대 발급(정보담당)부서
 다. 권총 및 등록증(장군) : 전역일 이전 / 소속부대 군수담당부서
 라. 차량(장군) : 전역일 이전 / 소속부대 군수처 및 담당부서
 마. 부대 지급품 및 도서 등 대여품 : 전역일 전 / 해당 담당부서
 바. 기타 개인 사물 중 불필요한 군용물(정모, 군복 등) 반납 요청 시 : 전역일 전 / 해당 부대 군수처 및 담당부서

2 전역증 신청

- 가. 신청시기 : 전역 1개월 전 문서발송
 나. 신청장소 : 소속부대 인사처 및 담당부서 (전역 후 재발급 시 각 지방병무청)
 다. 구비서류 : 신분증, 전역명령지, 증명사진 1매
 라. 전역증 교부 : 전역일(전역신고 시) * 전역 후 재발급 : 각 지방병무청

【발행권자】

구 분	장 군	장 교	준·부사관
전역증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전역장	대통령	국방부장관	

* 전역신고(행사) 시 전역장, 감사장(배우자) 수여 : 국방부 및 각 군 발급

- 마. 전역증 이용 : 군 관련 시설(체력단련장, 복지시설 등)

문의처

- | | | |
|--------------------------|----------------------|------------------|
|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 02)748-5127 | 군)900-5127 |
| • 육 군 인사사령부 상훈전역과 | ☎ 042)550-7349 | 군)960-7349 |
| • 해 군 인사참모부 장교, 부사관/병인사과 | ☎ 042)553-1217, 1227 | 군)910-1217, 1227 |
| • 공 군 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관리과 | ☎ 042)552-1977 | 군)920-1977 |
| • 해병대 인사참모처 인사운영과 | ☎ 031)8012-3124 | 군)928-3124 |



3 삼정검 소지 허가 신청(장성 전역자)

가. 관련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신청시기 : 주소지 전입신고 후

다.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방문하여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문의처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제작업체 (한국도검)

☎ 02)748-5163

☎ 031)312-0316

4 근로소득세 정산 확인

가. 정산대상 : 전역 해당 연도 1월 ~ 전역월까지 급여에 대한 정산

나. 조치사항 : 추가 제출서류 등 개인 조치사항 없음.

다. 정산결과 : 전역월 급여 지급일(10일)에 환급·추징

라. 정산방식 : 퇴직자 소득·세액 공제는 군인연금 기여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인적공제를 기본 공제 사항으로 반영하여 정산함

마. 미납세금 : 성과상여금, 퇴직일시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반드시 국군재정관리단에 미납금 정산 필요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

☎ 02)3146-6428 군)953-6428

5 퇴직급여 청구 및 대부 상환

가. 퇴직급여 청구

* 세부내용은 제3편 제1장 연금관련 제도 참고

1) 급여의 종류

- 가) 퇴역연금 :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직 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
- 나) 퇴역연금일시금 :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직 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직 시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
- 라) 퇴직일시금 :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퇴직 시 지급

2) 청구대상자

- 가)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직 군인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본인이 택일하여 청구

구 분	접수기한	지 급 일	비 고
퇴직수당/퇴역연금 (공제) 일시금	매월 말일	익월 10일	군인연금법 제13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0조
퇴역연금	매월 말일	익월 25일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

- 나)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퇴직 군인 : 퇴직일시금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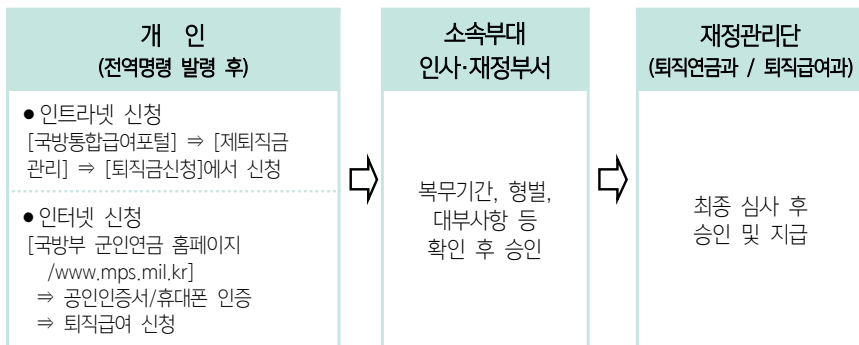
구 분	접 수 기 한	지 급 일	비 고
퇴직일시금	매월 1~15일	당월 25일	퇴직급여는 전역 후에만 지급
	매월 16~말일	익월 10일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

3) 청구시기 : 전역 명령 발령 후



4) 청구절차 : 본인 신청 → 소속부대 1·2차 승인 → 국군재정관리단 지급



5) 군인연금증서(카드형) 신청

가) 군인연금증카드란 군인연금 수급자격을 증명하고, 추가적인 카드 및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형 증서

나) 신청방법 : 가까운 우리은행 또는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

* 은행 방문 시 연금수급권자확인서(전역 익월 10일경 자택으로 우편물 발송), 신분증 지참
우편물 미수령 시 국군재정관리단 감사실(02-3146-6014~5로 연락 후 재발급)

※ 유의사항

(1) 퇴직급여 청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 의사전달의 착오로 실제 본인이 원한 퇴직급여와 다른 종류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발생
- 전역 후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없어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피해 발생
- 학자금 대부 등 급여공제에 있어 분할공제 여부 등에 대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생

(2) 급여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국군재정관리단에 제출(연금수령 후 종류변경 신청 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여야 급여종류 변경 가능)

* 관련법령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퇴직연금 등의 종류 변경 신청)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 02)3146-6474~5 군) 953-6474~5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02)3146-6483~4 군) 953-6483~4

나. 학자금 대부금 상환

- 1) 신청 : 전역 전 국방통합급여포털 내에서 일시/분납 선택, 퇴직급여에서 공제
- 2) 퇴역연금 청구자 : 일시상환원칙, 1,000만원 초과금액 일시상환 후 200~1,000만원 미만 금액 3년 분할 상환 가능(청구서에 분할상환 선택)
* 200만 원 미만 금액은 일시상환만 가능

다. 생활안정자금 대부금 상환

- 1) 상환방법 : 퇴직급여에서 미공제 / 대부은행에 개별 상환
* 퇴직급여 청구 시 수령은행은 대부은행으로만 신청 가능(대부 잔액 상환 전까지 대부 잔액 해당 금액 인출 불가)

라. 중앙공제 저축 / 보험금 불입자

- 1) 해당 금융기관으로 본인이 자동이체 전환 처리

마. 희망송금 종료처리

- 1) 필요 희망송금 : 종료처리 불필요
* 전역 후 해당 수당(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지급 시 기등록 계좌로 이체
- 2) 불필요 희망송금 : 희망송금 종료처리

바. 연금지급 정지대상 및 연금 외 소득심사

- 1) 연금수령 이후 지급정지 사유

정지금액	지 급 정 지 사 유
전 액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군인, 공무원(군무원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보수를 받을 때,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 취임 시*, 국가 및 지자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60%(세전 9,884,183원) 이상인 경우 *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연금월액 미만일 경우 근로소득월액만큼만 정지 *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일부정지 (연금 50% 범위 내)	상시 5인 이상 근로사업장 기준 근로자 1인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 수급권자 * '22년 평균임금월액 : 세전 4,445,889원



2) 연금 소득심사 및 연금감액 지급

가) 심사대상 : 연금 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 수급권자

나) 심사기준 : 상시 5인 이상 근로사업장 기준 근로자 1인의 전년도 평균 임금월액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매년 3월)

다) 심사방법 : 국세청 등을 통해 파악한 월 평균소득이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에 따라 연금 월액의 일부 정지(최고 1/2 범위 내)

3) 소득대비 월 지급정지 예상액

(단위 : 원 / 산정 월수 : 12개월)

총 근로소득		근로소득 공제액	소득공제 후 소득		평균임금 월액(B)	초과 소득월액 (A-B)	지급정지 월액
연소득	월소득		연소득	월소득(A)			
66,450,000	5,537,500	13,072,500	53,377,500	4,448,125	4,445,889	2,236	220
67,500,000	5,625,000	13,125,000	54,375,000	4,531,250		85,361	8,530
70,000,000	5,833,333	13,250,000	56,750,000	4,729,167		283,278	28,320
75,000,000	6,250,000	13,500,000	61,500,000	5,125,000		679,111	85,820
80,000,000	6,666,667	13,750,000	66,250,000	5,520,833		1,074,944	172,480
95,000,000	7,916,667	14,500,000	80,500,000	6,708,333		2,262,444	631,220
90,000,000	7,500,000	14,250,000	75,750,000	6,312,500		1,866,611	446,640
95,000,000	7,916,667	14,500,000	80,500,000	6,708,333		2,262,444	631,220
100,000,000	8,333,333	14,750,000	85,250,000	7,104,167		2,658,278	829,130
105,000,000	8,750,000	14,850,000	90,150,000	7,512,500		3,066,611	1,033,300
110,000,000	9,166,667	14,950,000	95,050,000	7,920,833		3,474,944	1,237,470
120,000,000	10,000,000	15,150,000	104,850,000	8,737,500		4,291,611	1,645,800
130,000,000	10,833,333	15,350,000	114,650,000	9,554,167		5,108,278	2,054,130

* 적용기간 : '22년 4월 ~ '23. 3월

문의처

연금 전액 정지 관련
연금 일부 정지 관련

• 국군재정관리단 연금관리과

☎ 02)3146-6554

☎ 02)3146-6556

사. 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금/대부금

1) 군인공제회 퇴직급여금

가) 청구대상 : 전역 예정자 중 군인공제회 가입자

나) 청구 : 전역명령서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이 군인공제회에 일괄 청구
* 전역(퇴직) 당월 20일까지, 말일까지

다) 지급 : 전역월 말일 또는 익월 5일(휴일일 경우 휴일 종료 후 첫 근무일)에
회원회망 급여계좌에 자동입금(별도 신청 불필요)
* 전역일 이후 인터넷으로 개별신청시 지급(2~3일 소요)

2) 대여금 상황 : 퇴직급여대여는 회원퇴직급여금 지급 시 공제 목돈수탁대여는 만기지급 시 공제

3) 회원 승계 : 전역 후 6개월 이내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이 있는 다른 신분 (국방부분부 일반직 공무원, 군무원 등)으로 전환되었을 때 아래의 서류 구비 후 군인공제회 제출 시 회원자격 승계

청구방법	승계 신청시 구비서류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 FAX(02-2190-2069) / 이메일(savings@mplus.or.kr) 제출	• 승계신청서 1부 • 신규 임용명령지 사본 1부 • 전역 및 퇴직명령 사본 1부

문의처

• 군인공제회 컨택센터

☎ 1544-9090, 1599-9090



6

명예전역 신청

가. 선발대상 : 명예전역 희망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한 중장 이하의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

* 기타 선발 세부항목 및 선발제외 대상은 Y년도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 확인

나. 신청시기

1) Y년도 전반기 : Y-1년 11월

2) Y년도 후반기 : Y년 5월

다. 수당 산출

: 봉급액의 68%×[정년 잔여 개월 수(1~60)× $\frac{1}{2}$ +정년 잔여 개월 수(61~120)× $\frac{1}{4}$]

* 기준액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전역월 당시 지급받는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

라. 지급일 : 전역일 당일 지급(휴일의 경우 전역일 전날 지급)

마. 환수 :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4항,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9조

바. 첨부서류 : 명예전역 지원서, 명예전역수당 반납서약서 각 1부

문의
처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육 군 인사사령부 상훈전역과
- 해 군 인사참모부 장교인사과
- 공 군 인사참모부 장교인사과
- 해병대 인사참모처 인사운영과

- | | |
|-----------------|------------|
| ☎ 02)748-5127 | 군)900-5127 |
| ☎ 042)550-7344 | 군)960-7344 |
| ☎ 042)553-1217 | 군)910-1217 |
| ☎ 042)552-1435 | 군)920-1435 |
| ☎ 031)8012-3124 | 군)928-3124 |

7

명예진급 신청

가. 지원대상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명예전역 선발자 중 명예진급을 지원하는 중령, 소령, 상사 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자

나. 명예진급은 명예전역 선발자 중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 1) 명예전역 대상 계급 : 중령 → 대령, 소령 → 중령, 상사 → 원사
- 2) 명예전역에 선발된 자는 명예진급이 선발되지 않더라도 명예전역 취소 불가

다. 선발 제외대상

- 1)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 2) 현 계급에서 중징계의 처분을 받거나, 경징계 2회 이상 받은 자
(단,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자는 제외)
-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회부된 자
- 4) 복무기간 중 금전 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으로 징계처분 또는 보직해임 받은 자
- 5) 4주 이상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 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자
- 6) 현 계급에서 계속 복무 적합기준 미달자로 평가된 자

라. 첨부서류 : 명예전역 신청서류 및 명예진급 지원서 각 1부

문의처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육 군 인사사령부 상훈전역과
- 해 군 인사참모부 장교인사과
- 공 군 인사참모부 장교인사과
- 해병대 인사참모처 인사운영과

- ☎ 02)748-5127
- ☎ 042)550-7344~6 군)960-7344~6
- ☎ 042)553-1217 군)910-1217
- ☎ 042)552-1435 군)920-1435
- ☎ 031)8012-3124 군)928-3124

8 전직지원 및 구직등록 신청

가. 전직지원기간 신청

1) 대상 : 장교 또는 준·부사관 임관 후 복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희망자

2) 전직지원기간 부여 제한 대상

가) 군의·치의·법무·군종병과의 장교, 민항취업(예정) 조종사

* 단, 3개월 이내 사회적응기간 부여 가능

나) 장군, 임기제 진급자, 병과장, 형벌·징계 등 처벌 계류 중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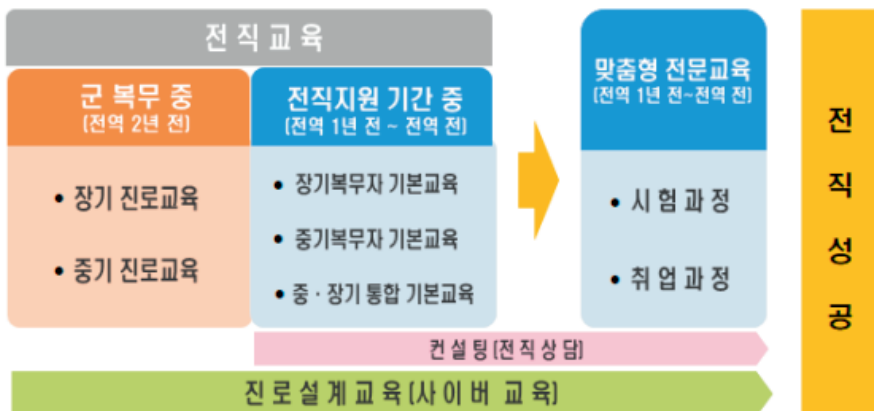
3) 신청방법

가) 전직지원기간 부여 희망자는 국방전직교육원 구직카드 작성 후 전역 지원서에 전직지원기간 신청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한 후 소속부대를 경유하여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로 제출

【복무기간별 전직지원기간】

구 분	중기복무자			장기복무자		
복무기간	5년~7년 미만	7년~9년 미만	9년~10년 미만	10년~27년 미만	27년~30년 미만	30년 이상
전직지원기간	1개월	2개월	5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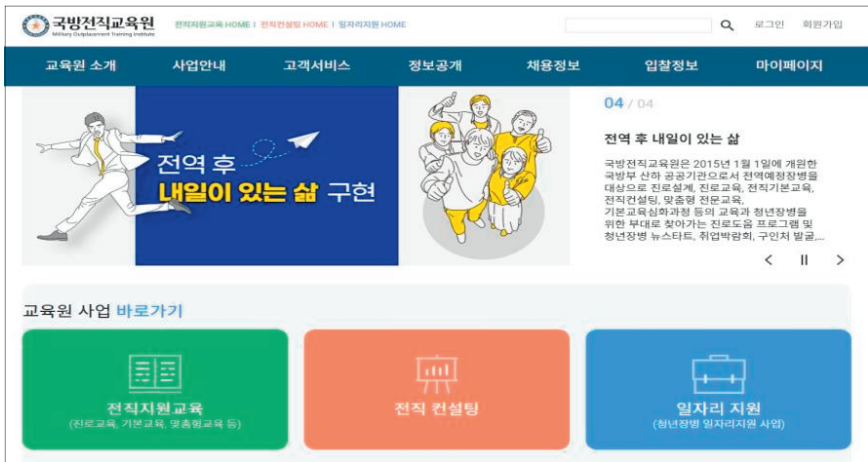
나. 전직지원 교육체계



다. 국방전직교육원 회원등록(구직카드 등록)

*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참여, 취창업 정보 제공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구직등록 필수

- 1) 신청대상 : 취·창업을 희망하는 전 장병
 - 2) 등록시기 : 전역 2년 전부터
 - 3) 신청방법/절차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인터넷, www.moti.or.kr)
- 가) 회원가입 : 전역(예정) 군 간부, 기업체 실무자(일반인 가입 금지)



* 회원등록(구직카드 등록) 완료 후 아이디, 패스워드 이용 상시 접속 가능

나) 회원등록(구직등록 등록) 세부사항 입력

* 개인 신상, 학력, 경력, 자격증 및 어학능력 등을 포함하여 업체 제출용 이력서 양식에 준하여 작성

문의처

- | | |
|----------------------|-------------------------------|
| • 국방전직교육원 내일희망지원센터 | ☎ 1588-9402 → 3번 |
|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 ☎ 02)748-6631 군)900-6631 |
| • 육 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 ☎ 042)550-7532 군)960-7532 |
| • 해 군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 042)553-1153 군)910-1153 |
| • 공 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 042)552-1237 군)920-1237 |
| • 해병대 복지근무참모처 일자리정책과 | ☎ 031)8012-2814 군)928-2814 |



라. 전직지원 교육 및 사업 소개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참고

사업명	대상	내용
진로설계교육	군 복무 중인 소 장병	전직준비 및 생애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사이버교육
전직교육 (진로교육)	중장기 전역 예정 간부	개인별 직무역량을 확인하고 전역 이후의 새로운 경력 목표를 탐색 및 수립
전직교육 (전직기본교육)	중장기 전역 예정 간부	전직목표별 맞춤형 구직역량 향상 교육
맞춤형전문교육	중장기 전역 예정 간부	시험, 자격, 취업 등 맞춤형 교육과정
찾아가는 진로도움	청년장병	진로설계 및 취업역량교육 및 1:1취업상담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현역장병	취업정보제공, 맞춤형 컨설팅, 구인기업 현장면접 등
청년장병 뉴스타트(Ⅰ) (취업역량 기본과정)	청년장병	취업준비 분야별 맞춤형 취업준비 집중교육
청년장병 뉴스타트(Ⅱ) (취업준비 심화과정)	청년장병	기업별 맞춤형교육 및 개인별 취업매칭 및 컨설팅
청년장병 뉴스타트(Ⅲ) (찾아가는 현장 채용 설명회)	청년장병	기업, 공직, 업종별, 귀농, 창업 등 분야별 설명회 개최
창업인식개선교육	창업 관심 장병	창업 인식개선 및 예비창업 준비과정 등
창업멘토링	창업희망팀 및 국방경진 진출팀	전문 멘토링 집중 지원
국방창업경진대회	창업 관심 전역예정장병	장병들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와 연계한 국방창업경진대회 지원
내일희망지원	국방전직교육원 구직등록 소 장병	맞춤형 1:1 상담 지원
전직상담	중장기 전역 예정 간부	맞춤형 1:1 상담 및 취업 및 사회전환 교육

교육 및 사업별 상세 내용은 제2편 제1장 전직! 새로운 출발 참고

마. 각군 운영 전직지원 정보제공

육군	육군 취업지원센터 www.armyjob.mil.kr • 육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 042)550-7537 군)960-7537	
해군	해군 취업지원광장 www.navy.mil.kr • 해군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042)553-1153 군)910-1153	
공군	공군 홈페이지 '전체메뉴' → '커뮤니티/생활정보'에서 '공군 취업정보광장' → '개인 맞춤형 취업정보 알림서비스 신청게시판'에 신청서 등록(비 공개로 등록) → 각 부대 및 공본 전직지원담당 확인 후 체계 등록 • 공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042)552-1239 군)920-1239	
해병대	해병대 전직지원 밴드 • 해병대 복지근무처 일자리정책과 ☎ 031)8012-2816 군)928-2816	

문의처

- | | | |
|---------------------|-----------------|------------|
| • 국방전직교육원 | ☎ 1588-9402 | |
|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 ☎ 02)748-6631 | 군)900-6631 |
| • 육 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 ☎ 042)550-7532 | 군)960-7532 |
| • 해 군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 042)553-1153 | 군)910-1153 |
| • 공 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 042)552-1237 | 군)920-1237 |
| • 해병대 복지근무처 일자리정책과 | ☎ 031)8012-2812 | 군)928-2812 |



9 퇴직자 정부포상 신청

가. 전역자 정부포상

- 1) 포상종류
- *재직기간 : 임관일 ~ 전역일 + 양성교육 기간 1/2

재직기간	33년 이상	30년 이상 33년 미만	28년 이상 30년 미만	25년 이상 28년 미만
포상훈격	보국훈장	보국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2) 보국훈장 : 재직기간 33년 이상인 자

구 분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군 인	대 장	중 장	소장, 준장	영 관	위관 이하

나. 신청시기 : 전역일 기준 3개월 전(신청부서 : 소속부대 인사참모)

다. 수여시기

- 1) 정년전역 : 전역일
- 2) 임기제, 명예/의원 전역 : 전역일이 속한 월의 익월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
- * 예) 1월 전역자 ⇒ 4월 말, 2월 말 전역자 ⇒ 5월 말

라. 추천제한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상훈제도 안내→정부포상업무지침
→2024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퇴직공무원 포상” 참고

문의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육 군 인사사령부 상훈전역과
- 해 군 인사참모부 행정관리과
- 공 군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 해병대 복지근무참모처 근무행정과

- ☎ 02)2100-4096
- ☎ 02)748-5154, 5156 군)900-5154, 5156
- ☎ 042)550-7341~3 군)960-7341~3
- ☎ 042)553-1187, 1189 군)910-1187, 1189
- ☎ 042)552-1271 군)920-1271
- ☎ 031)8012-2842 군)928-2842

10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신청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가. 신청대상 : 5년 이상 복무자 중 전직기본교육 이수자

* 기본교육 미수료자는 부대장(연대장급 이상) 추천서 제출

나. 신청 및 지급 금액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1) 전역(예정)자 개인에게 지원되는 교육비로 개인 先 결제, 교육 수료 후 서류 제출 시 후 지급(80%)

2) 지원 기간 / 최대 지원금액 : 전직지원기간~전역 후 3년 이내 / 150만 원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다. 신청방법

1) 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V-NET) 회원가입 후 주소지 제대군인지원센터 담당자 배정/문자안내

2) 개인의 전직목표 및 교육수강 희망과정의 직업능력 개발 교육비 지원 가능 여부 상담

문의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66-9279



11

국방대학교 KNDU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신청

가. 교육목표 : 전역에 따른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로개척 및 사회지도자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고취

나. 교육대상 : 현역장성(소집 및 온라인 교육 참석 가능 인원)

다. 교육장소 : 국방대학교(본교 및 서울캠퍼스)

라. 교육일정 : 매년 4~7월 / 9주간(매주 화, 목 교육)

* 교육일정은 연간계획 수립 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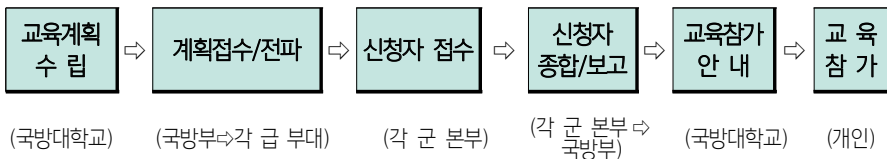
마. 교육방법 : 온라인 및 소집교육 병행

* 단, 국토탐사는 월요일 ~ 금요일(4박 5일) 연속교육으로 진행

바. 교육내용 : 국가안보(강의자 역량), 사회이해, 자기관리 등

* 교육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 신청절차 :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신청자 종합 후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로 신청 (3~4월 예정)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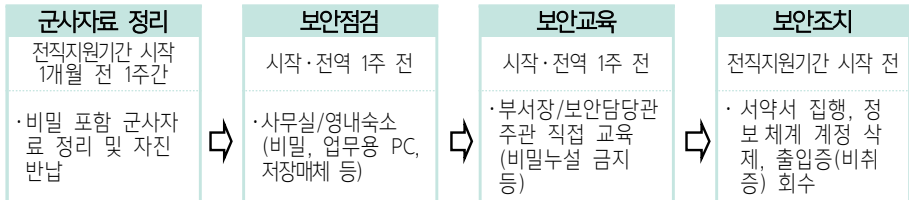
- | | |
|---------------------|--------------|
|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 군)900-6245 |
| • 국방대학교 직무연수부 교학과 | ☎ 군)901-5513 |
| • 육군 인사사령부 전역장병지원처 | ☎ 군)960-7418 |
| • 해군 인사참모부 교육정책과 | ☎ 군)910-1242 |
| • 해병대 교육훈련참모처 교육지원과 | ☎ 군)928-3521 |
| • 공군 인사참모부 교육정책과 | ☎ 군)920-1153 |

12 (참고) 전역 전 보안교육 및 준수사항

가. 전역자에 대한 보안조치 시행근거

-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했던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국방보안업무훈령 제218조(전역·퇴직 및 전출 장병 보안)**
전역 1개월 전 보안점검을 통해 관리실태 확인, 전역 1주일 전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 집행, 비밀, 암호장비 등 인수인계 실태 확인
※ 군사보안업무훈령 제218조는 전역장병에 의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위법인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내용을 종합 따라서 숙소의 경우 본인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후 보안담당관이 재확인하거나 장병이 숙소 퇴거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위병소에서 휴대한 물품 확인을 통해 비밀자료 소지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나. 전직지원기간 전 보안대책



다. 전역자의 비밀보호 의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군사기밀보호법 제10, 11, 11의2, 12, 13, 13의2, 14, 15, 16조**
-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인복무기본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 등에 의해 군인은 전역 후에도 비밀보호의 의무를 갖게 되며,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



13

(참고) 전역식 행사

* 군별 규정 상이하므로 각군문의 필수

가. 대상 :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자(희망자)

* 단, 10년 이상 근무한 간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부대에서 행사(전역신고) 시행

나. 주관 : 소속 부대장(개인 희망에 따라 연고부대(연대급 이상 부대) 등에서 가능)**다. 행사 일정/방법 :** 본인 및 행사주관 부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 정식 및 약식, 실내 및 실외 행사로 조정 시행 가능

라. 행사지원 절차

- 1) 전역자 : 전역식 행사희망부대(장소)를 결정(소속부대, 연고부대 등)하여 소속부대 인사처(행정과)에 통보
- 2) 소속부대 : 행사계획은 전역 1개월 전에 수립 후 보고 및 시행
* 육군 : 인사사령부 인사행정관리과, 해군 : 인참부 근무행정과, 공군 : 인참부 근무행정과 제출함
- 3) 각 군 본부 : 행사시행 지침 시달 및 각 군 본부(인사사령부) 행사 주관, 행사주관 부대에 행사비 지원
- 4) 행사주관 부대는 행사 10일 전까지 세부시행 계획 보고

마. 전역행사비 지급

- 1) 지급 방식 : 각 군별(공군 제외) 재정지원부대 계통을 행사부대 지급
* 공군은 기념품(태극기) 통합 구매/지원으로 부대별 행사비 배정 없음
- 2) 지원 금액 : 장군(20만 원), 대령~부사관(4만 원)

마의처

• 육 군 인사사령부 인사행정관리과	☎ 042)550-7321	군) 960-7321
•해 군 인사참모부 행정관리과	☎ 042)553-1188	군) 910-1188
•공 군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 042)552-1246	군) 920-1246
•해병대 인사참모처 인사운영과	☎ 031)8012-3124	군) 928-3124

14 (참고) 전직지원기간 중 유의사항

가. 전직지원기간 중 사적국외여행

1) 사적국외여행의 허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다.

3.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전직지원 기간 중 사적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직지원기간 인사명령을
근거로 절차에 따라 사적국외여행 허가를 득하여 시행

2) 국외여행기간 :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기간(개월) x 해당연도 연가 일수

3) 제출서류 : 현역과 동일(사적국외여행 계획서, 허가서)

* 소속부대 인사참모처 제출, 허가권자의 승인 후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문의처

• 육 군 인사참모부 인사근무과	☎ 042)550-1163	군) 960-1163
• 해 군 인사참모부 행정관리과	☎ 042)553-1186	군) 910-1186
• 공 군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 042)552-1275	군) 920-1275
• 해병대 복지근무참모처 근무행정과	☎ 031)8012-2841	군) 928-2841

나. 전직지원기간 중 영리행위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 기타 수당 지급 안내

1) 전직지원기간, 전역 전 휴가 중 수당 미지급

근무함으로써 적용되었던 실적수당 미지급 : 항공수당(조종사),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장려수당, 직책별 특정업무비, 시간외수당 정액분 등

문의처

• 육 군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	☎ 042)550-1244	군)960-1244
• 해 군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	☎ 042)553-1147	군)910-1147
• 공 군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	☎ 042)552-1511	군)920-1511
• 해병대 복지근무참모처 복지운영과	☎ 031)8012-2828	군)928-2828

2) 전직지원기간 중 기본교육 교육과견 여비 지급

가) 지급대상 : 전직지원기간 기본교육 시만 지급

* 단, 진로교육 의무화 대상자 진로교육 시 지급 가능

나) 지급시기 : 해당 교육 수료 및 인사명령 발령 후

다) 주관부서 : 소속부대 인사참모(여비담당)

제3장 전역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록(훈장 수훈자)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예우보상 참고

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 1) 전몰군경(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2) 전상군경(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으신 분)
- 3) 순직군경(국가수호 등과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
- 4) 공상군경(국가수호 등과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으신 분)
- 5) 무공수훈자(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 6) 보국수훈자(보국훈장을 받으신 분) 등

나. 등록 시기

- 1) 상이자 : 전역·퇴직 후 또는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 2) 무공·보국수훈자 : 전역 또는 퇴직 후

다. 등록 절차

- 1) 등록신청 : 본인/가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2) 접수/서류 검토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관할 보훈(지)청)
- 3)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심의(보훈 심사위원회)
- 4) 보훈병원 신체검사(요건을 인정받은 상이자만 해당)
- 5) 상이등급 판정 심의(보훈심사위원회)
- 6) 결정 및 통지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결정 및 결과 통보

라. 국가유공자 보훈 혜택 : 대부, 교육, 의료, 취업, 복지 등

- 1) 대부, 교육, 의료, 취업, 복지,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 부여
- 2) 대상 및 혜택 종류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예우보상에서 확인

※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사망일시금 불임 #2, 불임 #3 참고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2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등록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가. 제대군인 등록

- 1) 대상 : 5년 이상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신청

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

- 1) 가입방법 : 홈페이지 가입(www.vnet.go.kr)
- 2) 관련정보 제공 : 채용정보 제공, 교육 및 행사 일정 안내 등
- 3) 관련 혜택
 - 가) 전역 후 6개월간 구직활동시 전직지원금 지원 * 연금 수급자 제외
 - 나) 전역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문의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대표전화

☎ 1666-9279

3 제 퇴직금·재해보상 급여 수령

* 세부내용은 제3편 제1장 연금관련 제도 참고

구 분	급 여 명	지급부서	지 급 시 기
정상 전역	명예전역수당	국군 재정관리단	• 전역일 (전역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퇴직수당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전역 익월 10일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휴일인 경우 그 전일)
	퇴역연금		• 매월 25일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휴일인 경우 그 전일)
	퇴직일시금		• 매월 10일/25일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상이 전역	장애보상금 상이연금	국군재정관리단	• 청구 / 심사결정 후
	공무상요양비	의무사	• 청구 / 심사결정 후
	보훈연금	국가보훈부	• 청구 / 심사결정 후
순직	보훈연금	국가보훈부	• 청구 / 심사결정 후
	사망보상금 사망조의금	국군 재정관리단	• 매월 10일/25일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유족연금 퇴직수당		• 매월 25일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휴일인 경우 그 전일)

[형벌 / 징계에 의한 퇴직금 제한사항]

구 분	제 한 사 항			비 고
	연 금	일시금	퇴직수당	
내란, 외환, 반란, 이적의 죄 등 고의에 의한 질병, 부상, 재해	전액 미지급	전액 미지급	전액 미지급	기여금 반환
복무 중의 사유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실형 선고)	50% 지급	50% 지급	50% 지급	기여금 반환
선고유예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유예기간 중형 확정시 50% 환수
불기소 처분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전액 지급	
부적격 전역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전액 지급	
파면	50% 지급	50% 지급	50% 지급	
해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에 의한 징계로 해임)	75% 지급	75% 지급	75% 지급	일반해임 전액 지급
강등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정직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전액 지급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국군재정관리단 연금관리과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사망보상금)
- ☎ 02) 3146-6481~8, 6491~4

☎ 02) 3146-6555

☎ 02) 3146-6474~5

☎ 02) 3146-6476



4 맞춤형 복지제도(실손보험 전환) 사용

가. 단체보험 : 전역과 동시에 소멸

*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본인의 복무 해당 분기 말까지 보장

나. 단체보험 가입자 실손보험 전환 제도

- 1) 내용 : 단체 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전역(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2) 방법 : 전역(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후 1개월 이내
단체보험사에 신청

※ 문의 : 국방부 단체보험사 한화손해보험(02-3395-7159)

다. 복지포인트 : 전역일이 포함된 분기까지 기배정된 복지포인트에
한하여 전역 연도의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문의처

• 국방부 맞춤형복지 통합지원센터 ☎ 1661-6100 군)900-4870

5 주민등록 전입신고, 건강보험 변동 신청

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 1) 신고방법 : 방문, 인터넷(정부24)
- 2) 담당기관 : 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나. 건강보험 변동 신청

1) 직장보험 상실 신고

- 가) 상실신고 : 전역 후 14일 이내 소속부대 인사참모 조치
 - * 공본 정책연구관 : 근무행정과 신청/확인
- 나) 상실신고 이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험증 주소지로 우편 발송)

2) 건강보험 변동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구 분		내 용
본인 직장이 있을 경우		• 해당 직장에서 자동으로 신규 등록(직장가입자 처리)
본인 직장이 없을 경우	가족 직장이 있을 경우	• 가족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자격→피부양자 취득
	가족 직장이 없을 경우	•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현역 복무 시 건강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용

3) 임의계속가입 제도

- 가) 전역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하는 제도
- 나) 신청방법 :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신청
- 다) 대상자, 신청기한, 신청절차 등 상세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참고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자격→자격취득/가입→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6 퇴직자 재산변동 신고** [정기재산변동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참고

가.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나. 신고대상 :** 재산등록의무자(대령 이상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등)였던 자

- * 단, 6개 업무 분야(국방관련 계약/검수, 방위력개선, 군사시설, 군사법원/군검찰, 감사, 수사 분야)로 별도 지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중령/군무원 3급은 퇴직 전에 의무면제 재산변동신고를 하였으면 퇴직 재산변동 신고의무 없음

다. 신고기간 :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 퇴직일 이후 10일 이내 '재산등록 안내' 수신 문자 없을 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 * 매년 1월~2월 퇴직자는 전년도 말일 기준 정기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퇴직일 기준재산신고서만 제출(단, 12월 말까지 퇴직일 유선 통보 필수)

라. 신고사항 : 퇴직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채무 등)의 가액 입력

- * 부동산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자는 제공된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입력

마. 신고요령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해당 내역을 입력·작성하며 24시간 제출 가능

- * 본인정보-친족정보-총괄표-변동요약서 작성 후 반드시 '제출' 단계까지 진행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신고서가 제출됨(접수증은 본인 보관)
- * 2016. 6. 30. 개정된 양식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시스템에 업로드)에만 퇴직 재산신고 시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바. 위반 시 제재 :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직자윤리법」 제24조 제1항)**문의처**

- 국방부 감사관실
- 공직윤리시스템 문의

☎ 02)748-6922~4, 6927

☎ 1522 - 4273

7 군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가. 군 경력증명서 발급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민원신청

- 1) 종류 : 군 경력증명서, 비행경력증명서, 군복무(재직)확인서, 군운전경력확인서 등
- 2) 발급기관 : 국방부/각 군 민원실, 육군 인사사령부 병적민원과, 해군본부 인사자료관리과,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관리과, 해병대사령부 인사운영과
- 3) 신청방법 :
 - 가) 방 문 : 국방부 및 삼군통합 민원센터, 각 지역 주민센터
 - 나)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해군 홈페이지 가능)
 - 다) 우 편 : (육 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3호 (우편번호 32800) 병적민원과 담당자 앞
(해 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우편번호 32800) 인사자료관리과 담당자 앞
(공 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36호 (우편번호 32800)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관리과 담당자 앞
(해병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206호 (우편번호 18334) 인사운영과 담당자 앞

문의처

- | | |
|----------------------|----------------------------|
| • 육 군 인사사령부 병적민원과 | ☎ 042)550-7353, 7355, 7359 |
| •해 군 인사참모부 인사자료관리과 | ☎ 042)553-1267 |
| •공 군 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관리과 | ☎ 042)552-1974 |
| •해병대 인사참모처 인사운영과 | ☎ 031)8012-3156 |

나. 병적증명서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 1) 방문신청 : 각 지방병무청 또는 지방행정관서(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신청자는 신분증, 위임자는 위임장 지참
- 2) 인터넷 : 정부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문의처

- | | |
|-----------------|---------------------------|
| • 병무청 대표전화 | ☎ 1588-9090 |
| •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 02)820-4352, 4354, 4338 |
| • 대전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 042)250-4258, 4269 |



8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이사회물 수송비 수령

가. 연가보상비/급식비

- 1) 연가보상비 : 전역 전 개인별 연가 사용일수, 제외 기간 등을 계산하여
미실시 기간만큼 환급
- 2) 급식비 : 후불 지급으로 전역 익월 20일에 개인 통장 자동입금

나. 성과상여금

- 1) 지급대상
 - 가) 하사 이상 ~ 소장 이하 군인 (임기제 부사관 포함)
 - 나) 해당 연도 2개월 이상 근무하고 12월 31일 재직자
 - 다) 해당 연도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도 중 전역자
- 2) 평가 기준 및 계급 적용일 : 10월 31일
- 3) 지급기준일 : 12월 31일

문의처

- 국방부 복지정책과
- 육 군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
- 해 군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
- 공 군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
- 해병대 복지근무참모처 근무행정과

- | | |
|-----------------|-------------|
| ☎ 02)748-6613 | 군) 900-6613 |
| ☎ 042)550-1244 | 군) 960-1244 |
| ☎ 042)553-1147 | 군) 910-1147 |
| ☎ 042)552-1511 | 군) 920-1511 |
| ☎ 031)8012-2828 | 군) 928-2828 |

다. 이사회물 수송비 신청

- 1) 지급대상 : 인사(전역)명령에 의거 지급하며 근속연수, 거리에 따라
가족동반 이사와 단독이사로 구분지원(임관일로부터 5년 미만 근무 후
전역 시 단독이사회물임 미지급)
- 2) 청구방법 : 이사 후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소속부대 이사회물수송비
담당 부서에 제출
- 3) 관계서류
 - 가) 이사회물수송비 지급신청서(소속부대 보관)
 - 나) 전역(퇴직)명령지 또는 전직지원교육 명령지
 - 다) 신·구 거주지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라) 본인 예금통장 사본

문의처

- 각 소속부대 군수참모

9 종합소득세, 연금소득세 신고

가. 종합소득세 신고

- 1) 신고대상 : 군인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타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 제외
- 2) 신고시기 : 과세 대상년도 다음 해 5월('23년 전역자의 경우 '24년 5월 신고)
* 연중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3)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4) 미취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사항에 더해 구체적 공제사항에 대한 서류 구비하여 신고 필요
- 5) 미납세금 :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전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하여 정산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 ☎ 02)3146-6428 군)953-6428
- 국군재정관리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02)3146-6014~6

나. 연금소득세 정산신고

- 1) 신고방법
 - 가) 연중전역자 : 퇴직금 청구 시 전역 전 근로소득정산 시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연금소득 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퇴직급여 신청 시 연금소득으로 연계되므로 연말정산 신고 불필요
* 단, 추가 공제(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는 12월 말까지 별도신고
 - 나) 연금수급자 : 매년 11월 연금소득 신고 안내서 우편 발송(국군재정관리단)
- 2) 구비서류
 - 가) 연금소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서식방)
 - 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세), 장애인증명서(해당시)
- 3) 연금소득 연말정산 범위 : 인적공제만 해당
 - * 기타 공제(의료비, 교육비, 카드사용액 등)는 연금 외 소득(근로, 사업, 이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가능
 - * 재취업자(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 이중공제가 불가하니 소득액이 많은 곳(재취업장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
- 4) 정산결과 : 다음연도 1월 연금 지급일에 환급·추징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02)3146-6494 군)953-6494



10 전직지원금 신청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가. 지급대상 :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

나. 지급금액(수급 중 취·창업 시 잔여기간 총지급액의 1/2 일시금 지급)

1) 중기(5년 이상~10년 미만) 복무자 : 월 55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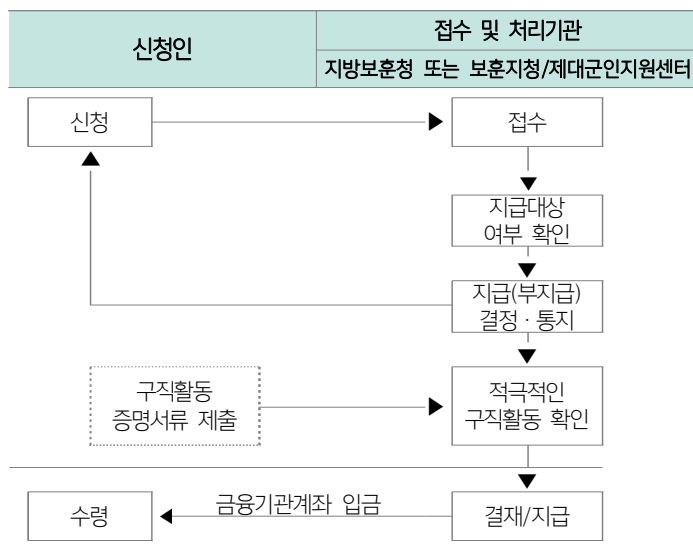
2) 장기(10년 이상~19.6년 미만) 복무자 : 월 77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다. 지급제외

1) 전역 6개월 후 지급신청자

2)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라. 신청 및 지급절차



⇒ 지급대상 결정 후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문의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대표전화

☎ 1666-9279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제 2 편

내 일(My Job)이 있는 삶을 위하여!

제1장 전직! 새로운 출발

제2장 취업지원기관별 지원사항

제3장 취 · 창업 정보

제4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제1장 전직! 새로운 출발

1 전직지원교육 개념

가. 목적 : 전역예정 간부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직역량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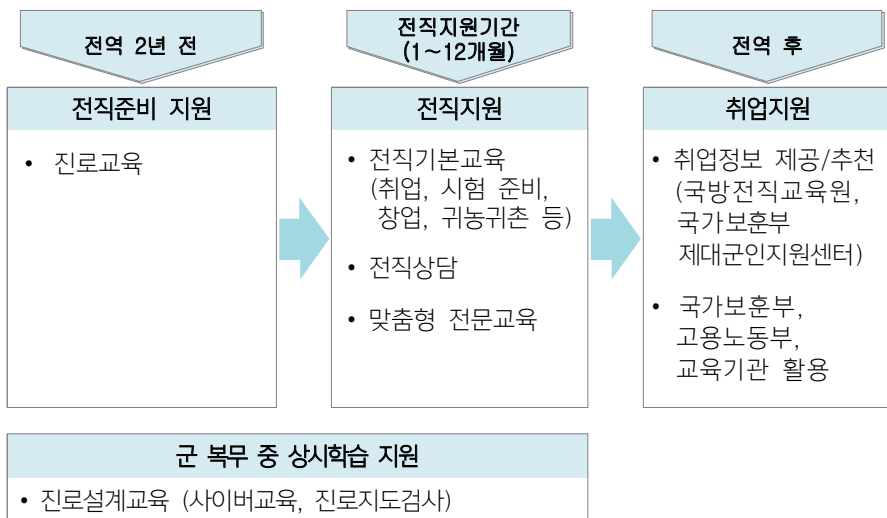
나. 관련법령

- 1) 「군인사법」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 2)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0조의 3
- 3) 군 전직 및 취업 지원에 관한 훈령

다. 기본방향

- 1) 전직지원교육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 및 전문지식 배양
- 2) 진로설정 및 목표 분야별 세부적 전직역량 향상
- 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단계별 지원

라. 단계별 지원 / 교육 방향



2 전직지원 사업 안내

국방전직교육원 제공 교육 및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직등록’ 필수

사업명	대상	내용
진로설계교육	군 복무 중인 소 장병	전직준비 및 생애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사이버교육
전직교육 (진로교육)	중장기 전역 예정 간부	개인별 직무역량을 확인하고 전역 이후의 새로운 경력 목표를 탐색 및 수립
전직교육 (전직기본교육)	중장기 전역 예정 간부	전직목표별 맞춤형 구직역량 향상 교육
맞춤형전문교육	중장기 전역 예정 간부	시험, 자격, 취업 등 맞춤식 교육과정
찾아가는 진로도움	청년장병	진로설계 및 취업역량교육 및 1:1취업상담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현역 장병	취업정보제공, 맞춤형 컨설팅, 구인기업 현장면접 등
청년장병 뉴스타트(Ⅰ) (취업역량 기본과정)	청년장병	취업준비 분야별 맞춤형 취업준비 집중교육
청년장병 뉴스타트(Ⅱ) (취업준비 심화과정)	청년장병	기업별 맞춤형교육 및 개인별 취업매칭 및 컨설팅
청년장병 뉴스타트(Ⅲ) (찾아가는 현장 채용 설명회)	청년장병	기업, 공직, 업종별, 귀농, 창업 등 분야별 설명회 개최
창업인식개선교육	창업 관심 장병	창업 인식개선 및 예비창업 준비과정 등
창업멘토링	창업희망팀 및 국방경진 진출팀	전문 멘토링 집중 지원
창업경진대회 (군-국방부)	창업 관심 전역예정장병	장병들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와 연계하여 추진
내일희망지원	국방전직교육원 구직등록 소 장병	맞춤형 1:1 상담 지원
전직상담	중장기 전역 예정 간부	맞춤형 1:1 상담 및 취업 및 사회전환 교육



※ 교육별 세부 과정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참고

가. 진로설계교육

목적	군 복무 중 온라인 상시학습을 통해 생애설계와 전역 후 진로에 대한 준비 및 취업준비에 필요한 실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
대상	군 복무 중인 소 장병
신청 방법	온라인 교육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www.moti.or.kr) 사이버교육, 진로지도검사
교육 내용	○ 직업가치관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창업 진단, 구직준비도 검사, 준고령자 직업선호도 검사 ○ 진로설정 방법, 경력관리, 취창업 준비전략, 어학, 직무, IT, 생애설계 등

나. 전직교육_진로교육

목적	군 복무 중 개발·향상된 개인별 직무역량을 확인하고 전역이후의 새로운 경력 목표를 탐색·수립		
대상	중기간부 : 전역 2년 전부터 전직기본교육 입교 전까지 장기간부 : 전역 2년 전부터 전직지원기간 시작 전까지		
신청 방법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교육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		
교육 방법	○소집교육 : 국방전직교육원, 1박2일 ○온라인교육 : 실시간 온라인교육(인터넷, 2일)		
교육 내용	진로탐색 정보 수집, 자기진단, 진로목표설정, 계획서 수립 등		
	구 분	1일 차	2일 차
	오 전	• 교육 입교 / 과정 소개 • 인생 2막을 위한 자기경영	• 진단을 통한 자기분석
	오 후	• 진로 탐색을 위한 정보 수집 • 경험기반의 강점 발견	• 진로목표설정 • 과정 설문 및 수료

다. 전직교육_전직기본교육			
목적	전직목표별(취업, 창업, 귀농귀촌등) 맞춤형 구직역량 향상		
대상	중기간부 : 전역 1년 전부터 전역 전까지 장기간부 : 전직지원기간 시작 일부터 전역 전까지		
신청 방법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교육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		
교육 방법	○소집교육 : 국방전직교육원, 2박3일 ○온라인교육 : 실시간 온라인교육(인터넷, 3일)		
교육 내용	○목표 분야별 1개 과정만 선택 가능		
		장기 기본교육	중기 기본교육
	교육	군관련 시험준비과정	공(군)무원 시험준비과정
	과정	취업준비과정(장교/준부사관)	취업준비과정(일반직) 취업준비과정(기술직)
※ 교육과정 상세 안내 다음페이지 참고			
유의 사항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해 전직상담 및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보훈부 직업능력개발교육비를 지원 ○일부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은 진로교육 이수자도 수강 가능		



※ 전직기본교육 과정 소개

구 분	내 용						
(장기복무) 군 관련직 시험 준비 과 정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및 군무원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 생을 대상으로 응시자격, 시험 준비 노하우 등 교육						
	· 세부 편성 : 연 2회 / 회차별 2박 3일						
	구분	1일 차	2일 차			3일 차	
	오전	등록 및 과정 소개 일(job)과 변화	합격을 부르는 면접 전략			지원서류작성 / 성공면접 전략 및 실습	
오후	일과 변화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이해					
(장기복무) 일 반 취업 준비 과 정	· 일반 기업 및 기관 등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초전직준비 및 취업 준비 전략 등을 교육						
	· 세부 편성 : 연 33회(장교 7회, 준부사관 9회, 공통(은)17회) / 회차별 2박 3일						
	구분	1일 차	2일 차			3일 차	
	오전	교육 입교 / 과정 소개 일과 변화	자기이해와 자기분석			성공면접 전략 및 실습	
오후	직업정보 탐색 전직지원제도 안내	역량분석을 통한 입사지원서 작성 및 실습					
(중기복무) 공(군)무원 시험 준비 과 정	· 공무원 및 군무원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군무원 채용정보, 공무 원(군무원) 준비 노하우 등을 교육						
	· 세부 편성 : 연 8회 / 회차별 2박 3일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오 전	교육 입교 / 과정 소개 채용지력 및 업무 분석 군·공무원 전형방법 안내	자기기술서·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및 실습		최신 면접 트렌드 및 면접 방법		
오 후	출제유형 분석 및 분야별 가산점 제도 공략	시험대비 PSAT 분석 인·적성검사 이론 및 심화					
							설문/수료
(중기복무) 일반취업 과 정 (일반직)	· 일반 기업(기관)의 사무직, 공공기관, 관리직 등 일반직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 로 기초전직준비 및 취업 준비전략 등을 교육						
	· 세부 편성 : 연 20회 / 회차별 2박 3일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오 전	교육 입교 / 과정 소개 일반직 채용동향 트렌드 및 변화방향 설정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 및 실습		최신 면접 트렌드 및 면접 방법		
오 후	직무 및 기업분석 / 채용정보 탐색	개인 역량 분석 및 취업대비 인적성검사 인사담당자 채용간담회					
							설문/수료

(중기복무) 일반취업 과 정 (기술직)	· 일반 기업(기관)의 IT, 항공, 선박, 토목/건축 등 기술직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초전직준비 및 취업 준비전략 등을 교육			
	· 세부 편성 : 연 7회 / 회차별 2박 3일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오 전	교육 입교 / 과정 소개 직업세계의 변화 및 기술직 채용동향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 및 실습	최신 면접 트렌드 및 면접 방법
오 후	기술직 직무 분석 및 취업 전략 수립	개인 역량 분석 및 취업대비 인적성검사	성공적인 자산형성 및 재무 설계	
		기술자격증 탐색	설문/수료	
(중장기복무자 통합과정) 창업 과정	· 창업을 전직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관련 지식 및 정보 제공			
	· 세부 편성 : 연 4회 / 회차별 2박 3일			
	구분	1일 차	2일 차	3일 차
	오전	교육 입교 / 과정 소개	예비창업자를 위한 실전교육	소상공인/1인 창업 사례
		정부 창업지원정책·제도 안내		
오후	창업의 이해, 동향 분석	창업아이템 탐색	창업 기술·자금·마케팅 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중장기복무자 통합과정) 귀농 / 귀촌	· 귀농·귀어·귀산을 전직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관련 지식 및 정보 제공			
	· 세부 편성 : 연 2회 / 회차별 2박 3일			
	구분	1일 차	2일 차	3일 차
	오전	교육 입교 / 과정 소개	귀농작물 선택과 농작물 안전관리	농지 제도와 농지은행 이해
		귀농귀촌 지원정책·제도 및 피해(사기) 예방 대책		
오후	귀농창업의 이해	귀농귀촌 마케팅 전략	귀촌 선배와의 대화	
		귀농귀촌 현장 사례		



라. 맞춤형 전문교육

목적	군 간부의 직무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목표분야로의 취업지원
대상	중·장기복무자로 전직기본교육을 수료한 현역인 자.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과정은 진로교육 수료자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교육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
교육 방법	1주~4개월 / 소집(위탁 교육기관) 및 온라인교육
교육 내용	10개 과정 ·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 국방드론운영자 · 국방보안 전문가 · 군시설관리자 · 군체력단련세부 교육장 관리자 · 영상컨텐츠제작 전문가 · 방위사업관리자 · 카페베이커리 전문가 · 조경전문가
유의 사항	○교육비 : 개인이 교육기관에 교육비 전액 선납 후 수료시 교육비 90% 환급 ※교육비 자비부담률 10% ※교육 중 전역 시 현역 교육기간까지만 일할계산 환급 ○개인별 교육수강은 1개로 제한 *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른 과정에 한하여 1회 추가 수강 가능 * 수료기준 : 80% 이상 교육 이수

마. 찾아가는 진로도움			
목적	청년장병 진로고민 해소를 위한 기초적 진로지도 교육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1:1 취업상담까지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청년장병 특화 진로도움 프로그램		
대상	(진로도움교육) 전역 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장병 (1:1 진로 및 취업상담) 진로도움 교육 이수자 중 희망장병		
신청 방법	(교육) 사·여단급 부대별 편성하여 운영되며 부대 일정에 맞춰 방문 교육 (상담)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진로도움프로그램) 신청		
교육 방법	소집(부대별 지정 장소) / 1일 3H		
교육 내용	구 분	진로도움 교육	1:1 취업상담
	시기	2024년 3월 ~ 2025년 3월 전역예정자	
	편성	- 오프라인 교육 시 : 1일 3H - 온라인 교육 시 : 1일 2H	개인별 3회 내외
	방법	부대 방문, 대대급 통합교육	부대 방문, 개인별 상담
	내용	진로설계 및 취업역량 교육	개인별 취업상담 및 취업 매칭
	* 부대 여건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교육 및 상담 병행		

바.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목적	취업정보제공(취업특강, 기업채용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구인기업 현장면접, 진로·직업 체험 등 등 취업지원을 위한 실천형 취업지원
대상	당해연도 전역예정 단기 및 병장 우선
개최 시기	4월(연 1회, 2일)
주요 내용	○ 기업 및 장병 구직 구인의 만남의 장 ○ 역량개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 현직자멘토링, 모의면접, 컨설팅(자기소개서, 면접, 진로 등),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AI 인·적성 검사 ○ 취업정보 제공 : 취업박람회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최신취업동향, 성공취업영상 등 업로드



사. 청년장병 뉴스타트(Ⅰ)_취업역량 기본과정

목적	청년장병이 희망하는 취업준비 분야별 맞춤형 취업준비 집중교육으로 취업스킬 향상
대상	당해연도 전역예정 청년장병(과정별 세부 자격 확인 필요)
신청 방법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취업역량 기본과정) 신청
교육 방법	1일 또는 1박2일 / 교육원 또는 외부연수원 등(필요시 온라인)
주요 내용	연 50회, 1회당 50여명 취업준비도에 따라 과정을 선택하여 실질적인 취업역량 향상 * 단과반(진로탐색, 입사지원서 대비, 면접 대비 등), 종합반(대기업, 공기업 취업 대비반)

아. 청년장병 뉴스타트(Ⅱ)_취업준비 심화과정

목적	군 특기(경력)를 취업역량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업(직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 개인별 취업 매칭 및 컨설팅
대상	기업에서 요구하는 각종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학습하여 내실있게 취업준비를 원하는 청년장병
신청 방법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취업준비 심화과정) 신청
교육 방법	1박2일 / 교육원 또는 외부시설(필요시 온라인)
주요 내용	군 특기(경력)를 활용할 수 있는 유사 직종의 구인희망 업체와의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후 취업 연계

자. 청년장병 뉴스타트(Ⅲ)_찾아가는 현장 채용설명회

목적	기업, 공직, 업종별, 귀농, 창업 등 다양한 분야별 설명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지원
대상	전 장병
신청 방법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현장채용설명회) 신청
교육 방법	1일 2H / 교육원 또는 외부시설, 군 시설(필요시 온라인)
주요 내용	○ 청년장병의 선호도가 높은 희망 기업, 공직분야의 채용 정보 제공 및 채용연계 기회 제공 ○ 귀농귀촌, 창업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직을 위한 정보 제공



차. 창업인식 개선교육 / 창업동아리 멘토링

목적	전역예정장병 대상 창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창업인재를 육성하고 창업 경진대회(군-국방부-범부처)와 연계한 체계적인 OneStop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교육) 창업 관심 장병 (멘토링) 창업 희망팀, 국방경진 진출팀
신청 방법	(교육) 연(대)대급 부대별 편성하여 운영되며 부대 일정에 맞춰 방문 교육 (멘토링)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창업멘토링) 신청
창업 지원 체계	인식개선 · 연(대)대 단위 방문 교육 (2H) · 실시간 온라인 교육 ⇒ 동아리편성 · 창업동아리 편성 및 등록 ⇒ 창업멘토링 · 전문멘토 연(대)대 방문 멘토링(8H) · 실시간 온라인 멘토링 경진대회 · 각 군 리그 (3~5월) · 국방부 리그 (6~9월) · 범부처 대회 (10~11월) ⇒ 사후관리 · 협업기관(창진원·중진공 등) 창업보육사업 연계 지원
주요 내용	창업인식개선 교육 - 장병들의 창업 관심 및 흥미 향상을 위해 분야별 창업사례 교육을 통한 창업 이해 및 준비도 향상과 유망창업 아이템 선정 및 준비방법 등 창업도전 지원 창업멘토링 - 창업 분야별 전문 멘토단을 통해 병영내 구성된 창업동아리를 찾아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템 선정에서 시장 상품화까지 멘토링 지원

카. 창업경진대회

목적	장병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과 전역 후 실효성 있는 창업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와 연계한 국방창업경진대회 지원				
대상	예선 100팀, 본선 25팀				
신청 방법	○ 각군 경진대회 육군 https://www.army-startup.co.kr 해군 https://www.navy-startup.co.kr 공군 https://www.airforce-startup.co.kr 해병대 https://www.rokmc-startup.co.kr ○ 국방부 경진대회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창업경진대회) 신청				
대회 체계	① 각 군 경진대회 (기본 멘토링) • 각군 경진대회(~5월) * '23년 1,848팀 참가 • 총 100팀 선발(평가)	⇒	② 국방부 경진대회 (심화 멘토링) • 국방부 경진대회(6~9월) • 총 25팀 선발(평가)	⇒	③ 범부처 경진대회 (사업화 멘토링) • 범부처 경진대회(9~11월) • 목표: 3팀 이상 입상
주요 내용	○ 각 군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100개팀 대상 국방부 창업경진대회 개최 ○ 국방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범부처 경진대회 출전 25개팀 선발				



타. 내일희망지원

목적	전역예정인 장병들이 경력전환 시기에 초기상담부터 전역 후 취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전직지원 서비스
대상	○ 초기상담: 구직카드 등록된 전역예정장병 ○ 사후관리상담: 구직카드 등록된 전역예정장병 중 일자리사업 미참여자 중 전역임박자 ○ 취업지원: 구직카드 등록된 취업을 희망하는 전역(예정)장병
신청 방법	국방전직교육원 구직등록 시 자동 참여
지원 시기	구직등록 시 ~ 전역 후 6개월
사업 내용	○ 초기상담 : 구직카드 등록된 전 장병을 대상으로 국방부 전직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맞춤 안내, 사업연계 및 경력상담 지원 등 ○ 사후관리상담 : 일자리사업 미참여자 중 전역임박자에 대한 집중 취업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 상담 ○ 취업지원 : 구인처 직접 개발을 통한 전역예정장병 일자리 발굴/개발 및 장병에게 적합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추천/알선을 통하여 전역예정 장병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3

중·장기복무자 전직지원 체계(중:5년 이상~10년 미만/장:10년 이상)

< 구 직 등 록 > 국방전직교육원(www.moti.or.kr) 홈페이지

전역
1~2
년 전

진로설계교육 (온라인)

* 국방전직교육원(www.moti.or.kr) 홈페이지 가입 후
사이버교육 수강(군 복무 중 상시학습 가능)

진로교육 (국방전직교육원)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개별 신청



전직기본교육 (국방전직교육원)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개별 신청



전직상담 (지역별 전직지원센터)

* 기본교육 수료 후 대면 및 온라인 상담(차년도 12월 말까지)



맞춤형 전문교육

* 기본교육 수료 후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과정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과정
- 군시설전문가 과정
- 군체력단련장관리자 과정
- 국방드론운영자 과정
- 국방보안전문가 과정
- 영상컨텐츠제작전문가 과정
- 카페베이커리전문가 과정
- 방위사업관리자 과정
- 조경전문가 과정

※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
일부 교육과정 지원시기 조정

- 기본교육 수료 후 → 진로교육 수료 후 또는 기본교육 수료 후
- 시기 조정 과정 : 예비전력담당자, 비상대비담당자, 군(공)무원 과정



취·창업 지원

- 군내·공공·민간일자리 취업상담 / 선발·추천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80% 지원 / 최대 150만 원)
- 고용복지센터 및 지자체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박람회, 창업지원프로젝트 등 국방전직교육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전직
지원
기간
중

☞ 교육 및 사업별 상세 내용은 2. 전직지원 사업 안내(52페이지) 참고

4 단기복무자(5년 미만) 전직지원 체계

참여 시기	내용
군 복무 중 상시	진로설계 교육(온라인)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가입 후 사이버교육 수강 (군 복무 중 상시학습 가능)
군 복무 중 희망 시	찾아가는 진로도움 (교육) 사·여단급 부대별 편성하여 운영되며 부대 일정에 맞춰 방문 교육 (상담)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진로도움프로그램) 신청
	뉴스타트 I형(취업역량 기본과정)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취업역량 기본과정) 신청 * 과정별 세부 자격 확인 필요
	뉴스타트 II형(취업준비 심화과정)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취업준비 심화과정) 신청
	뉴스타트 III형(찾아가는 현장 채용설명회)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현장채용설명회) 신청
	창업인식개선 교육, 창업멘토링 (교육) 연(대)대급 부대별 편성하여 운영되며 부대 일정에 맞춰 방문 교육 (멘토링)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창업멘토링) 신청
	창업경진대회 참가 (각군 경진대회) 육군 https://www.army-startup.co.kr 해군 https://www.navy-startup.co.kr 공군 https://www.airforce-startup.co.kr 해병대 https://www.rokmc-startup.co.kr (국방부 경진대회)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 일자리지원 HOME -> 사업참가(창업경진대회) 신청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참가 * 2024.4월 예정(2일)
	국방전직교육원 구직등록 : 구직등록을 통해 취창업 정보제공 및 내일희망지원 사업 참가 가능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등록
	내일희망지원 사업 : 초기상담 및 전역 후 6개월 까지 사후관리 지원 * 구직등록으로 자동 신청
전역 2년 전	
구직등록 후	

☞ 교육 및 사업별 상세 내용은 2. 전직지원 사업 안내(52페이지) 참고



제2장 취업지원기관별 지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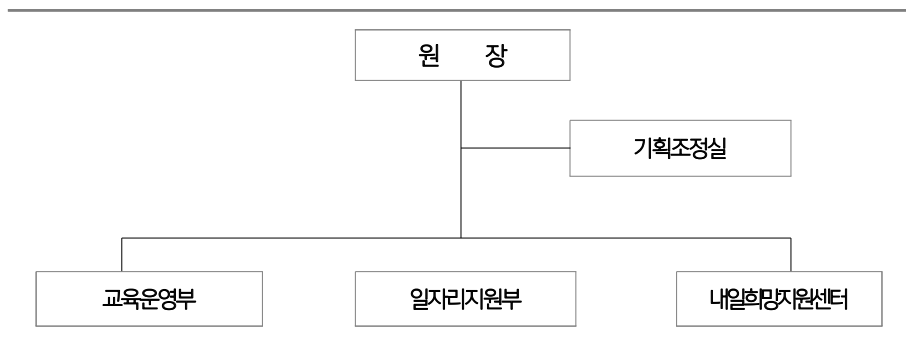
1 국방부(국방전직교육원)

국방전직교육원은 「법률 제12746호 국방전직교육원」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전역예정장병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 지원을 통한 재취업과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국방부 전직지원 전문기관

가. 임무

- 1)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향상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 2) 취업정보 제공, 취업 상담·추천, 구인처 개발, 취업박람회 등 취업 알선
- 3)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제공 및 전직지원정보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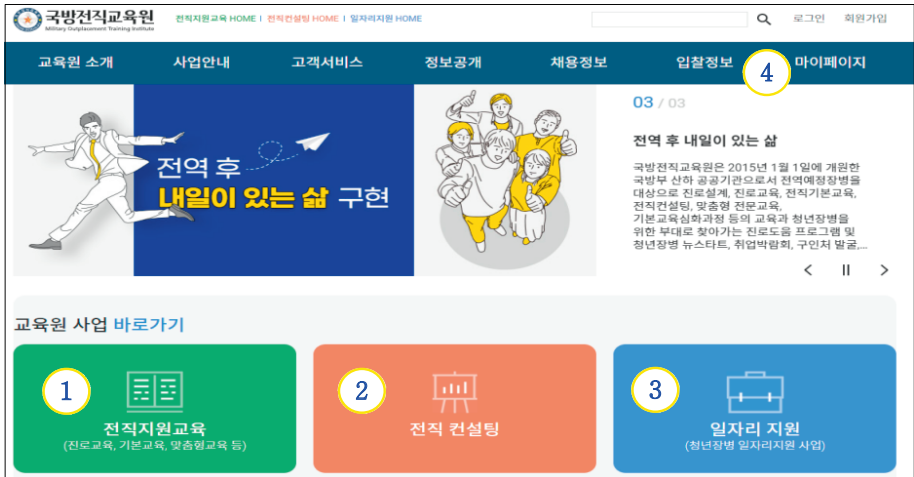
나. 조직



- 1) 기획조정실 : 기획예산, 계획, 대외업무, 정보화, 시설운영 등
- 2) 교육운영부 : 장병에 대한 진로·기본교육, 각종 취업역량 교육
- 3) 일자리지원부 : 일자리지원 사업 수행, 취업 네트워크 강화, 취업관련 간행물 발간
- 4) 내일희망지원센터 : 전직지원 종합 상담, 취업역량향상지원 등 상담 및 채용정보 제공, 취업추천/알선, 구인처개발 등 취업지원 활동

다. 지원대상 : 현역 장병

라. 전직지원정보시스템 운용(www.moti.or.kr)



- ① 전직지원교육 : 진로설계교육(사이버교육), 전직교육(진로교육+전직기본교육), 맞춤형 전문교육 안내 및 일정, 교육신청, 진로지도검사,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
- ② 전직컨설팅 : 컨설팅 소개, 내일희망지원, 전직상담, 고객센터 등
- ③ 일자리지원 : 사업안내, 사업참가 신청, 채용정보, 기업서비스, 고객센터, 취업성공노하우 등
 - 가) 사업안내 : 진로도움프로그램, 청년장병 뉴스타트취업(I~Ⅲ),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창업인식개선교육, 창업멘토링, 창업경진대회
 - 나) 채용정보 : 교육원 제공 채용정보, 기업회원 제공 채용정보, 전역 군인우대 채용정보
 - 다) 취업성공노하우 : 전직성공사례집, 취업성공기, 전역장병 커뮤니티, 오늘의 취업뉴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정보, 진로·직업의 다양한 콘텐츠
- ④ 마이페이지 : 구직카드 수정, 비밀번호 재설정, 교육 및 사업 참여현황, Q&A 문의내역, 스크랩현황, 입사지원현황, 취업결과등록

마. 전직지원 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참고

국방전직교육원 제공 교육 및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직등록' 필수

사업명	대상	내용
진로설계교육	군 복무 중인 소 장병	전직준비 및 생애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사이버교육
전직교육 (진로교육)	중장기 전역 예정 간부	개인별 직무역량을 확인하고 전역 이후의 새로운 경력 목표를 탐색 및 수립
전직교육 (전직기본교육)	중장기 전역 예정 간부	전직목표별 맞춤형 구직역량 향상 교육
맞춤형전문교육	중장기 전역 예정 간부	시험, 자격, 취업 등 맞춤형 교육과정
찾아가는 진로도움	청년장병	진로설계 및 취업역량교육 및 1:1취업상담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현역 장병	취업정보제공, 맞춤형 컨설팅, 구인기업 현장면접 등
청년장병 뉴스타트(Ⅰ) (취업역량 기본과정)	청년장병	취업준비 분야별 맞춤형 취업준비 집중교육
청년장병 뉴스타트(Ⅱ) (취업준비 심화과정)	청년장병	기업별 맞춤형교육 및 개인별 취업매칭 및 컨설팅
청년장병 뉴스타트(Ⅲ) (찾아가는 현장 채용 설명회)	청년장병	기업, 공직, 업종별, 귀농, 창업 등 분야별 설명회 개최
창업인식개선교육	창업 관심 장병	창업 인식개선 및 예비창업 준비과정 등
창업멘토링	창업희망팀 및 국방경진 진출팀	전문 멘토링 집중 지원
창업경진대회 (군-국방부)	창업 관심 전역예정장병	장병들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와 연계하여 추진
내일희망지원	국방전직교육원 구직등록 소 장병	맞춤형 1:1 상담 지원
전직상담	중장기 전역 예정 간부	맞춤형 1:1 상담 및 취업 및 사회전환 교육

바. 기타 취업지원 활동

1) 구직등록 및 자료관리

가) 전역예정 간부들은 전직지원교육 입교 시와 전역 전에 의무적으로 국방전직교육원(www.moti.or.kr)에 구직등록 하도록 규정화

* 구직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전직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취업추천에서 제외

나) 전역 시 「구직등록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직등록증명서」는 전직교육원에 구직등록 완료 후 전산망에서 즉시 출력 가능

* 구직등록된 자료는 기업에 취업추천 시 개인경력 및 자기소개서로 활용

2) 채용정보 획득 및 제공

가) 채용정보 제공(종합 제공)

(1) 전역예정장병에게 적합한 일자리 획득 및 개발한 정보 (구인처 개발)

(2) 취·창업 전문 사이트 및 구인처 개발 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

(3) 타 취업 전문기관과 제휴를 통해 획득한 정보

(4) 구인 업체가 직접 국방취업전산망에 구인 요청한 정보

나) 제공방법 : 국방전직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전산망(인트라넷), 국방일보, 개인 휴대폰 문자/알림톡 등

* 국방전직교육원 구직등록자는 전직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www.moti.or.kr) 실시간 수시 확인 가능

3) 취업 추천/알선 상담 : 교육원 내일희망지원센터 상담(방문, E-mail, 전화 등)

4) 온라인 입사지원 : 공개 광고를 활용한 취업 추천 원칙, 구직신청자는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채용정보 하단 온라인입사지원 신청

문의처

• 국방전직교육원 내일희망지원센터	☎ 1588-9402 → 3번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 02)748-6631 군)900-6631
• 육 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 042)550-7532 군)960-7532
• 해 군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042)553-1153 군)910-1153
• 공 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042)552-1237 군)920-1237
• 해병대 복직근무참모처 일자리정책과	☎ 031)8012-2814 군)928-2814

2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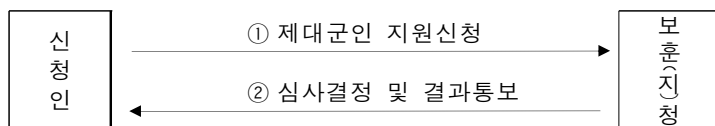
가. 보훈(지)청 보훈특별고용

제대군인지원센터-열린도우미-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추천 신청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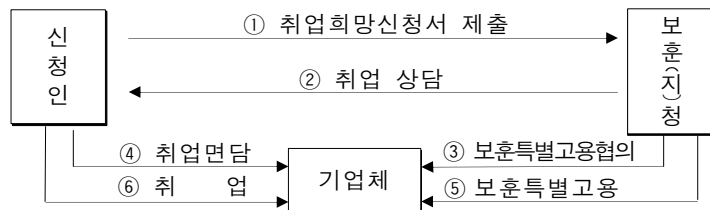
- 1) 관련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9조
- 2) 취업지원 대상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
- 3) 취업대상 기관/업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일상적으로 20인 이상
(단, 제조업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업체 및 단체
- 4) 직장 알선 횟수 : 3회
- 5) 취업지원 신청 및 직장 알선 절차

가) 직장 알선 절차

(1) 제대군인지원 신청



(2) 취업지원 신청



나) 국가보훈부 산하 지방보훈(지)청 연락처 : 붙임 #9 참조

나.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창업 지원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1) 대상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2) 내용 : 진로상담 및 취·창업교육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으로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3) 신청 및 지원 절차
 - 가)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등록 신청
 -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제대군인지원센터(붙임 #9 참조)
 - 나) 전화·방문상담 또는 온라인 취·창업 상담 신청
 - *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 다) 전문컨설턴트 취·창업상담(온라인, 오프라인)
 - 라) 취·창업 지원
- 4) 기능
 - 가) 진로상담, 경력설계·목표설정, 이력서 작성·면접지도 등 전직컨설팅 지원
 - 나) 취·창업 워크숍, 지방순회상담, 군부대 순회교육, 멘토링 등 전직지원
 - 다) 전문기관 위탁교육·사이버교육 등 공공·민간기관, 협회, 기업체, 대학 등 전문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행
 - 라) 교육비지원신청(붙임 #7 참조) 및 전직지원금(붙임 #8 참조) 신청 및 지급
 - 마) 기업 등의 채용계획과 잡서칭 활동으로 채용정보 제공
 - 바) 동행면접, 일자리 두드림 데이 행사(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기업협력 활동을 통한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채용추천
 - 사) 창업희망자에 대하여 업종 및 상권분석, 창업절차, 창업자금 조달, 창업능력 향상 등 창업컨설팅 지원 및 창업경진대회 실시
 - 아)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www.vnet.go.kr) 운영, 「리;스펙 제대군인」誌(vnet-magazin.go.kr) 등 제대군인 홍보



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과정

- 1) 대상 :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전역예정 포함)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
- 2) 지역단위 과정별 현황(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3) 유의사항
 - 가) 교육비는 국가보훈부 지원 90%, 자부담 10%
 - 나) 전문기관 위탁교육 과정 중 3과정 지원
 - * 중도 퇴소의 경우도 이수료 간주(기회 상실)
 - 다) 문의 및 신청 : 해당 교육훈련 기관 또는 각 센터(교육훈련팀)

라. 제대군인지원센터 현황

☎ 전국 대표전화 1666-9279

구분	주소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73 양지빌딩 3층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1103호
경기남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경기남부보훈지청 별관 2층
강원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10 춘천 B&I 지식산업센터 915호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 4층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대전지방보훈청 5층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저층부 3층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층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KT서성빌딩 2층
인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층

3

고용노동부

가. 고용노동부 취업 안내

워크넷 혹은 HRD 홈페이지 참고

1) 주관 : 전국 102개 고용(복지+)센터(www.workplus.go.kr)

2)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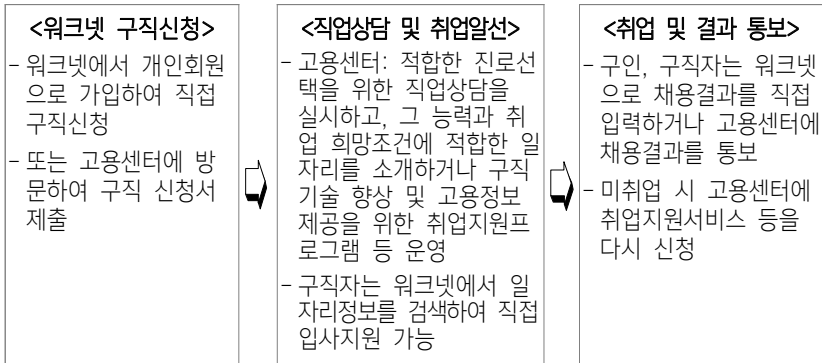
가)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신청

(1) 구직자에게 일자리 정보 및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2)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통합적인 고용서비스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제공

* 소득, 재산 등 지원요건 해당 시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흐름도 >



나) 훈련비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의 지역별·직종별
훈련과정에 대한 세부정보 조회 및 확인 가능

* 추천 : 국방부, 보훈부 / 운영 : 고용부

3) 이용대상 : 전 국민, 전역 후 활용 가능

4) 문의처

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HRD-Net(www.hrd.go.kr) 홈페이지



4

군관련 취업지원기관 문의처

구 분	문 의 처
국 방 부	국방일자리정책과 02)748-6631 (군 : 900-6631)
국방전직교육원	대표번호 1588-9402 홈페이지 : www.moti.or.kr
육군본부	육군취업지원센터 042)550-7536 (군 : 960-7536) 홈페이지 : www.army.mil.kr (육군취업지원센터)
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 042)553-1153 (군 : 910-1153) 홈페이지 : www.navy.mil.kr (해군취업지원광장)
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 031)8012-2810~6 (군 : 928-2810~6) 홈페이지 : www.rokmc.mil.kr (해병대 전직지원)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232~9 (군 : 920-1232~9) 홈페이지 : www.airforce.mil.kr (공군취업정보광장)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0~41 홈페이지 : www.mpva.go.kr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대표번호 1666-9279(군인친구) 홈페이지 : www.vnet.go.kr

제3장 취·창업 정보

1 취·창업 정보제공 주요 사이트

사이트명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주요대상
국방전직교육원	www.moti.or.kr	1588-9402	
육군 취업지원센터	www.armyjob.mil.kr	042)550-7537	
해군 취업지원광장	www.navy.mil.kr	042)553-1153	
공군 홈페이지	www.airforce.mil.kr	042)552-1239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https://recruit.mnd.go.kr:470	02-748-5297~5299	국방부주관 군무원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https://www.goarmy.mil.kr:447/official	042-550-7149 042-550-7106	육군주관 군무원
해군/해병대 군무원 채용관리	https://www.navy.mil.kr 해군모집→군무원채용관리	해군) 042-553-1284 해병) 031-8012-3142	해군/해병대주관 군무원
공군 군무원 채용관리	https://go.airforce.mil.kr:448	042-552-1453 042-552-1457	공군주관 군무원
기획재정부 잡알리오	https://job.alio.go.kr	044-215-2150	공공기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	110	국가기관/공공기관
워크넷	www.work.go.kr	1577-7114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 플랫폼
K-Startup창업지원포털	www.k-startup.go.kr	1357	창업
클린아이잡플러스	https://job.cleaneye.go.kr	044-205-3988	지방공공기관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s://www.vnet.go.kr	1666-9279	제대군인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02-3145-5114	상장기업
중소기업진흥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02-3215-2674	중소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https://goodcompany.korham.net	02-6050-3882	우수 중소기업
서울일자리포털	https://job.seoul.go.kr	1588-9142	서울시 구인구직
잡아바	https://www.jobaba.net	031-270-9988	경기도 취업지원
HRD-NET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hrd.go.kr	1350	직업훈련포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www.kdia.or.kr	02-3270-6045	방위산업체



2 군 내외 주요 일자리

〈군 공통〉

일자리 명	문의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국방부 동원기획과	(02)748-5209
	육군 예비군조직관리과	(042)550-5534, 5552
	해군 예비군과	553-3522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국방부 병영문화혁신과	(02)748-5166
군무원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02)748-5297~9
	육군 장교군무원선발과	042)550-7145~6
	해군 군무원인사과	042)553-1284
	공군 군무원인사과	042)552-1453, 1457
	해병대 군무원과	031)8012-3142
복지시설 기간제근로자	국군복지단	(02)2225-6417
	육군 군무복지운영과	(02)550-7121
	해군 복지정책과	(042)553-1176
	공군 복지시설운영과	(042)552-1523, 7
	해병대 복지운영과	(031)8012-2822
군사학술용역 연구관	육군 교육사	(042)878-6427
	해군 교육사	(042)553-2216
	공군 전투발전단	(042)552-5454
	합참	(02)748-3953
	안보지원사	(02)731-4072
비상근 예비군	육군 인원동원정책과	042)550-5527
	해군 동원과	042)553-3511
	공군 동원과	042)552-3411
	해병대 동원예비군과	031)8012-3391
	국군수송사 정작동원과	02)3419-7627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공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지원과	044-205-4337
	육군 취업지원센터	042)550-7536
	해군 일자리정책과	042)553-1154
	공군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236
	해병대 일자리정책과	042)553-2811

일자리 명	문의처	
학군단 설치대학 안보학 교수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4
학·군 제휴대학 군사학과 및 부사관학과, 특수학과 교수	육군 취업지원센터	042)550-7536
	해군 일자리정책과	042)553-1154
	공군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236
	해병대 일자리정책과	042)553-2811
군 특성화고 산학 겸임교사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02)748-5187
	육군 취업지원센터	042)550-7531
	해군 일자리정책과	042)553-1154
	공군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236
	해병대 일자리정책과	042)553-2811
학군단 예비역 교관/행정관	육군 취업지원센터	042)550-7531
	해군 일자리정책과	042)553-1154
	공군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236
	해병대 일자리정책과	042)553-2811
부사관 학군단 예비역 단장, 교관 및 행정관	육군 취업지원센터	042)550-7531
	해군 일자리정책과	042)553-1154
	공군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236
	해병대 일자리정책과	042)553-2811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공고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학술기획팀	042)869-6371~2
군인공제회 및 산하 사업체 군 경력직	군인공제회 인재개발팀	02)2190-2021~5
MOU체결대학 교수/교관/정비사 등	공군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236

※ 일자리별 공고는 국방부 및 각 군 홈페이지, 각 군 취업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군 주요 일자리〉

일자리 명	문의처	
육 군		
육군 전투지휘훈련단 예비역 장성 관찰관	교육사 지휘훈련단 계획지원처	(042)878-5115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042)550-7534
육군 전투지휘훈련단 예비역 BCTP 교관	교육사 지휘훈련단 계획지원처	(042)878-5115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042)550-7534
육군 군단급 교육훈련 전문평가관	정작부 교육훈련정책과	(042)550-3324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042)550-7534
육군 KCTC 교관	과학화전투훈련단 훈련부 훈련계획과	(033)460-8316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042)550-7534
육군 교리연구위원	교육사령부 교리부 교리기획과	(042)879-6425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042)550-7534
육군 전문상담교관 및 리더십코칭전문관	교육사 리더십/임무형지휘센터 인성/상담교육과	(042)878-6748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042)550-7534
육군 미래혁신연구관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미래전략과	(042)550-6903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042)550-7534
육군 임관종합평가관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 학교교육과	(042)879-6664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042)550-7534
육군 정책발전연구위원	육본 정책실 정책조정과	(042)550-2123(6211)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042)550-7534

일자리 명	문의처	
해 군		
해군발전연구위원	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	042)553-1154
	해군 미래혁신연구단 비전/개념연구과	042)553-5527
예비역 연습지원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042)553-1154
	전평단 전쟁연습실 계획운영과	042)553-7512
해상훈련 전문평가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042)553-1154
	8전단 표준화/평가과	055)549-6046
해군교리연구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042)553-1154
	전평단 교리발전처 교리기획과	042)553-7711
해군 임관종합평가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042)553-1154
	교육사 평가실	055)907-2092
해군 강의전담초빙교수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042)553-1154
	해군사관학교 교수부 교무처	055)907-5213
리더십코칭전문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042)553-1154
	해군리더십센터 교육부	055)907-2847
음향자료지원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042)553-1154
	작전사 해양정보단	055)549-5846
해 병 대		
해병대 전투발전연구위원	미래혁신처 개념발전과	031)8012-4223
	복지근무참모처 일자리정책과	031)8012-2811~6
해병대 전투모의센터 전문교관/기술교관	전투모의분석센터 M&S발전운영과	031)8012-2713
	복지근무참모처 일자리정책과	031)8012-2811~6
해병대 전문평가관	교육훈련참모처 훈련과	031)8012-3513
	복지근무참모처 일자리정책과	031)8012-2811~6
해병대 훈련관찰관	교육훈련참모처 훈련과	031)8012-3513
	복지근무참모처 일자리정책과	031)8012-2811~6
해병대 임관종합평가관	교육훈련참모처 교육정책과	031)8012-3521
	복지근무참모처 일자리정책과	031)8012-2811~6



일자리 명	문의처	
해병대 항공교육훈련전문평가관	안전단 안전진단/조사과	031)8012-2576
	복지근무참모처 일자리정책과	031)8012-2811~6
해병대 교리연구관	교육훈련참모처 교리발전과	031)8012-3541
	복지근무참모처 일자리정책과	031)8012-2811~6
공 군		
항공력발전 연구위원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232
연합·합동훈련 평가관(훈련관찰관)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232
워게임 운영요원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232
항공무기정비 전문평가관	공군본부 항공무기관리과	042)552-4171
통신전자 전문평가관	관제사 전자체계처 기반통신과	031)669-6425
	7전대 전술통신과	031)690-2104
전술항공통제 전문평가관	항공지원작전단 교무과	033)730-5613
교리연구관	전발단 교리발전과	042)552-5825
임관종합평가관	교육사 평가실	055)751-6511
강의전담교수	공군사관학교 교학과	043)290-6322
리더십 전문연구원	보라매리더십센터 계획운영실	043)290-4313

※ 일자리별 공고는 국방부 및 각 군 홈페이지, 각 군 취업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1 목 적

공직자가 재직 중에는 퇴직 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 근무부대(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공직윤리 확립

2 관련 법령

- 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4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 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 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제32조(취업심사 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제35조의2(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35조의4(청탁·알선에 대한 신고)
-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가. 취업제한제도 개요

- 1) 제한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 가) 대령 이상의 군인, 2급 이상의 군무원
 - 나)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및 감찰업무 수행부서(별도 지정)에 근무하는 중령, 3급 군무원
 - 다) 국방부 감사관실 직원 중 상사 이상의 군인
 - 라) 국방부/소속기관 회계직 중 상사 이상의 군인



2) 제한내용

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취업여부 판단 시 직위나 직책, 상근/비상근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함(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나)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
대상기관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붙임 #11, 12 양식],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승인 신청'[붙임 #12, 13 양식]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취업가능)
되거나 특별한 승인사유가 인정(취업승인)된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음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

* 준장~상사 군인 및 1~3급 군무원은 부서 전체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 소장 이상의 군인은 기관 전체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

다) 재산등록직위(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및 감찰업무 등)에 근무하여 재산등록 대상자였으나 해당 보직을 마치고
의무면제 재산변동신고를 한 경우, 퇴직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퇴직일이 아닌 의무면제신고 기준일로부터 3년까지임

- 3) 취업심사대상기관(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관보에 고시)
- 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 나) 사기업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다)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 라)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
 - 마) 시장형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등)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공직유관단체(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 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 학교. 단,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지 않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 가능
 - 아) 의료법상의 종합병원과 그 병원을 설립한 법인
 - 자) 기본재산 100억 원 이상의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 차) 모든 방위산업체와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 * 취업심사대상기관 조회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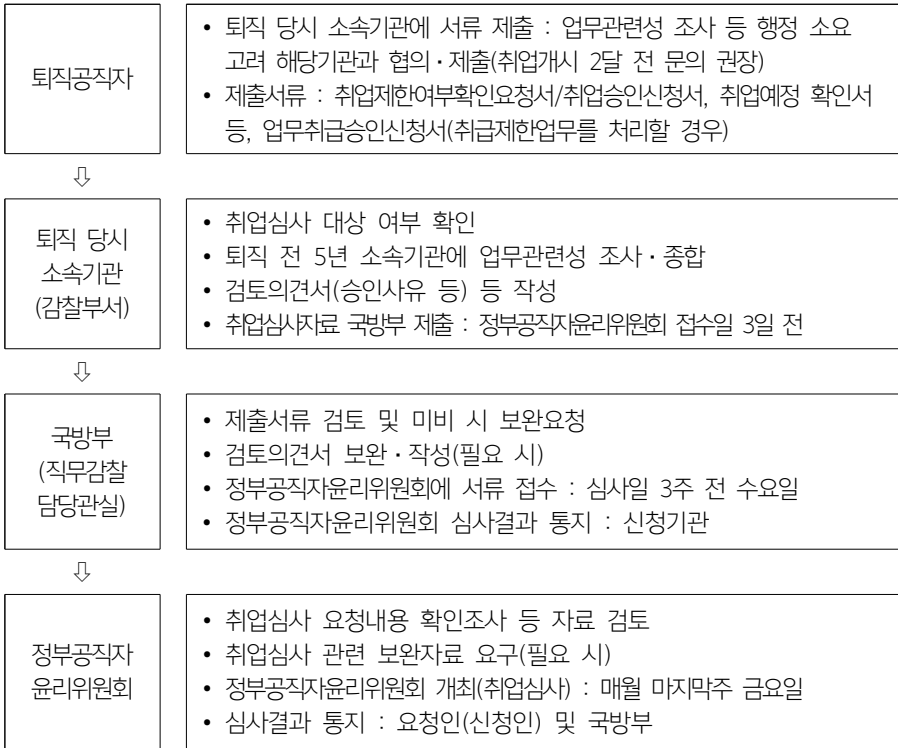
나. 취업심사 종류

- 1)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여부를 심사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 2) 취업승인 심사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가 인정되지는 여부를 심사
→ 취업승인사유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취업승인

다. 벌 칙

- 1) 취업심사대상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공직자윤리법」 제30조)
- 2)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공직자윤리법」 제29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2회 임의취업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 등 조치

라. 취업심사 신청 및 처리 절차



* 취업심사 면제 업무 : 비상대비업무, 예비군지휘관 업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한 단순 집행적 업무, 사립대학교 교원(교수·부교수·강사 등),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동일분야 취업

→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은 가능하나, 인사혁신처의 임의취업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그 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요구 시 증빙자료 제출은 필요

◆ 취업심사 관련 문의 : 퇴직 당시 소속부대 감찰부서 담당자
국방부 감사관실[☎ 02) 748-6921, 군) 900-6921]



4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및 행위제한

가. 업무취급 제한(모든 공직자)

1) 제한내용

- 가) 본인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급금지
 - * 직접 처리한 업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업무를 직제·정관·규정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업무
 - 나) 다만, 국가안보,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해당업무의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가능
- 2) 벌칙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소장 이상 군인)

1) 업무취급 제한내용

- 가)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과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일정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취급금지
 - * 국가안보,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해당업무의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가능
- 나) 벌칙 :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 가) 제출시기 : 퇴직한 날로부터 1, 2년이 경과한 후 각 1개월 이내
- 나) 제출내용 : 취업기관에서 수행한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한 업무내역<붙임 #14 참조>, 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다) 절차 : 업무내역서 작성 및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확인 후 퇴직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 퇴직 2년 전 소속기관 의견서 첨부 → 국방부(감사관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업무내역서 비공개)
- 라) 벌칙 : 업무활동 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다.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모든 공직자)

- 1) 제한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부대)의 공무원(군인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 2)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모든 직급에 해당)

가.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 불가(제82조)
-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 요구(제83조)
- 3) 국민권익위원회는 제82조를 위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취업해제조치 요청 → 국방부장관 명의로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그의 해임 요구 →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등은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할 의무 발생

나. 부패행위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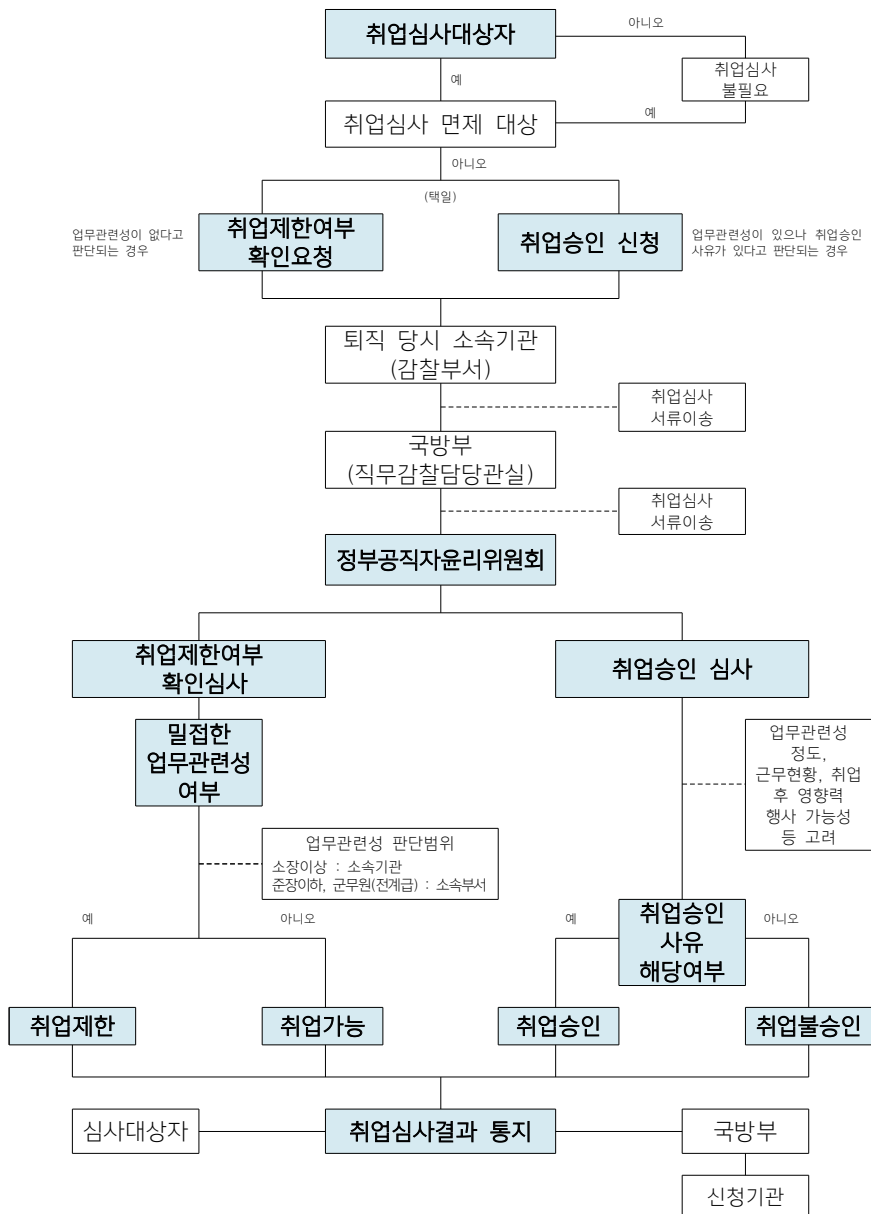
-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주요 유형 : 뇌물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문서 위·변조 등

다. 벌칙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89조)

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절차

- 1) 비위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내에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장(각 군 감찰실)을 거쳐 국방부 장관(감사관실)에게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
 - 2) 국방부 감사관실은 접수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소속기관(각 군 본부 감찰실)을 통해 비위면직자에게 통지(사유도 통지)
- * 취업제한 여부 판단기준 :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은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업 제한, 영리사기업체 등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참고】 취업심사 흐름도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제 3 편

제대군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알아보기!

제1장 연금관련 제도

제2장 군 복지시설 및 군 병원

제3장 군인공제회

제4장 국가보훈부 제공 혜택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제1장 연금관련 제도

1 군인연금 급여제도

[군인연금 홈페이지 참고](#)

가. 군인연금 급여(총괄)

1) 전역사유별 급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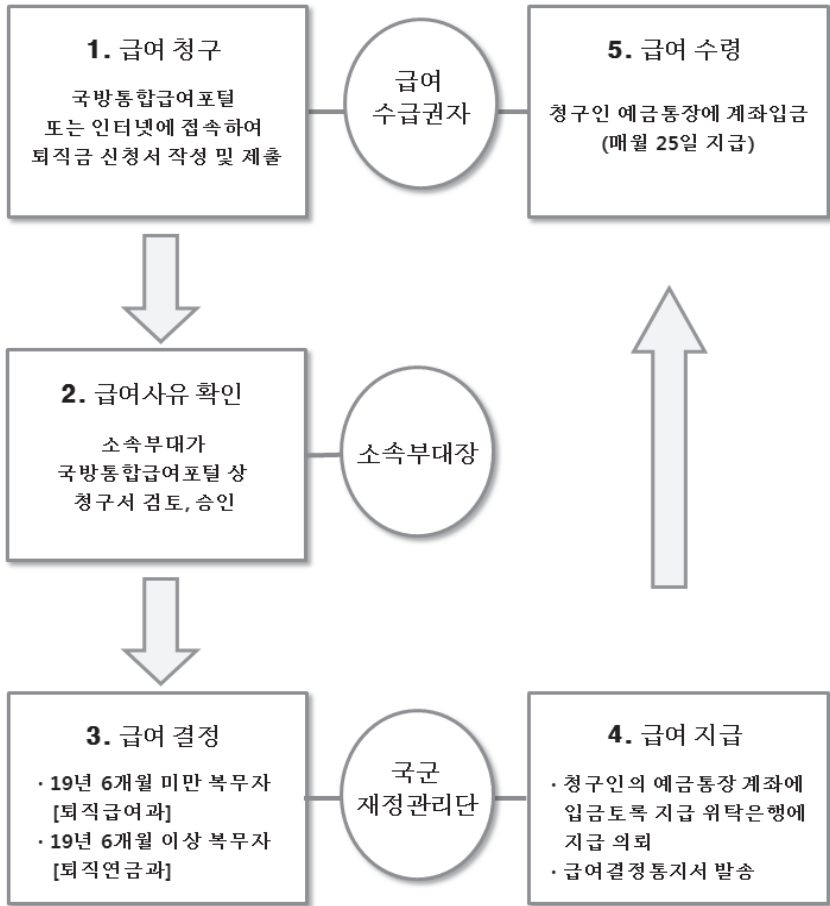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요 건		급 여 종 류	지급처
정상전역		19년 6개월 이상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국군재정 관리단
		19년 6개월 미만		퇴직일시금	
상이전역		상이등급(1~7급)		상이연금 (기준소득월액의 32.5~52%) * 정상 전역시의 퇴직연금과 비교, 유리한 급여 선택	
		장애보상금등급(1~4급)		- 일반장애보상금(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3~9배) * 간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보상금의 1.88배) - 전상(일반장애보상금의 2.5배)	
사 망	일반 사망	19년 6개월 이상	연 금 선택 시	퇴역유족연금 (퇴역연금의 60%), * '13. 7. 1. 이전 임관자 70% 퇴역유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일시금 선택 시	퇴역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19년 6개월 미만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순직 · 전투 사망	19년 6개월 이상	연 금 선택 시	순직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가산액: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퇴역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일시금 선택 시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19년 6개월 미만	연 금 선택 시	순직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가산액: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사망조위금	
			일시금 선택 시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 퇴직수당은 모든 지급요건에 해당(1년 이상 복무 시)

** 군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연금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

2) 급여의 청구 및 지급

* 「군인연금법」 제8조, 제56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58조



※ 군인연금 압류방지를 위한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도입 ('19.7.1.부)

↳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따른 최저생계비 보장('21년 기준 185만 원)



3) 급여지급 위탁은행(「군인연금법」 제56조)

지급처	지 급 금 용 기 관
국방부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체국, 외환, SC제일, 우리, 기업
육 군	국민, 외환, 우리, 기업, 하나, 농협, 신한, 우체국, 동양종금
해 군	우체국 및 전 금융기관(한국은행, 특수은행, 외국계 은행, 새마을금고 제외)
공 군	전 금융기관(한국은행, 외국계 은행, 축협 제외)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지역농협, 수협, 신협, 미래에셋대우, 새마을금고

나. 퇴직급여

1) 퇴직급여의 종류, 지급요건 및 지급액(「군인연금법」 제21조, 제28조)

종 류	지 급 요 건	지 급 액
퇴역연금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 (사망할 때까지 지급)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1.9%)
퇴역연금 일시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 [0.975+{(복무연수-5)×0.0065}]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 20년을 초과하는 복무 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기준소득월액×공제복무연수× {0.975+(공제복무연수×0.0065)}
퇴직일시금	군인이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	• 5년 미만 복무자 : 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0.78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 : 기준 소득월액×복무연수×[0.975+{(복무연수-5)×0.0065}]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1.1.~12.31.)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에 당해 연도 군인보수 인상률을 곱하여 산출, 매년 5월 초 확정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경우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2) 퇴직수당(「군인연금법」 제37조, 시행령 제39조)

가) 대상 :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복무 중 사망한 자에게 지급

나)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지급비율

(1) 복무연수별 지급률

기간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 이상
지급률	6.5/100	22.75/100	29.25/100	32.5/100	39/100

*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3) 연금지급

가) 지급기간 : 퇴역연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달로부터 사망한 달까지 지급되며,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있을 때는 그 유족에게 퇴역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함('13. 7. 1. 이전 임관자는 70% 적용)

* 단, 25세 미만 및 장애 자녀(해당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포함)에게는 70% 적용

나) 해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의 경우(연금지급 특례) : 외국으로 해외 이주하게 된 때 또는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택일

(1)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연금을 계속 수령하거나

(2) 연금을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 연금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이 경우 출국한 다음 달 또는 국적상실 다음 달을 기준으로 1년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

4) 연금의 지급정지

지 급 정 지 사 유	정지금액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다만,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 - 국가 및 지자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채용된 임직원 중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이상일 때	전 액
상시 5인 이상 근로사업장 기준 근로자 1인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 수급권자	일부정지 (연금의 50% 범위 내)

* 전액 지급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과분 발생 시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

5)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 한 사 유	제한금액
-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군사기밀보호법(제13조의 2와 제15조에 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급여는 전액 제한되나 이미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전 액
-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지명수배·통보된 경우 포함) *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은 때, 지명수배·통보가 해제된 때는 잔여금 및 이자 가산 지급	50%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에 의한 징계로 해임된 경우	25%

*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국군재정관리단에 신고

6) 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 신고

가) 신고사항 : 신분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 또는 미신고로 과오지급 된 급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

구 분	구 비 서 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임용·퇴직하였을 때	• 재취업·재퇴직신고서 • 인사명령 사본
수급권 상실 (사망, 재혼, 미성년자 25세 도래, 장애상태 해소 등)	•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 사망진단서 • 장애상태 해소 진단서
수급권 이전	•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청구인통장사본
외국 거주	• 출국 시 : 대리인 선임장 •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영주권자/시민권자/1년 이 외국 거주 대상, 매년 10월 31일 기준, 연 1회, 12월 31일까지 제출) • 국내 일시체류자(시민권자) : 주민센터에서 국내거소 사실 증명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제출 • 영주귀국 : 주민등록초본에 '이민출국/국적상실말소' 후 주민등록 재등록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

나) 신고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7) 연금수급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 우편, FAX, 민원실 방문

가) 주소 : (우 04345)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 국군재정관리단 감사실

나) 전화 : (02)3146-6015

팩스 : (02)748-7693 태블릿(문자 수신 전용) : 010-5033-6015~6



8) 연금소득 과세

가) 과세대상 : 퇴역연금(유족, 상이연금은 비과세대상)

나) 과세금액 = 연금월액 × '02년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 기여금 불입월수

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 : 연금소득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로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 과세대상자에 한함, 변동사항 없을 시 제출 불요

라) 종합소득신고 : 연금소득 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타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9) 연금일부지급정지 제도

가) 근거 : 「군인연금법」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군인 재해보상법」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나) 대상 :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수급자 중 연금 외 소득(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자

다) 정지금액 : 연금 외 소득이 고용노동부 고시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크기에 따라 연금액의 1/2까지

라) 소득확인 및 신고

(1) 근로소득자 : 소속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사실 및 보수를 신고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소득사실을 확인

* 단, 소속 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군재정관리단 간 통보일자 차이로 인하여 적시에 소득 자료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공 못할 수 있으므로 재취업자는 국군재정관리단(퇴직연금과)에 확인 후 연금 외 소득 신고서(붙임 #17)를 제출

(2) 사업소득자 : 창업 또는 소득변동 등 당해 연도 사업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상 소득을 국군재정관리단(퇴직연금과)에 연금 외 소득신고서 제출

* 미신고 시 국세청 확정소득에 따라 연금정지액이 과다(1~2년 상당 누적금액) 발생

마) 정산 : 국세청 최종 소득이 확정되면 지급정지액을 재계산하여 기존에 지급 정지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수 또는 환급

바) 조정 : 소득변동(급여인상 · 감액, 이직, 퇴직, 개 · 폐업 등)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금 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붙임 #18 참조) 제출 (FAX : 02-797-0350)

* 증빙서류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폐업증명원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10) 퇴역연금 등 종류 변경 신청

가) 근거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0조(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나) 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한 사람 중 급여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 최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

다) 신청방법 : 급여지급 시작 전 또는 지급일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서를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출

* 기수령한 급여는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변경 신청 가능

* 연금종류 변경신청서 서식은 군인연금홈페이지(www.mps.mil.kr) 서식방에서 출력
전화 : (02)3146-6498

11) 해외송금 신청 서비스

가) 제도 : 해외 거주 중인 연금수급자 대상 해외은행으로 직접 송금하여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 및 수수료 감면

나) 신청방법 : 해외송금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계좌) 사본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출

* 전화 : (02)3146-6483, 6481(국제전화 82-2-3146-6483)



다.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종류 및 신청

종 류	지 급 요 건	지 급 액
퇴역·상이 유족연금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자가 사망한 때	퇴역, 상이연금의 60% (13.7.1. 이전 임관자 : 70%)
퇴역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 한함) 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한 때	$\text{퇴역연금일시금} \times \frac{1}{4} \times \frac{(36 - \text{연금수령 월수})}{36}$
퇴역유족연금 부가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때(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유족연금일시금의 1/4
퇴역유족연금 일시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	퇴역연금일시금과 동일
퇴직유족일시금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공무 외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과 동일

2) 신청 구비서류

가) 유족연금 청구서 1부

나)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라)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마) 사망자 기준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1부

바) 전역(제적) 인사명령 사본 1부(소속부대에서 제출)

* 유족대표자를 선정,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3)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가) 신청 시기 : 군 복무 중 또는 연금수급 중 사망 시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02-3146-6483)과 신청, 유족연금청구서 서식은 군인연금 홈페이지(www.mps.mil.kr) 「연금서식」 참조

나) 유의사항

- (1) 유족급여의 청구시효는 5년이며, 기간 내에 미청구 시 청구권 소멸
- (2)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서류 제출 지연에 따른 반환(이자 가산)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

4) 유족연금의 지급

가) 유족의 범위

-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인 자 포함,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재결합 시 유족으로 인정('14.10.15. 이후)
- (2)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상태에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 제외)
- (3)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는 제외) :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25세 미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25세 이상인 손자녀
- (4) 부모,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제외)

나) 유족의 우선순위 및 동순위자의 경합

- (1)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재산상속 순위 적용
- (2) 동순위자의 유족이 2인 이상 있을 때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 (3) 대표자 선정 시는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다) 재산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제1003조)

-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
- (2) 동순위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 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
- (3)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됨. 즉, 유족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동순위임

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

- (1) 사망한 때
-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 (4)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에 달한 때
- (5) 25세 이상 자녀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때

5) 유족이 없는 경우의 특례 급여 지급범위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는 소속기관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 사망자의 분묘, 제기, 기념비 마련에 사용

6)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가) 전액 지급정지

-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케 한 경우
- (2)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전에 그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자/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

나) 1/2 정지

- (1)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수급권자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상이연금수급권자가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각각의 유족연금액의 1/2을 감액
-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의 1/2을 감액 지급(순직유족연금 제외)
- (3)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사망한 때

라. 심사청구

- 1)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된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되면 청구할 수 없음
- 2) 이의신청 기간
 - 가)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나)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문의처

• 국방부 군인연금과

☎ 02)748-6671 군)900-6671



마. 인터넷 군인연금 홈페이지 이용 안내

1) 인터넷 주소 : www.mps.mil.kr

2) 이용대상 및 내용

대 상	내 용	비 고
연금수급자	• 증명서 발행(6종)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이용 가능
	• 각종 연금정보 조회 및 개인정보 변경, 민원신청(4종)	회원가입 시 이용 가능
연금수급자 현역, 국민	• 군인연금 제도 및 연금제도 연구자료 • 급여청구 및 절차 등 연금업무안내 • 민원신청안내, 연금통계, 유권해석 및 법원판례, FAQ 등 연금관련 정보조회	비회원도 이용 가능
현역	• 퇴역연금/일시금 신청	

3) 회원가입 및 증명서 발급 절차

가) 회원가입은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메뉴에서 ID, 비밀번호, 연금번호, 회원 기본정보 등을 입력하여 등록

나) 회원으로 등록한 ID로 로그인 후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등록

* 공인인증서는 일반금융기관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 신청 및 발급

다) 증명서 발급 절차

(1)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한 다음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2) 민원서비스 메뉴 → 증명서 발행 → 원하는 증명서 발급 매수 및 용도 지정 → 출력버튼 → 인증서 암호확인 → 증명서 발급

2

군인 재해보상제도

가. 정 의

군인연금 홈페이지 참고

- 1) 군인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되어 퇴직 또는 요양 시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2) 급여의 종류

종 류	지 급 요 건	지 급 액
상 이 연 금 (공무상 상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 후 퇴직 전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된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 1급 : 기준소득월액의 52% 2급 : 기준소득월액의 48.75% 3급 : 기준소득월액의 45.5% 4급 : 기준소득월액의 42.25% 5급 : 기준소득월액의 39% 6급 : 기준소득월액의 35.75% 7급 : 기준소득월액의 32.5%
순직유족연금 (공무상 사망)	19년 6개월 이상 복무 중 공무상 사망자 19년 6개월 미만 복무 중 공무상 사망자	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가산액: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사 망 보 상 금	전 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일반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장 애 보 상 금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 포함)	- 일반장애보상금 1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2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3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4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 간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특수직무공상 : 일반장애보상금의 1.88배 - 전상 : 일반장애보상금의 2.5배

*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 제33조, 제35조, 제3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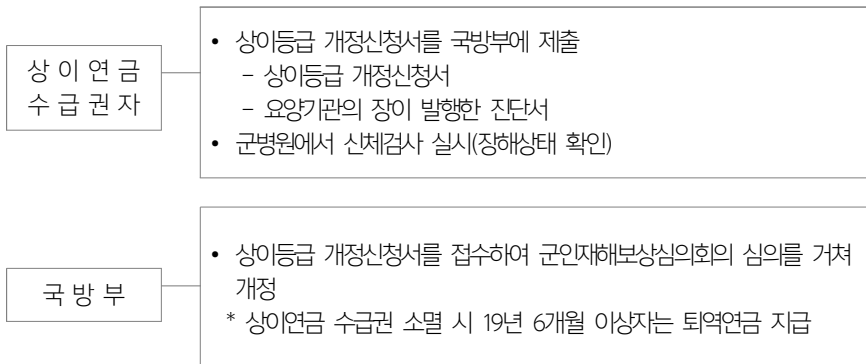
- 3) 재해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자의 가해사실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항을 반드시 소속부대의 장에게 신고하고 국방부장관(군인재해보상과장)과 협의(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나.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 제8조)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급여 결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 1) 공무상 질병·부상 해당 여부
- 2) 상이등급의 결정·개정 및 소멸
- 3)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사망 해당 여부
- 4)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제한 해당 여부
- 5) 구상권 행사 여부 및 급여조정에 관한 사항

다. 상이등급 개정 및 소멸

- 1) 시기 :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개정하며, 장해의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
- 2) 상이등급의 개정



라. 재해보상 급여의 제한

1) 상이연금 지급제한(「군인 재해보상법」 제30조, 제42조~제44조)

제한액	제한사유
전액 지급 제한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장애 발생 시
반액 지급 제한	• 중과실로 또는 요양지시 불응으로 질병·부상·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그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 시 • 고의로 질병·부상·장해의 정도를 악화, 회복을 방해 시 • 신체의 진단 3회 이상 불응 시
지급정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 전액 지급정지
연금의 50% 범위 내 지급정지	취업 또는 사업개시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2) 장애보상금·사망보상금의 급여 제한(「군인 재해보상법」 제45조)

- 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시,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 시
-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급 사유 발생 시
- 다) 군무이탈, 무단이탈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 시
- 라) 복무기간 1년 미만으로 공무 외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시
- 마)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 시 정부로부터 이 법령에 의한 재해보상금 이외의 보상금을 받게 된 때

문의처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02)748-6852 군)900-6852



3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참고

가. 공적연금 연계제이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직역연금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나. 연계 대상자 : 법 공포일('09.2.6.) 이후 전역자 중 연계희망자

다. 신청절차방법 : 전역 → 국민연금가입 → 연계신청(붙임 #19 참조)

라. 신청기한

- 1)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급여청구 시효인 5년 이내
- 2)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 발생전 까지 신청 및 반납
* 퇴직일시금 수령 시 「퇴직일시금 + 이자」 반납 : 일시납/분납(60회 이내) 선택 가능

마. 연금수급연령

출생연도	~52년	53~56년	57~60년	61~64년	65~68년	69년~
수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바. 급여청구

- 1)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기관에 청구(붙임#19 참조)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2)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사. 지급기관

- 1) 연계급여의 지급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하며, 연계퇴직연금은 국군 재정관리단에서 지급하고,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 2) 각 연금기관에서 지급 결정된 금액은 청구인 통장 계좌로 직접 입금

아. 지급 사유 발생

- 1) 연계노령(퇴직) 연금 : 연계기간 20년 이상인 자가 수급연령에 도달된 날, 수급연령에 도달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 2) 연계노령(퇴직) 유족연금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자. 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구 분		지 급 요 건	지 급 액
연계노령 연 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계기간 2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에 도달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20
연계퇴직 연 금	재직기간 20년 미만	• 수급연령에 도달하고 연계기간이 20년이 될 때	• '13. 6월 이전 기간 : 평균보수월액× 종전 복무기간×2% • '13. 7월 이후 기간 : 평균기준소득 월액 × 1.9% × 재직기간
연계노령유족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계 노령연금수급권자 사망 시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 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미만 연계 노령연금수급권자 사망 시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 가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 연계퇴직연금의 70/100 * '13.7.1.이후 임관자부터 60/100

차. 중복급여 조정

- 1) 정의 : 동일인에게 둘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제한 또는 정지
- 2) 조정 원칙
 - 가) 직역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받다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 1/2 감액

* 직역연금 : 군인·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 나) 국민연금에서는 중복급여 발생 시 수급자가 선택한 급여를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정지되거나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30%를 추가 지급하되 반환일시금이면 사망일시금 상당액만 지급



3) 연계법상의 중복급여 조정 유형 및 지급액

본인 급여	발생된 중복급여			선택한 급여	지 급 액
	연계법	국민 연금법	군인 연금법		
연계 노령 연금	연계노령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 전액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유 족 연 금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 전액 유족연금 30%
				유족연금	유족연금 전액
연계 퇴직 연금	연계퇴직 유족연금			선택 없음	연계퇴직연금 전액 연계퇴직유족연금 50%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전액 유족연금 50%
		장 애 연 금		선택에 따라 결정	연계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연계 노령 유족 연금	연계노령 유족연금			선택한 급여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선택하지 않은 급여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유 족 연 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유족연금 30%
				유족연금	유족연금 전액
		노 령 연 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노령연금	노령연금 전액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장 애 연 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장애연금	장애연금 전액 연계노령유족연금 30%
		반 환 일시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사망일시금 상당액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전액
연계 퇴직 유족 연금			퇴직 (퇴역) 연금	선택 없음	퇴직(퇴역)연금 전액 연계퇴직유족연금 50%

문 의 처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 02)3146-6471

4 군인분할연금(일시금) 제도

가. 군인분할연금(일시금)제도란?

군인연금법 제22조, 제26조 및 군인재해보상법 제32조에 따라 군인이었던 사람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뒷받침한 배우자에게 재산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이혼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일부를 분할 해주는 제도(2020년 6월 11일부 시행)

나. 선 청구 요건

-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이혼 후 5년 이내 청구)
- 2)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수급권자일 것(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 청구)
- 3) '20. 6. 11. 이후 이혼한 자로 전 배우자의 복무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 제외)이 5년 이상인 자
 - ☞ 신청구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제도
(선 청구 및 신청구의 취소는 1회로 제한)

다. 분할방법

1) 연금·일시금 분할금액 산정

* 분할금액 산정식 = (퇴역연금·일시금액 × 혼인 기간 / 총 재직기간) ÷ 2

분할연금 산정 예시

<가정 조건>

- 재직기간 30년, 퇴역연금액 300만 원
- 혼인기간 20년(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10년)

<분할연금액>

$$300 \times 10\text{년}/30\text{년} \times 1/2 = 50\text{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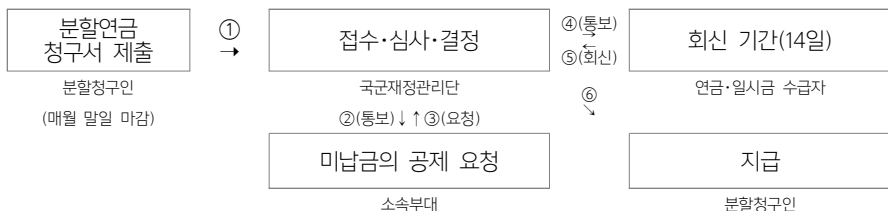
☞ 분할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변경 또는 취소 불가(당사자 합의로도 변경 불가)

2) 총 재직기간과 혼인 인정 기간 산정

- 가) 총 재직기간 :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은 전체 기간
- 나) 혼인 인정 기간 : 군인 복무기간 중 혼인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혼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라. 분할연금 및 미납금 처리절차



- ☞ 미납금(학자금, 전세자금 등)의 공제는 분할비율과 혼인 기간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균분하여 공제
- ☞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연금 지급정지액의 정산차액은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 연금에서도 공제(이혼 이후 발생한 정산차액은 공제하지 않음)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02)3146-6485

제2장 군 복지시설 및 군 병원

1 휴양시설

가. 이용대상

회 원		
1. 현역군인	2. 예 비 역(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	3. 군 무 원
4. 기 타		
·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중사 이상으로 전역한 군인(19년 6개월 미만)	
· 10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한 군무원	· 군 관련 국가유공자	
· 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직 근로자	· 국방부 공무원, 병역명문가종 소지자	
· 국방부 산하기관 및 연구소 직원	· 20년 이상 장기근속 후 퇴직한 국방부 공무원	

나. 예약체계 :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일반 1577-9800 내선 “1번”

다. 일반현황

구분	시 설 명	위 치	안내전화
직영	서귀포 호텔	제주 서귀포	064-738-0123
	화진포 콘도	강원도 고성	033-682-6295
	청간정 콘도	강원도 고성	033-631-9331
	송정 콘도	강원도 강릉	033-652-7573
	대천 콘도(1·2관)	충남 보령시	041-932-6305
민영	금호	설악, 제주, 통영, 화순, 아산스파포레	국군복지단 예약실 1577-9800 내선 “1번”
	소노	거제, 경주, 단양, 변산, 델피노, 양양, 진도, 양평, 고양, 여수, 삼척, 비발디파크	
	신세계 영랑호	강원도 속초	
	무주 덕유산	전북 무주	
	보광 휘닉스	제주 서귀포	
	소노캄제주	제주 서귀포	
	웰리힐리	강원도 횡성	
	켄싱턴	경주, 하동, 설악밸리, 설악비치, 충주, 지리산 남원, 서귀포, 가평	
	엘도라도	전남 신안군	
	한화	경주, 산정호수, 설악(소라노), 용인, 거제, 제주, 해운대, 평창, 설악	
	리솜	제천	



2 회관 및 호텔

가. 이용안내 : 국군복지단 및 각군 홈페이지 참고

- 1) 국군복지단 복지포털 : <https://welfare.mil.kr>
- 2) 육군 휴드림 : <https://welfare.army.mil.kr>
- 3) 해군 복지포털체계 : <https://welfare.navy.mil.kr>
- 4) 공군 예약체계 : <https://welfare.navy.mil.kr:446>

나. 주요 시설

구 분	시 설 명	안내전화
국군 복지단	국방컨벤션	02)748-0744
육군	계룡스파텔	042)602-1111
	서울 ROKAUS 호텔	02)6923-8000
	해운대 그린나래호텔	051)744-8160
해군	서울 해군호텔	02)810-4318
	진해 해군회관	055)543-5012
	제주 해군호텔	064)748-7483~5
공군	서울 공군호텔	(02) 827-8310
	해운대 그린나래호텔	051)744-8160
해병대	밀리토피아 호텔	02)524-9300

※ 각 군에서 운영하는 지역 복지시설 등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3 체력단련장

가. 회원자격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6조 회원자격]

구 분	대 상
정회원	1. 현역 장교, 준·부사관 및 병, 군무원 2. 19년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전역한 장교 및 준·부사관, 19년 6개월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군무원
준회원	1.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한 장교 및 준·부사관 2. 1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군무원

나. 예약신청 및 시설안내

- 1) 국군복지포털 : <https://welfare.mil.kr>
- 2) 육군 체력단련장 : <https://armywelfaregolf.mil.kr>
- 3) 해군 체력단련장 : <https://welfare.navy.mil.kr>
- 4) 공군 체력단련장 : <https://welfare.navy.mil.kr:446>

다. 체력단련장 현황

군구분	시설명	전화번호	주 소	홀수
국군 복지단	태릉	02)970-7320	서울시 노원구	18
	남수원	031)229-9200	경기도 화성시	18
	동여주	031)887-8444	경기도 여주시	18
	처인	031)330-8200	경기도 용인시	18
육 군	계룡대	042)550-6841	충남 계룡	18
	구룡대	042)550-6842	충남 계룡	18
	자운대	042)868-6514	대전 유성구	9
	남성대	043)745-1700	충북 영동군	9
	창공대	041)730-6801	충남 논산시	9
	함안대	055)585-0761	경남 함안군	9
	무열대	053)750-7933	대구 수성구	9
	선봉대	031)331-7234	경기 용인시	9
	비승대	031)634-5527	경기 이천시	9
	사자대	031)632-3700	경기 이천시	9



군구분	시설명	전화번호	주 소	홀수
	상무대	061)351-0002	전남 영광군	9
	충성대	054)330-0600	경상북도 영천시	9
해군	한산대	055)549-4371	경남 창원시 진해구	18
	충무대	054)290-2601	경북 포항시 남구	9
	만포대	031)685-1521	경기 평택시	18
	덕산대	031)293-5510	경기 화성시	9
	낙산대	033)539-6764	강원 동해시	9
공군	광 주	062)941-8877	광주 광산구	9
	사 천	055)852-3301	경남 사천시	9
	김 해	051)973-3085	부산 강서구	9
	원 주	033)747-4139	강원 원주시	9
	수 원	031)232-1482	경기 수원 권선구	9
	대 구	053)985-2536	대구 동구	9
	성 남	031)720-4081	경기 성남 수정구	9
	예 천	054)653-5162	경북 예천군	9
	청 주	043)214-4016	충북 청원군	9
	강 릉	033)645-8252	강원 강릉시	9
	충 주	043)847-1268	충북 충주시	9
	서 산	041)688-9898	충남 서산시	18
	공 사	043)298-4825	충북 청원군	9
	오 산	031)669-2922	경기 평택시	9

4 영외마트

가. 이용대상

- 1) 본인 및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이용 가능
 - 가) 현역장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국방부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국군공무직근로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2) 본인만 이용 가능
 - 가) 소집되어 훈련 중인 예비군, 예비군 비상근 복무자,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 병역명문가(동반시 가족 1명 이용 가능)

나. 영외마트 현황

- * 마트 위치, 운영시간 등은 네이버 검색창에 '국군복지단 마트' 로 검색 가능
- * 영외마트 현황은 국군복지단 운영 정책에 따라 변동(신설, 폐점) 가능

마트명	전화번호	주소
사당	02-583-3425	서울시 관악구 승방7길31(남현동, 사당동아파트) 사당동아파트 3동 앞
방패	070-4251-0873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851(남현동, 한울아파트) 상가1층
전승	070-4251-0652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2435(칠보아파트) 전승회관
선봉	031-336-287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40(김량장동, 한누리마을아파트)
선봉레스텔	070-4251-074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35번길26(역북동, 온누리마을) 온누리마을 내
상승	031-640-1126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경충대로 597번길 227-25 상승회관1층
도하	070-4251-230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 1리 508(자석1리 마을회관)
(해)서해	070-4251-407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서해소핑타운 지하층
비승	070-4251-0810	경기도 이천시 진상미로 1700-29(대포동, 비승아파트) 비승회관1층
아름	031-631-4151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마도로 12(아름수리아파트) 아름회관 1층
관사	070-4251-08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68번길 79(권선동) 복지매장 1층
(공)금성	070-4251-0667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동서춘로 161-9 1층
항무	070-4251-0646	경기도 하남시 초일로 78(초일동) 에어팰리시스 내 면회실 1층
충일	031-591-1173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134(이패동) 충일회관 1층
력키	070-4251-06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73(이매동) 력키회관 1층 108호
충호	070-4251-0593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260번길 80(7A빌리지) 충호회관 앞



마 트 명	전화번호	주소
우정	031-755-465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187(심곡동) 우정아파트 내
동빙고	02-790-8979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66(동빙고동, 용산푸르지오파크타운)
(공)태성대	070-4251-0613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1(신대방동, 태성대아파트) 복지관 1층
(공)대방	02-833-478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9길 3(신길동)
(해)바다마을	070-4251-0616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540(신길동) 바다마을 상가 1층
(해)덕산대	070-8895-3007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방골길 69(덕산레스텔)
불암산	070-4251-0584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109번길 36
연풍	031-953-6056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솔이홀로 490
선유리	031-952-143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04
드림	070-4251-2567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962
에버나인	031-907-655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2로 25(풍동, 숲속마을 10단지 아파트)
금촌에버나인	031-946-7123	경기도 파주시 창곡동길 24(아동동)
화이트빌	031-975-088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285-78(성석동)
북한산	070-4251-4086	경기 고양시 덕양구 백운길 27-41(지축동)
화전	02-3158-25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32-5(화전동)
권율	02-352-86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500번길 141-7(동산동)
광개토	070-4251-406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895(벽제동, 삼성벽제아파트)
올림픽	070-4251-0560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북한산로 966-8(충성아파트)
황룡	031-981-076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검암1로
미추홀	070-4251-4155	인천구 부평구 세월천로 25번길 9-3
통현	070-4251-097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평화로 1239(연천아이파크)
포천푸르미	031-542-924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23번길61(푸르미아르미소 아파트)
전곡푸르미	070-4251-4067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673번길 61
백석	031-879-781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071-41
의정부푸르미	031-873-0187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38-30(푸르미회관)
동두천	031-858-4036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20
신산	031-863-6235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 11길 43
대광리	031-834-8071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1114(열쇠아파트)
행복마을	070-4251-4078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칠중 1길 65
동송	033-455-2710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21번길 12
이동승진	031-532-4576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2056
운천	031-532-0043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영북로 206(산내들 아이파크내)
에이트빌	031-534-4876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성장로 721(에이트 빌)
승포아트빌	033-452-285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26-29 (목련아파트)
백골	033-458-8115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김화로 309(청양 아파트)

마 트 명	전화번호	주소
삼성	033-458-8821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로 599
맹호	031-584-8487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 10
철마	031-575-4108	경기도 남양주시 전접읍 광릉대로 82번길 19-7(크낙새아파트)
햇불	031-581-6315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57(햇불회관)
일동승진	031-536-3846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587(승진아파트)
오뚜기빌	031-531-6586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소아길 52(오뚜기아파트)
사방	070-4251-3764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7739-14
화천	070-4251-4061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8길 25-73
승리	070-4251-376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월동로 125(화인빌아파트)
다목	070-4251-376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수피령로 1315
명월	033-441-0880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복주산길 1(한아름아파트)
사창	033-441-4039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상록길 7-1
필승	033-458-2159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수피령로 2312
소양	070-4251-3081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80(우두동, 소양아파트)
신동	070-4251-3762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40-14(사농동)
두미르	070-4251-3766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793(우두동, 두미르마을)
(공)대룡	070-4251-0736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동 2길 46
리버빌	033-433-5937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송학로5길 18
치악	033-761-1329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223(개운동)
시동	033-432-5280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안로 321번길 14-28(충성아파트)
충정	031-771-327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397
(공)용문산	070-4251-4064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208
행복	070-4251-0973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마유산로 428-11
마룡리	070-4251-4065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65 (수무빌아파트)
백호	070-4169-4707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754-4(백호회관)
화랑	070-4251-412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4길 21
양구	033-481-278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49(상리군인아파트)
동면	033-481-9096	강원도 양구군 동면 금강산로 1801(대암아파트)
남면	033-482-4019	강원도 양구군 남면 정중앙로 728(백호아파트)
천도	033-462-4368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로 152번길 8
서화	033-463-4108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760
현리	070-4251-2379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3898(현리군인아파트)
서호	033-461-7123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15(서호아파트)
과훈단	070-4251-0324	강원도 인제군 남면 응봉길 94
원통	033-461-899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261-20(아르미소아파트)



마 트 명	전화번호	주소
인제	033-461-8389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315(행복아르미소)
간성	033-682-4488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7번길 54-1
화진포콘도	070-4251-2209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길 330
양양	033-672-564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서길 21(해오름아파트)
청간정콘도	070-4251-0549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중앙로 642-22
행복드림	070-4251-2567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145(천곡동, 경포아파트)
사랑드림	070-4251-2762	강원도 동해시 평릉길 60-1(평릉동, 사랑드림아파트)
송정콘도	070-4251-2566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1(송정동)
철벽	070-4251-4103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84-15(철벽레스텔)
종행교	043-744-4472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16
문무	043-834-2229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94(문무아파트)
충용	043-838-4706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정약수로 1530(늘푸른아파트)
논산행복마을	041-742-283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139-1(연무행복마을아파트)
대천콘도	041-932-6305	충남 보령시 신흥동 2096
개나리	070-4251-424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청장리 268
국방대	041-831-3929	충남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98번길 46
세종	070-4251-420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체나무길 80
창공	070-425-3009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430번지
(해)문덕	070-4251-3765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문덕마을 48번지(그루터기 도서관 1층)
무열	070-4251-3128	대구 수성구 무열로 56(만촌동)
오성	070-4251-3194	대구 수성구 고모로 33길 84(연호동)
(공)달성	070-4251-0744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68길 36(이천동)
무학	053-851-4866	경북 경산시 하양읍 무학로 64-12(무학마을)
충성대	070-4251-3769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495
두산	070-4251-3635	대구 북구 학정동 구리로 183-28(학정동, 두산아파트)
무지개	070-4251-409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3로 94 무지개아파트
장산마을	070-4251-089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5번길 24(좌동, 장산마을아파트)
오륙도	070-4251-0883	부산광역시 남구 무민사로 17(감만동, 오륙도아파트)
(공)해성	070-4251-3664	부산 강서구 대저동 공항진입로 42번길 20(대저2동)(해성스포렉스)
충무	070-4251-09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848 충무회관1층
백운포	0507-1362-8726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401(부산 해운회관 1층)
매화군	070-4251-0542	전남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251-38
충경군	070-4251-0934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77(충경레스텔 1층)
천마군	070-4251-0545	전북 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157-21(천마스카이빌)
충장	070-8883-3015	광주광역시 북구 삼일아파트 (삼일회관)

5 군 병원

가. 제대군인 군 병원 진료

1) 진료대상

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나) 창군 요원 및 6.25 참전용사

다) 군 복무 중 가슴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은 자

2) 관련법령 :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5조

3) 진료범위 : 응급진료 및 외래진료 (치과보철은 미제공)

4) 진료절차 : 접수시 신분증 및 진료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5) 비용안내 : 비급여의 50% 감면, 요양급여비 미징수

* MRI/CT, 내시경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의 50% 징수

나. 진료미종결 전역자 진료지원

1) 진료미종결 전역자 진료지원제도란?

군 병원 입원 또는 외래진료(치과 등)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간부(군사교육 중 퇴교한 군간부후보생 포함)가 계속적인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

2) 관련 법령 :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

3) 진료제공 기간 :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군 병원에서 실시한 수술의 후속 수술로써, 군 병원에서 금속판, 나사 등 내고정물 제거수술을 받고자 할 경우 전역 후 1년 경과 시에도 진료 제공

다. 진료 과목

* 병원별 진료과목이 상이하므로 진료과목은 군병원으로 문의 필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안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 응급의학과, 구강악안면외과 등



라. 진료제공 군 병원

* 군 병원 내원 시 신분증, 전역증 지참

병 원	주 소	전화번호
국군강릉병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동해대로 4371-34	1688-9165
국군고양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음로 215 사서함 111-8호	1688-9162
국군구리병원	경기도 구리시 인창2로 177	031-331-1777
국군대구병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425-41	1688-9154
국군대전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 90	1688-9152
국군서울지구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0길 13	02-397-3973
국군수도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 사서함 99호	1688-9151
국군양주병원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사서함 94-12호	1688-9163
국군포천병원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564	1688-9164
국군춘천병원	강원도 춘천시 방고개길 57번	1688-9166
국군함평병원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신해로 1027	1688-9153
국군홍천병원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아홉사리로 53	1688-9167
해군포항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961	054-290-2494
해양의료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63번길 35	055-907-5737
항공우주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575	043-290-6669

문의처

•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1 군)900-6651

제3장 군인공제회

1

저축제도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참고

: 퇴직급여, 목돈수탁저축, 연금식 분할급여, 비과세 종합저축

가. 퇴직급여

회원이 매월 급여수령액 중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적립하면, 높은 이율로 증식시켜 전역 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1) 회원자격

가) 하사 이상 군인, 군무원

나)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

다) 군인공제회 임·직원

라) 병무청, 방위사업청 공무원

마)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직원

바)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임시직, 무기계약직, 한시계약직, 조건부 채용 직원 등은 가입 불가

2) 가입금액('24. 1. 1.부) : 1구좌 ~ 최대 600구좌(1구좌당 5,000원)

* 10구좌 이상 가입 시 재해위로금, 출산축하금 등 복지수혜자격 부여

* 20구좌 이상 가입 시 신규가입축하금 지급

3) 수납방법 : 매월 20일까지 신규/증좌/승계 신청 시, 다음 달 10일 전산가입 처리 후 매월 급여에서 부담금 자동 공제

4) 가입금리 : 연복리 4.9%('24. 2. 1.부)

* '98. 12. 31. 이전 가입회원 비과세, '99. 1. 1. 이후 가입회원 0~6.50% 저율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 변동금리



5) 지급절차

- 가) 육, 해, 공군 소속회원 전역·퇴직 시 국군 재정관리단에서 회원부담금을 공제회에 일괄청구하며, 공제회에서는 회원부담금을 퇴직월 말일까지 회원 급여계좌로 자동지급
- 나)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 퇴직 및 회원급여 청구서 제출시 소속기관이 종합하여 공제회에 청구하며, 공제회에서는 회원부담금을 퇴직월 말일까지 회원 급여계좌로 자동지급
- 다) 소급명령에 의한 퇴직, 사망 및 기타사유로 인한 경우 수시 청구가 가능하며, 사망 및 기타사유로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대리 청구 하여야 함

6) 회원자격 승계 안내(신분전환 시의 자격) :

회원이 전역(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회원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신분으로 전환 시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금에 군인공제회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회원부담금을 계속 납부하는 경우 회원자격 유지

7) 전역(퇴직) 시 퇴직급여대여 상환 : 퇴직급여금에서 퇴직급여대여 전액 상환 후 잔액 지급

8) 중도(부분)해약금 산정

구 분	중도해약 이율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
해약금	원금 + 퇴직 시 이자의 17.4%	원금 + 퇴직 시 이자의 43.5%	원금 + 퇴직 시 이자의 70.8%	원금 + 퇴직 시 이자 전액

문 의 처

- 군인공제회 컨택센터 ☎ ARS 1544-9090 / 1599-9090
- 군인공제회 공제사업팀 ☎ 02)2190-2063~5

나. 목돈수탁저축

1)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주는 저축제도

가) 가입대상 : 군인공제회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

나) 가입기간 : 6개월, 1년, 2년 단위

* 만기 전 재가입 신청 가능(군인공제회 고객센터 상담)

다) 가입금액 : 100만 원 이상 10억 원 한도(원단위 가입, 비과세종합저축 포함)

라) 수납/지급방법 : 신한은행 가상계좌 입금 / 매월 또는 만기 시 이자 지급

마) 금리('23. 11. 16.부)

가입기간	만기 지급식		매월 지급식	
	세전이율	세후이율	세전이율	세후이율
6개월	4.35%	3.68%	4.26%	3.60%
1년	5.00%	4.23%	4.88%	4.13%
2년	5.20%	4.40%	5.08%	4.30%

* 상기 기준일 기준 금리이며, 상세한 이자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확인바랍니다.

*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

* 목돈수탁금리는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동안 고정금리(확정금리)임

바) 이자 지급 :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매월 또는 만기 시 지급

사) 중도(부분)해약 시 적용금리

구 분	중도해약 이율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또는 1년 만기 가입자	가입시 만기금리의 50%	가입시 만기금리의 67%	-
2년 만기 가입자	1년 만기금리의 50%	1년 만기금리의 67%	1년 만기금리의 100%

문의처

- 군인공제회 고객센터
- 군인공제회 공제사업팀

☎ ARS 1544-9090 / 1599-9090

☎ (02)2190-2037/2070/2082/2088



2) 현역/예비역 회원 저축(적립형) :

라이프사이클별 필요한 목돈마련을 위해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저축제도

가) 가입대상 : 군인공제회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

나) 가입금액 : 월 5만원 이상 1,000만원 한도(1만원 단위 가입, 비과세종합저축 포함)

* 1인 최대 20건 가입 가능

다) 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라) 수납/지급방법 : 신한은행 가상계좌 입금 / 만기 일시 지급

* 만기 시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으로 전환 신청 가능

마) 가입금리 : 연복리 5.0%(’23. 11. 16.부)

* 변동금리, 단일금리 (이자소득세 : 15.4%)

바) 중도해약시 금리

구 분	중도해약 이율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이상 ~
지급 금리	적용금리의 50%	적용금리의 67%	적용금리의 100%

문 의 처

- 군인공제회 컨택센터 ☎ ARS 1544-9090 / 1599-9090
- 군인공제회 공제사업팀 ☎ 02)2190-2037/2070/2082/2088

3)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하고, 매월 또는 매년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받는 저축제도('24. 1. 1.부 출시)

가) 가입대상 : 군인공제회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

나) 가입금액 : 5천만원 이상 10억원 한도(원 단위 가입, 비과세종합저축 포함)

다) 가입기간 : 5년 이상 30년 이하(5년 단위 가입)

라) 수납/지급방법 : 신한은행 가상계좌 입금 / 매월 또는 매년 원리금 지급

마) 금리('24. 1. 1.부)

매년 지급식		매월 지급식	
세전이율	세후이율	세전이율	세후이율
5.00%	4.23%	4.88%	4.13%

* 상기 기준일 기준 금리이며, 상세한 이자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확인바랍니다.

*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

바) 중도해약시 금리

구 분	중도해약 이율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이상 ~
지급 금리	적용금리의 50%	적용금리의 67%	적용금리의 100%

문의처

- 군인공제회 고객센터
- 군인공제회 공제사업팀

☎ ARS 1544-9090 / 1599-9090
☎ 02)2190-2037/2070/2082/2088



다. 연금식 분할급여

- 1) 가입대상 : 퇴직급여 회원으로서 퇴직 또는 탈퇴 시 퇴직급여금 세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회원
- 2) 가입기간 : 5년 이상 30년 이하(5년 단위 가입)
- 3) 가입금액 : 1천만 원 이상 퇴직급여 세후 수령액 이내(원 단위 가입)
- 4) 금리('23. 11. 16.부)

매년 지급식	매월 지급식
5.00%	4.88%

* 상기 기준일 기준 금리이며, 상세한 이자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확인바랍니다. * 변동금리

- 5) 이자소득세율 : 전역·퇴직 시 적용된 이자소득세 적용
 - * '98.12.31. 이전 가입회원 비과세, '99.1.1. 이후 가입회원 0~6.50% 저율과세
 -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 6) 원리금 지급 :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지급
- 7) 중도(부분) 해약 시 적용금리

구 분	중도해약 이율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이상
금 리	적용금리의 50%	적용금리의 67%	적용금리의 100%

* 해약한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없음(퇴직급여 재가입 또는 승계로 인한 해약 제외)

- 8) 신청기한 : 퇴직 또는 탈퇴 시 급여금 지급일 기준 2 근무일 전까지
 - * 퇴직 또는 탈퇴 시 급여금 지급 이후에는 분할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문 의 처

- 군인공제회 컨택센터 ☎ ARS 1544-9090 / 1599-9090
- 군인공제회 공제사업팀 ☎ 02)2190-2063~5

라. 비과세 종합저축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형·적립형·연금형
목돈수탁저축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1) 가입대상 : 군인공제회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로서 각 항목 해당자
 - 가) 만 65세 이상에 달한 자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상이유공자
 -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마)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2호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문의처

- 군인공제회 컨택센터 ☎ ARS 1544-9090 / 1599-9090
- 군인공제회 공제사업팀 ☎ 02)2190-2037/2070/2082/2088



2

대여제도

가. 퇴직급여 대여 :

퇴직급여를 담보로 하여 시중은행 대비 유리한 대여금리로 퇴직급여의 90%까지 대여 가능

- 1) 신청자격 : 퇴직급여 가입 회원
- 2) 신청금액 : 퇴직급여 범위 내 최저 10만원부터 퇴직급여 총액의 90%까지
 - * 전 금융기관 합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DSR 40% 초과인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전 금융기관 합산 DSR 70% 초과인 경우 은행에서 확인하여 대여 제한
- 3) 금리(23. 12. 31. 기준) : 신한은행 5.16% / 우리은행 5.6% - 우대금리 0.5%
 - * 변동금리, 간접대여방식
 - * 대여기간 중 대환대출 신청을 통해 거래은행 변경 가능
- 4)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
 - 가) 원금일시상환 : 1년(1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나) 원금균등분할상환 : 10년
 - * 국군재정관리단 중앙공제로 대여금 정기 상환 처리 가능
 -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나. 예금형 목돈수탁 대여 :

예금형 목돈수탁금을 담보로 목돈수탁금의 90%까지 대여 가능

- 1) 신청자격 :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가입 회원
- 2) 신청금액 : 목돈수탁 저축금의 90% 범위 내 최저 90만원부터 가능
 - * 목돈수탁 가입 건별로 대여신청 가능
 - * 전 금융기관 합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DSR 40% 초과인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전 금융기관 합산 DSR 70% 초과인 경우 은행에서 확인하여 대여 제한
- 3) 금리(24. 12. 31. 기준) : 6개월물 5.92%, 1년물 5.79% - 우대금리 0.2%
 - * 변동금리, 간접대여방식
- 4)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 : 원금일시상환(목돈수탁 만기일)
 - * 매월 회원이 등록한 계좌에서 이자 자동 납부
 -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문의처

- 신한은행 군인공제회관 지점 ☎ 02-2057-3627
- 우리은행 도곡스위트 지점 ☎ 02-2058-1100

3 복지제도

- 가. 신규가입축하금 : 퇴직급여 회원으로 최초 신규가입한 자에게 지급
- 나. 출산축하금 : 퇴직급여 가입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을 기념하여 지급
- 다. 재해위로금 : 퇴직급여 가입 회원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전역(퇴직) 시, 유공전투장애군인이 현역 복무 후 전역 시 지급
- 라. 복지적립금 : 매 회계연도 말 현재 퇴직급여 회원인 자에게 매년 적립하여 퇴직(탈퇴) 시 지급
- 마. 개인회생 비용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급간부 회원에게 개인회생 비용지원
- 바. 생활보조 대출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급간부 회원에게 대출 지원
- 사. 재무설계 컨설팅 : 초급간부회원의 재정능력 배양과 조기 목돈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재무컨설팅 지원

문의처

- 군인공제회 컨택센터 ☎ ARS 1544-9090 / 1599-9090
- 군인공제회 회원복지사업팀 ☎ 02)2190-2264/2268/2284



아. 군인공제회 주택분양

1)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입주자 선정

가) 분양신청 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 우선 공급(1차 분양 대상자)

(가) 미성년 자녀를 3인 이상 부양하면서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공급세대의 3%)

(나)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면서 무주택구성원인 자(공급세대의 7%)

(2) 1차 분양 : 현역군인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

(3) 2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을 갖추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 (군인이 아닌 자는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

(4) 3차 분양 : 군인연금(퇴직/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1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

(5) 4차 분양: 3차 분양 후 미분양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나)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 제1순위 :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2) 제2순위 :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 미해당자

다) 평가요소 및 배점 : 근속기간, 무주택기간, 기타(부양가족 수,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공제회 회원부담금 원금 잔액) 등 고득점자순 선정

2) 군인공제회 자체 택지개발 등에 의한 입주자 선정

: 전용 85㎡(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
85㎡ 초과 주택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가) 분양신청 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 우선 공급(1차 분양 대상자)

(가) 미성년 자녀를 3인 이상 부양하면서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
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공급세대의 3%)

(나)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면서 무주택
구성원인 자(공급세대의 7%)

(2) 1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 이상 경과자

(3) 2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 미경과자

(4) 3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가입 자격을 갖춘 자 중 회원이 아닌 자,
군인연금(퇴직/상여/유족연금) 수급권자, 10년 이상 현역
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

(5) 4차 분양 : 3차 분양 후 미분양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나)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1)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가) 제1순위 :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나) 제2순위 :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주
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

(다)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 미해당자



(2)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가) 제1순위 :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나) 제2순위 :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

(다)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 미해당자

다) 평가요소 및 배점

(1)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근속기간, 무주택기간, 가입구좌 수, 기타(부양가족 수,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공제회 회원가입 총 기간) 배점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당첨자 선정

(2)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 근속기간, 가입구좌 수, 기타(부양가족 수,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공제회 회원가입 총 기간) 배점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당첨자 선정

3) 분양 공고 : 국방일보,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재

문의처

- 군인공제회 컨택센터 ☎ ARS 1544-9090/1599-9090
- 군인공제회 회원주택사업팀 ☎ 2190-2105/2111/2303

자. 군인공제회 건강검진 제휴 서비스 이용

- 1) 이용대상 :
 - 가) 군인공제회 회원 및 회원이었던 자
 - 나)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존비속
- 2) 검진비용 : 28만원 (기본제공 선택검사 초과 시 추가 비용 발생)
- 3) 이용방법 : 온라인(health.mmaacnc.or.kr)을 통한 사전 예약
- 4) 검진항목 : 상세 내역은 건강검진 신청 사이트 참조

구 분	검진항목	비 고
기초 검사	혈압, 신체계측, 시력, 청력, 폐기능, 혈액, 심혈관, 간기능, 신장, 당뇨, 갑상선, 췌장 등	기본 제공
기본 정밀	위내시경(일반, 수면), 초음파(경동맥, 갑상선, 상·하복부, 부인과, 체성분, 골밀도, 동맥경화, 스트레스검사 등	
정밀 선택	- MRA(뇌), MRI(뇌, 요추, 경추), 대장내시경 중 1개 선택 - CT(뇌, 요추, 경추, 심장, 폐), 심장초음파, NK검사 중 1개 선택 ※ 정밀선택항목 2개 기본제공	기본제공 초과 시 별도 청구

5) 제휴 검진기관

제휴 업체	지 역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에스 헬스케어	하나로의료(종로) 하나로의료(강남) 소중한메디케어 한신메디피아 KMI(광화문) KMI(강남) KMI(여의도)	KMI(수원)	둔산(대전)	KMI(광주)	KMI(대구) KMI(부산)

문의처

• (주)에스헬스케어

☎ 02)2249-9184



차. 군인공제회 콘도 및 제휴복지 서비스 이용

- 1) 이용대상 :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가입회원 및 군인공제회 회원이었던 자로서 목돈수탁(비과세)저축 또는 분할급여 가입회원
- 2) 군인공제회 회원콘도

가) 콘도 보유현황

콘도회사명	계	대명	한화
시설수	68실	25실	43실

나) 대명콘도 배정 지역

구분	양양	삼척	경주	거제	홍천	변산	단양	청송	설악	제주
25	2	2	2	2	2	2	2	2	2	7

다) 한화콘도 배정 지역

구분	해운대	동부산	경주	대천	설악	용인	포천	제주	평창	거제
43	7	1	7	6	8	2	3	1	6	2

라) 예약 조건

구 분	예약확정	잔여객실 확정
대 명	투숙일 30일 ~ 16일전	15일전 ~ 11일전
한 화		15일전 ~ 3일전

- 마) 예약 방법 : 홈페이지(<https://www.mmaa.or.kr>) 로그인 후
[복지포털] ⇨ [회원콘도] ⇨ [통합예약]에서 콘도 예약

바) 군인공제회 제휴현황('23. 12. 31. 기준)

분 야	계	숙박시설	의료·실버	경 조	생활·레저
시설 수	153	81	41	4	27

* 세부 제휴 현황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 의 처

- 군인공제회 컨택센터 ☎ ARS 1544-9090 / 1599-9090
- 군인공제회 회원복지사업팀 ☎ 02)2190-2264/2268/2284

제4장 국가보훈부 제공 혜택

1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예우보상 참고

가.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제대군인지원센터(붙임 #9 참조)

나. 취·창업 지원 : 보훈(지)청(보훈특별고용), 제대군인지원센터

1) 보훈특별고용 지원(붙임 #5, 6 참조), 제대군인지원센터 통한 취·창업 지원

다. 교육지원 : 자녀 고교 수업료 보조, 본인 교육지원(붙임 #15, 16 참조)

라. 대부지원 : 주택구입, 생활안정 등의 자금지원

마. 안장지원(국립호국원 :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1) 대상 : 현충원 안장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배우자 합장 가능)

2) 신청 :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에서 신청

바. 의료지원

1) 외래 진료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액 50% 감면

2) 건강검진 : 보훈병원에서 검진 시 비용 50% 감면

3) 전상/공상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 상이처가 경미하여 신체검사 결과
등의 판정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상이처 진료 시 전액 국비 지원

사. 전직지원금 지급 : 월 77만 원씩 최장 6개월(붙임 #8 참조)

1) 대상 : 실업상태로 구직활동 중인 장기복무(10년~19년 6월 미만) 제대군인

* 지급제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총지급액의 1/2 일시금 지급

2) 신청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또는 보훈(지)청 (붙임 #9 참조)

아. 법률구조지원

- 1) 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장기복무(10년~19.6년 미만)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등록·결정된 자 중 일정소득(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자
- 2) 지원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예산 소진시 자부담)

자. 공공시설 감면이용

공공시설	관 랐 요 금	감면비율	감면요금
전쟁기념관	무 료		
독립기념관	무 료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 및 능원 (서울경기 소재)	• 경복궁, 창덕궁 : 3,000원 • 창경궁, 덕수궁 : 1,000원 • 종묘, 조선왕릉 14개 : 1,000원	50%	• 고궁 : 1,500원/500원 • 조선왕릉 : 500원
국립민속박물관	무 료		

차. 주택 우선공급

- 1) 관련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 2) 공급대상자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자
- 3) 신청기간 및 장소 : 매년 1월 중 2주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4) 신청자격
 -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서 동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나) 국민임대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동 규칙 제19조에 해당되는 자
 - 다) 대상자 선정 : 무주택기간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

카. 지원사항별 구비서류

구 분	지 원 사 항	구 비 서 류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 취업지원(직장알선) • 교육지원(본인) • 교육지원(자녀) • 대부지원, 직업훈련 • 의료지원 • 공공시설 감면이용	• 민원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보훈관서 비치) - 사진(3×4cm) 1매 - 소득신고서(자녀 교육지원 신청자)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병적 증명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자녀의 교육지원 신청자에 한함)
경상이 제대군인	• 의료지원	• 지원신청서 제출

* 본인 동의 시 담당공무원이 병적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자녀 교육지원에 한함) 확인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2

중기복무(5년 이상 ~ 10년 미만) 제대군인

가.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붙임 #9 참조)

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창업 지원

다. 전직지원금 지급 : 월 55만 원씩 최장 6개월(붙임 #8 참조)

- 1) 대상 :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 * 지급제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총지급액의 1/2 일시금 지급

2) 신청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또는 보훈(지)청(붙임 #9 참조)

라. 법률구조지원

- 1) 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중기복무(5년~10년 미만) 제대군인으로 등록·결정된 자 중 일정소득(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자
- 2) 지원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예산 소진시 자부담)

문의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대표전화

☎ 1666-9279

3 국립묘지 안장 및 신청 절차

가. 안장 대상(「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1) 전·퇴역자

가) 20년 이상 군 복무한 자

* 10년 이상 복무자·참전자는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안장 가능

나) 장관급 장교이었던 자

다) 무공이 현저한 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 수훈자)

2) 상이자 : 상이로 전역·퇴역·면역·퇴직한 후 사망한 자

* 배우자 합장 가능(「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나. 안장 신청 절차

1)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및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www.snmb.mil.kr)에 접속 후 신청

* 국가보훈부 및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에서도 접속 가능

* 서울현충원은 충혼당 납골시설 봉안만, 대전현충원은 묘역 안장만 가능

2) 배우자 합장의 경우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 안장 이후 가능

다. 안장 비용 : 국립묘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장 및 합장에 소요되는 물자 부담 및 규정에 의한 명패 및 묘비시설은 국고 부담

* 다만, 장례·화장·유골의 국립묘지까지의 운구 비용, 안장된 자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비용은 유족 부담

라.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

1)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현역군인

2)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한 자

5) 국적 상실자(단, 2014.1.17. 이후 사망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안장될 수도 있음)

* 참고 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신청서류

구 분	무공수훈자 및 상이군경	장군, 20년 이상 군복무자	
		군인연금 수급자	군인연금 미수급자
안 장 자	안장 신청 시	좌 동 (일시금 수령자 : 확인증 첨부)	좌 동
	유골 봉안 시 (안장 당일)	좌 동	좌 동
이 장 자	이장 신청 시	좌 동 * 단, 1981.1.1. 이후 사망자만 이장 가능	
	유골 봉안 시 (이장 당일)	좌 동	
배우자 합장자		• 배우자합장신청서 1부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화장증명서 1부 (이장·합장시 추가서류 :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문의처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팀 ☎ 02)826-6238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51
- 국립영천호국원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 ☎ 063)640-6081
- 국립이천호국원 ☎ 031)645-2340
- 국립산청호국원 ☎ 055)970-0770
- 국립괴산호국원 ☎ 043)830-1133
- 재향군인회본부 참전복지부 ☎ 02)417-5255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제 4 편

예비군으로서의 새로운 역할!

제1장 예비군 제도 및 동원령 선포 시 행동요령

제2장 예비역 단체 안내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제1장 예비군 제도 및 동원령 선포 시 행동요령

1 예비군 제도

가. 예비군 편성 및 복무

1) 법적근거

- 가) 「예비군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예비군법」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 나)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조(예비군 편성기준)
- 다) 「주민등록법」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2) 편성기준 및 복무

- 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그 복무를 마친 다음 날로부터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 및 복무
 - * 연차별 편성은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 차로 하고, 그 다음해를 1년 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편성

- 나) 여성 간부(장교, 부사관)의 경우 예비역·퇴역 중 본인이 선택 가능, 예비역 선택 시 예비군에 편성되므로 신분별·연차별 예비군훈련을 이수해야 함. 단, 임신부터 출산후 12개월까지,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배우자가 군인·군무원·예비군일 경우, 불임치료 중인 경우 관련 증빙 제출 시 보류자로 관리되어 동원 및 훈련이 보류됨.

- * 예비역 선택 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예비군지휘관’, ‘예비군 간부 비상근 예비군 복무’, ‘예비역 간부 진급’ 선발 응시 자격 부여

- 다) 퇴역자여도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를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예비군지휘관에게 문의

3) 편성절차

- 가) 전역권 부대와 병무청 간의 행정절차를 통해 예비군 편성을 하기에, 전역 후 예비군 편성을 위한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나) 예비군에 편성 후 본인이 예비군동원 및 훈련의 보류 대상 직종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는 소속 예비군지휘관 문의(138페이지 참조)

4) 전역장병 유의사항

- 가) 전역예정 장병은 전역 또는 소집해제 전에 근무부대(기관)의 인사관계관이 주소지를 확인할 때에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 정보 연동으로 전역 후 거주지 예비군부대에 자동 편성
- 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체계로 상세히 기록(예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5길 9-1,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 14-22 등)
- 다) 연락처는 세대주 전화번호 및 개인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록
- 라) 불시 훈련소집 또는 불시동원에 대비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지역 거주자나 7일 이상 장기 출타 시에는 행선지, 출타기간, 연락처 등을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통보 의무

나. 예비군 교육훈련

- 1) 법적근거 : 「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법」 제6조(훈련)
- 2) 훈련의 종류
 - 가) 병역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법에 의한 예비군훈련(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을 예비군 편성 신분·연차별로 구분하여 실시
 - 나) 동원훈련은 동원지정자 중 1~4년 차 병 및 1~6년 차 간부를 대상으로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입영훈련 실시
 - 다) 동미참훈련은 동원미지정 1~4년 차 병은 예비군훈련장에서 4일간(32H) 출·퇴근 훈련(공군병은 2박 3일 입영훈련)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 1~6년 차 간부는 각 군 책임 하 2박 3일 입영훈련을 실시(공군병은 입영훈련 실시)
 - 라) 기본훈련은 5~6년 차 예비군 대상 예비군훈련장에서 1일(8H) 실시
 - 마) 작계훈련은 5~6년 차 예비군 대상 작계지역에서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각 6H) 실시
 - 바) 전역 후 7~8년 차는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고 비상소집망 점검만 실시
 - * 단, 1 ~ 6년차 기간동안 부과되었으나 미이수한 예비군훈련은 실시
 - 사) 지휘요원(소대장)으로 편성된 간부는 작계훈련 2회(12H), 선소집훈련 2회(8H), 연 20시간 훈련 실시

3) 훈련 편의 보장제도

- 가) 훈련일정 자율선택 제도 : 예비군이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에 공시된 훈련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하는 제도
- 나)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 : 예비군이 휴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
- 다) 전국단위훈련 제도 : 예비군이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제도

4) 별 척

- 가) 병력동원 훈련소집 무단 불참자 : 즉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되며, 소집부대에 재입영 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 부과
 - 나) 예비군훈련 무단불참자
 - (1) 1차 훈련 불참 : 1차 훈련시간과 동일하게 2차 훈련을 부과
 - (2) 2차 훈련 불참 : 2차 훈련시간과 동일하게 3차 훈련을 부과
 - (3) 3차 훈련 불참 :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되며, 3차 훈련 재부과
- * 이후 훈련 불참 시 매회 고발

5) 연기 및 보류신고

- 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예비군훈련을 연기 또는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해당 원서를 제출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예비군 홈페이지, 모바일 앱, FAX, 문자메시지 등
 - * 연기 및 보류 원서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제19호 서식
- 나) 예비군훈련 보류(훈련 이수 처리) 해소 사유 발생 시 14일 내 신고(의무)
 -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 모바일 앱, FAX
 - * 해소신고서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문의처

- 국방부 동원기획과, 예비전력과
- 육 군 동원참모부 예비군조직관리과
예비군훈련정책과
- 해 군 정보작전참모부 예비군과
- 공 군 정보작전참모부 동원과

- ☎ 군)900-5206, 5245, 5247
02)748-5206, 5245, 5247
- ☎ 군)960-5532 042)550-5532
- ☎ 군)960-5541 042)550-5541
- ☎ 군)910-3522 042)553-3522
- ☎ 군)920-3422 042)552-3422

다.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육·해·공군)

예비군 홈페이지 참고

- 1) 법적 근거 : 「병역법」 제55조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2
- 2) 시행지침
 - 가) 대상 : 병역법 제5조에 따라, 역종이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퇴역자 지원 불가)
 - 나) 진급할 계급 : 하사 → 중사, 중사 → 상사, 소위 → 중위, 중위 → 대위,
대위 → 소령, 소령 → 중령
 - * 단, 당해 연도 진급 시행 계급은 각 군의 계급별 부족 소요를 고려 결정
 - 다) 지원 자격

(1)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한 예비역

구 분	최저복무기간 (현역 + 예비역)	연 령 (진급 후 3년 이상 예비역으로 복무 가능자)
하사 → 중사	하사로서 7년	만 40세까지
중사 → 상사	중사로서 12년	만 45세까지
소위 → 중위	소위로서 2년	만 40세까지
중위 → 대위	중위로서 6년	만 40세까지
대위 → 소령	대위로서 7년	만 42세까지
소령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만 45세까지

* 진급 선발 후 동원지정 가능한 자원을 위주로 선발

- (2) 지역/직장예비군 지휘관 : 임용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43세까지) 중
예비역 대위 → 소령으로 진급 가능
- (3) 기타 당해 연도 진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4)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가) 예비역이 아닌 자
 - * 지원 기간에 예비역인 간부만 지원 가능(현역 또는 퇴역자 지원 불가)
 - * 국방부 지침에 의거, 현역은 선발연도 3월 31일 전역예정자까지 지원 가능
 - (나) 지원자격 기준 미충족자
 - * 최저복무기간 미경과자, 연령 초과자, 예비군지휘관 임용 후 1년 이내인 자
 - (다) 예비역간부 진급계획에 의거 既진급된 자
 - * 전역 당시 계급에서 1회에 한하여 한단계 상위 계급으로만 진급 가능
 - (라) 보류자(예비군법,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 27조에 근거하여 보류자로 분류된 자)



3) 선발절차 및 시기

절 차	시 기	기 타
진급선발 공고	3~4월	•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공고 및 지원서 교부·접수 • 기타 지원서 교부·접수 방법은 군별 공고 참조
지원서 교부·접수		
서류심사	4~5월	합격자 통보 : 예비군/국방부 홈페이지 명단공고 등
신체검사	6~7월	
진급대상자교육	8~9월	각 군 병과학교 또는 기타 지정장소
진급명령 발령	8~9월	국방부(장교) / 각 군 본부(부사관)

*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예비군/국방부 홈페이지, 국방일보 선발공고 참조

4) 평가요소

- 가) 공통 : 현역/예비역 복무 시 평정, 경력, 교육성적, 상훈, 신체검사,
비상근 예비군 복무 가점(10% 이상) 등 각 군별 평가기준 적용 시행
나) 예비군 지휘관 : 지휘 추천(서열)

5) 진급 대상자 교육 및 진급

- 가) 교육대상/장소 : 진급 예정자 전원/병과학교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
나) 진급 대상자 교육 이수자는 동원훈련을 포함한 해당 연도 훈련 1회를 면제(단, 해당연도 훈련 이수자는 다음해 훈련 면제)할 수 있음.
다) 진급 대상자 교육시 전투복은 미지급하며, 공가 처리는 예비역 간부가 소속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 가능

6) 접수방법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또는 예비군앱에서 접수(권장)

* 수기지원서 작성 후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참모처 우편 접수(등기우편만 접수 가능)

관 의 처

• 국방부 자원동원과	☎ 02)748-5224	군)900-5224
• 육 군 동원참모부 예비군조직관리과	☎ 042)550-5536	군)960-5536
• 해 군 정보작전참모부 예비군과	☎ 042)553-3525	군)910-3525
• 공 군 정보작전참모부 동원과	☎ 042)552-3426	군)920-3426

2 동원령 선포 시 행동요령

가. 관계법령 : 병역법, 예비군법,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등

나. 동원령 종류

- 1) 국가동원령(총동원, M(Mobilization))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시 국가의 이용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 및 병력을 전국 규모로 동원
- 2) 부분동원령(PM(Partial Mobilization)) : 일부 지역에서 국지전 발생 또는 적의 포격·침투·도발 등 국가비상사태 시 특정 자원을 동원하거나 일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및 병력을 동원

다. 동원령 선포 방법 : 신문이나 방송, 소집통지서 등 활용

라. 병력동원소집(선포권자 : 대통령 / 소집권자 : 지방병무(지)청장) 구분

구분	병력동원소집(총동원)	부분동원소집(부분동원)
개념	전시·사변 등 유사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 충원을 위한 동원	일부지역에서 국지전 발생 등 국가비상사태 시 특정지역 일부부대의 조기증편을 위한 동원
대상	동원지정된 예비군	
동원령선포 및 행동요령	신문, TV, 라디오, 전화 등을 통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예비군들은 병무청에서 사전 교부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나 연초 소집부대에서 발송한 지휘서신을 확인한 후 예비군복을 입고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입영	
입영부대	병력동원 소집부대	부분동원 소집부대
입영시기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까지 입영	
	(예) 동원령 3월 1일 10:00 선포 시	
	(소집통지서) M+1일 14:00 ☞ (부대 입영) 3월 2일 14:00	(소집통지서) PM + 20시간 ☞ (부대입영) 3월 2일 06:00
통지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분홍색)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흰색)

- ※ (지역)예비군동원 : 통합방위태세 유지 및 지역안정을 위해(재난, 국지도발 등) 지역단위로 예비군 동원
 * 발령권자 : 국방부장관(수임군부대장 위임 가능)
 * 동원대상 : 예비군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 내 예비군(행정구역단위)
 * 지역별 집결시간 : △예비군동원 발령지역/인접 시·군·군(6시간 이내),
 △그 외 육상지역(24시간 이내), △섬 지역에 있거나, 아선 승선자(48시간 이내)

문의처

- 국방부 자원동원과/예비전력과 ☎ 02)748-5221, 군)900-5221, 02)748-5241 군)900-5241
- 육 군 동원참모부 인원동원정책과 ☎ 042)550-5524 군)960-5524
예비군조직관리과 042)550-5538 군)960-5538
- 해 군 정보작전참모부 예비군과 ☎ 042)553-3521 군)910-3521
- 공 군 정보작전참모부 동원과 ☎ 042)552-3426 군)920-3426

제2장 예비역 단체 안내

단체명	회원자격	문의처
재향군인회	군 복무를 마친 자, 군번을 소지한 자	02)417-5412
성우회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	02) 417-5415
예비역 대령연합회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대령	02) 6392-0065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대한민국의 예비역 또는 영관장교	02) 415-3715~6
예비역 부서관 총연합회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부서관	02) 928-1223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무공, 보국 수훈자 유족회원	02) 790-9653
육군발전협회	육군을 사랑하는 남녀노소 및 기관·단체	02) 749-6987~8
해군발전협회	해군의 발전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예비역을 포함한 모든 국민 및 기관(단체)	02) 810-3090
공군발전협회	공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기관·단체	02)811-1412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년 이상 근무한 예비역 중 전역한 지 5년 이내로 연구활동이 가능한 자	031)727-8114

1 재향군인회

가. 설립목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병역 의무를 마친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신장,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단체

재향군인회 조직편성

- 기본조직 : 전국 각 행정구역별 설치 (* 14개 시·도회, 223개 시·군·구회, 3,070 읍·면·동회)
- 직장조직 : 직장단위별 설치 * 직장지회 2개회, 직장연합분회 6개회, 직장분회 31개회
- 해외지회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3개국 23개회
- 산하업체 : 중앙고속, 종합사업본부 등 8개 업체
- 향군친목단체 : 61개 단체 (155페이지 참조)

나. 회원자격

- 1) 회원* : 군 복무를 마친 자, 군번을 소지한 자
 - * 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예비역
 - ②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 복무를 마친 자
 - ③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 2) 정회원(평생회원) :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한 자

다. 회비

- 1) 향군 정회원 가입회비는 평생 1회 납부 완결
- 2) 장성 : 10만 원/영관 : 5만 원/위관·부사관 : 2만 원/병 : 1만 원

라. 가입절차 * 가입문의 ☎ 02)417-5412 / 장성정회원 02)417-5414

- 1) 전화 또는 직접 방문 :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사무실
- 2) 향군 홈페이지(www.korva.or.kr) 향군활동 → 정회원 가입안내
- 3) 향군 모바일 앱가입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민국재향군회 검색

- 4) 장성정회원 : 향군 홈페이지 → 향군활동 → 장성 정회원가입 안내 → 입회신청서 다운로드

* 장성정회원은 향군 본부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정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장성회원증 우편 발송

- 5) 서류 제출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대한성서공회빌딩) 조직복지국

마. 회원 혜택

- 1) 향군 각급회 및 산하업체 임직원 우선 채용

가) 대상인원 : 본부 및 산하각급회 임직원, 8개 산하업체 임직원

나) 직원은 4대보험, 퇴직금 지급, 건강검진 등 안정적인 직장생활 보장

- 2) 향군회원 및 자녀 장학금 지원 : 향군회원 본인, 자녀의 중·고교생/대학생(유학생포함)

* 문의 : 향군 장학재단 ☎ 02)417-5887, 각급회 (붙임 #16 참조) / 매년 400여 명

- 3) 6·25 참전자 중 생계곤란 회원 생계보조금 지원

- 4) 향군 할인가맹점/산하 업체 할인 혜택(재향군인회 홈페이지 참조)

- 5)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지원

가) 현충원 : 대전, 서울 - 국가유공자, 20년 이상 군복무자

나) 호국원 : 이천, 임실, 영천, 산청, 괴산 - 10년 이상 군복무자, 참전유공자

- 6) 인터넷 안보신문 코나스(www.konas.net) 무료 이용, 코나스 회원가입시 국가안전보장 관련 논문 및 전문자료 무료이용 가능

- 7) 법률구조활동 무료 지원

가) 자문변호사 : 본부 및 시·도회별 5명 내외

나) 지원 : 회원 법률 무료상담 안내

다) 활용방법 : 향군 홈페이지(www.korva.or.kr) 각급회 연락처 참조

- 8) 기타 * 재향군인회 주소/전화번호 (159페이지 참조)

가) 향군마트(로그인 후) 혜택 부여

나) 재향군인신문 일부 제공 등

문의처

• 재향군인회 조직복지국

☎ 02) 417-5412, 5255

2 성 우 회

가. 설립목적 :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자유수호·국가보위와 조국의 평화통일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 분석하여 가치수호에 중대 위협이 되는 조짐이 있을 때는 결연히 정론으로 비판·계몽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선도

나. 회원자격 :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

다. 회비

회비종류	금 액	납부 시기	연회비 납부 방법
연 회 비	100,000원	연 1회 납부	• 성우회 계좌로 연회비 납부 * 계좌정보, 문의처 문의 * 반드시 회비 납부자 성명 기재

라. 가입절차

- 1) 전화로 가입 신청(전화 시 상세하게 가입 안내)
- 2) 이메일로 가입 신청 : staradm@hanmail.net
- 3) 입회원서로 가입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빌딩 성우회

마. 회원 혜택

- 1) 성우회 주관 각종 행사에 초대
- 2) 안보 관련 제반 정보, 시사법률상식, 회원명부 열람, 무료 법률 자문
- 3) 활동에 직접 참여 : 정책자문위원(15명 내외), 운영위원(50여 명 운용)
- 4) 안보강사로 예비군 안보강의 : 100여 명 운용, 강사료 지급
- 5) 성우회 소식지 및 수첩 배포
- 6) 회원 애경사 지원 : 본인·부모·처·장인·장모 사망 시 조화 및 문자 전파 지원/자녀 결혼 시 청첩장 주소 라벨 지원

문 의 처

☎ 02) 417-5415, 02) 423-7713

E-mail : staradm@hanmail.net



3 예비역 대령연합회

가. 설립목적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국가안보·헌법수호를 위한 활동 및 평화통일 정책연구,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권익 보호에 힘쓰며, 나아가 군과 국가발전에 기여

나. 회원자격 :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대령(희망자)

다. 회비

- 1) 정회원 가입비 : 종신회비 10만 원, 연회비 3만 원, 후원금 : 액수 무관
- 2) 평생회원 : 50만 원(자녀 결혼, 애경사 지원)

라. 가입절차

- 1) 전화 및 팩스로 의사표시 및 직접 방문 : 02)6392-0066 (팩스 0068)
- 2) 입회서 작성 및 회비 납부 즉시 회원가입

마. 회원 혜택

- 1) 안보, 통일 관련 세미나 포럼 등 일정 제공/초청
- 2) 안보 전문 강사 추천 및 교육기회 제공
- 3) 사회공헌 일자리 참여(봉사료 지급)
- 4) 산하 (사)을지나라사랑 연구위원 위촉 및 용역과제연구
- 5) 사무실(컴퓨터, 전화, 팩스) 사용, 모자·배지·명함 제공

바.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순환로 2569 재향군인회 빌딩 6층

- 1) 오시는 길 : 3호선 양재역 1번 출구 직진 100m

(내비게이션 “대한성서공회” 빌딩 검색)

문의처

☎ 02) 6392-0065~7

FAX : 02) 6392-0068

카페 : 네이버 대한민국 수호대

4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가. 설립목적 : 자유민주주의 수호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과 세계평화 증진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자생을 위한 사업 및 교양 학술연구

나. 회원자격

- 1) 대한민국의 예비역 또는 퇴역 영관장교로서 본회의 창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
- 2) 위관급 장교로서 국가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인 자는 명예회원으로 가입 가능

다. 회비/가입절차 : 본회 소정양식에 의거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원서와 함께 입회비 납부

라. 회원 혜택

- 1) 회보 발송(분기 1회)
- 2) 정기총회 초청(연 1회)
- 3) 사망 시 : ① 국방부 장관 조기 및 영관장교 연합회 조기 조치
② 3단 조화 또는 꽃바구니 조화 조치 및 문상
- 4) 전직지 순례 시 및 친목 행사 시 초청(연 2회)
- 5) 향군 친목단체 행사 시 초청
- 6) 향군 상조회 가입 시 할인 혜택

문의처

☎ 02)415-3715~6

FAX : (02) 415-3717



5 예비역 부서관 총연합회

가. 설립목적 : 대한민국의 모든 예비역 부서관들의 모임을 통합하여 군복무 당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여 호국정신을 지속 함양하고,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나. 회원자격

- 1) 육·해·공 및 해병대에서 부서관으로 명예롭게 복무 후 전역·퇴역한 자
- 2) 본회의 지정서식 입회신청서를 제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단체

다. 입회절차 : 본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

라. 회비

- 1) 영구회비 : 30만 원(평생 1회, 연·월 회비 없음)
- 2) 연회비 : 5만 원(연 1회, 월회비 없음)
- 3) 월 회비 : 5천 원

마. 회원 혜택 : 연합회 회보 등 유인물 발송, 각종 행사에 초청 등

문의처

☎ 02) 928-1223

FAX : 02) 928-1226

6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가. 설립목적 :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평화적 통일 성업 달성과 국가발전 기여와 동시에 지역사회 봉사 및 회원 복지증진

나. 회원자격

- 1)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 2) 보국 수훈자 : ①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②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 개발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7호 및 8호

- 3) 유족회원 : 선 순위 승계 유족 1인

다. 회비 : 지회별 상이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홈페이지(<http://www.mugong.kr>)접속 → ‘우리단체는’ 클릭 → (좌측 하단) ‘지부 및 지회 안내’ 클릭 → 지회별 전화번호 확인

라. 가입절차 : 주소지 소재 시, 군, 구 지회에 방문하여 가입

* 방문 전 지회로 전화하여 필요한 사항 문의

마. 회원 혜택

- 1)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보훈예우(명예)수당 신청 및 수령 절차 안내
- 2) 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근조기 증정
- 3)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행사 지원(무료) 시 우선권 부여 - 근조화환, 플래카드, 단체 조문, 태극기 관포, 영현봉송 등
- 4) 지회·지부·본부 근무 인원(직원) 선발 시 지원 자격 부여
- 5) 지회 및 지부 선양단원(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근조기 증정요원 포함) 결원 시 선발 우선권 부여(활동에 따른 실비 지급)
- 6) 지자체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휴하여 회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 7) 베트남 전적지 순방(4박 6일) 기회 부여(국비 지원)



- 8) 전국 전사적지 답사기회 제공(각 지회 및 지부별 시행)
- 9) 각 지역별 「무공수훈자 공적비」에 입회 회원 각명(刻銘)
- 10) 지회 주관 각종 행사 시 초청, 회원 간 친목 활동 참여
- 11) 회원 상부상조 활동(고령·독거·불우회원 돕기, 위로연 행사 등)
- 12) 설·추석 등 명절선물 및 위문품 분배
- 13) 안보강연활동, 지역 현충시설 지킴이, 자연정화·질서 지키기 캠페인, 생명지킴이 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 기회 부여

문의처

☎ 02)790-9653

www.mugong.kr/

7

육군발전협회

가. 설립목적

* 육군 후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일한 비영리 민간단체

국가안보와 육군정책의 가치 홍보, 친군화 도모를 위한 민·군간 상호 협력,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정책과 군 발전을 지원 및 후원, 육군과 육군가족 지원

육군협회 조직편성

- ☐ 협회본부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9 전쟁기념관 432호
- ☐ 회장 : 권오성(제44대 육군참모총장)
- ☐ 부설 지상군연구소 : 연구소장 등 연구위원 150명
- ☐ 국내지부(7) : 계룡·충남, 인천, 충북, 경기, 대전·세종, 강원·춘천, 부산
- ☐ 해외지부(1) : 미국 서부(LA)

나. 회원자격 : 대한민국 육군을 사랑하는 남녀노소 및 기관·단체

다. 회 비 : 월 1만 원 정기후원

라. 가입절차

1) 인터넷으로 가입하기 : 육군협회 홈페이지(www.aroka.kr)에서 가입

①	②	③	④	⑤	⑥
홈페이지 (www.aroka.kr)	회원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회비 입금	관리자 승인	회원가입 완료

2) 팩스로 가입하기 : 육군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①	②	③	④	⑤
홈페이지 (www.aroka.kr)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팩스 전송 02-749-6986	금융기관 회비납부	회원가입 완료

마. 회원 혜택(평생회원)

- 1) 정기 개인후원 가입 웰컴패키지 제공(가입 한 달 후)
- 2) 정기 개인후원 정기 감사패키지 제공(1년 후, 특정기념일)
- 3) 육군협회 홈페이지 열람(www.aroka.kr), 협회 주최 행사초청
- 4) 육군협회 발행 간행물 수령 : 육군협회 소식지(분기별 계간지) 등

* 군 복지시설의 정회원·준회원에게 중복적용 되지는 않음

문의처

☎ 02) 749-6987~8

FAX : 02) 749-6986



8

해군발전협회

가. 설립목적

* 2008년 10월 13일(국방부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

국가안보체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과 해군발전 지원 및 후원, 대국민 안보의식 계도 활동, 회원 친목 도모 및 복지증진 활동

해군협회 조직편성

□ 본부

- 의결기관 :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 회장단 : 회장, 부회장(7명), 감사(2명)
- 고문 : 역대 해군참모총장
- 자문위원 : 정책, 안보, 군사,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 연구소 : 연구소장 외 연구위원
- 사무국 : 사무총장 등 2명

□ 지회 및 해외 지부(각 1) : 계룡시지회, 미국 서부지부

나. 회원자격 :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예비역을 포함한 모든 국민 및 기관(단체)

다. 회비

구 분		회 비	비 고
정회원	평생회원	30만 원 / 평생	평생 정회원
	후원회원	30만 원 이상 / 연	평생회원 자격 부여
	연회원	3만 원 / 연	1년간 회원 자격 부여
기관·단체회원		100만 원 이상 / 연	대표 : 평생회원 대우
일반회원		회비 없음	협회 지지자

라. 가입절차

- 1) 인터넷으로 가입 : 해군협회 홈페이지에서 가입
- 2) 팩스로 가입 : 해군협회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및 발송
- 3) 전화로 가입 : 해군협회 사무국

마. 회원 혜택(평생회원)

- 1) 해군협회 홈페이지 열람(www.arokn.org)
- 2) 협회 주최 행사 초청
- 3) 해군협회 발행 간행물 수령 : <해군협회지> 등

문의처

☎ 02) 810-3090

FAX : (02) 841-0317

9

공군발전협회

가. 설립목적

국가안보와 대한민국 번영에 기여,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과 공군발전을 지원 및 후원, 친군화 여건 조성 및 공군사랑을 도모하는 민군 상호협력

공군협회 조직편성

- ☐ **본부**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92 공군항공안전단 태성관 2층
 - **의결기관** :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이사는 15명 이내)
 - **회장단** : 회장, 부회장 ○ **감사** : 2명 이내
 - **자문위원** : 역대 공군참모총장, 공군전우회장, 공군발전협회장, 본회 발전 공헌 인사
- ☐ **부설 항공우주력연구원** : 연구원장 등 연구위원 100여 명

나. 회원자격 : 대한민국 공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기관·단체

다. 회비/가입절차

1) 회비

구 분		회 비	비 고
정회원	평생회원	30만 원 / 평생 1회	평생 정회원
	연회원	3만 원 / 연	1년 정회원
기관·단체회원		100만 원 이상 / 연	대표(평생회원 대우)
일반회원		회비 없음	협회 지지자로서 인터넷(홈페이지) 회원

2) 가입절차

가) 인터넷 가입 : 공군발전협회 홈페이지(www.arokaf.co.kr)에서 가입

나) 전 화 가입 : 문의처 참조

라. 회원 혜택(평생회원)

- 1) 협회 홈페이지(www.arokaf.co.kr), 자료 열람·댓글 쓰기, 다운로드 가능
- 2) 공군협회 발행 간행물 수령과 협회 주최 행사에 초청
- 3) 전공에 따라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연구위원으로 참여 기회 부여

문 의 처

☎ 02)811-1412 02)825-8461



10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가. 설립목적 : 국방·군사에 관한 제반 분야를 연구·분석하여 국방정책 수립 및 군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나. 신청자격 : 10년 이상 근무한 예비역 중 전역한 지 5년 이내로 연구 활동이 가능한 자(학위 소지자 또는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

다. 연구 활동 분야

- | | |
|---------------|--------------------|
| 1) 국방정책/군사 분야 | 2) 국방비용 분석 분야 |
| 3) 정보통신 분야 | 4) 무기체계 및 획득 분야 |
| 5) 군수/시설 분야 | 6) 작전 및 교육훈련 분야 |
| 7) 인사 및 복지 분야 | 8) 외국어 번역 분야(영어 등) |

라.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 제출(이메일) → 접수 → 심사 → 승인 → 예비역 연구위원 등록

마. 활동기간 : 예비역 연구위원으로 등록된 후 3년 이내 연구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자동 해촉

바. 지원사항 : 명함제작 지원(연구 활동 시), 주요 군사 이슈 뉴스레터 제공(이메일), 포럼·세미나 개최 안내, 연구용역 과제 입찰 관련 정보 제공(이메일, SNS 전송)

* 연구위원이 연구용역 과제 획득 시 계약 관련 행정 처리 등 지원

문의처

☎ 031)727-8114

<참 고>

향군 참전/친목단체 연락처

2024. 1. 1.현재

계	계급별	군 별	임관별	병과별	부대별	참전별	기 타
61	5	3	15	16	7	13	2
회 명		연 락 처 (사 무 실)					
		주 소			전 화 번 호		
계급별 (5)	성 우 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향군회관 5층			02) 417 - 5415 (F) 417 - 5448		
	대한민국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향군회관 6층			02) 415 - 3715 ~6 (F) 415 - 3717		
	6·25참전80동우연합회	인천시 남구 경원대로 896, 향군회관 304호			032) 424-8292 (F) 032) 423-9282		
	예비역대령연합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향군회관 6층			02) 6342 - 0067 (F) 02) 6342-0068		
	대한민국부서관총연합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향군회관 5층			02) 928 - 1223 (F) 928 - 1226		
군별 (3)	해병대전우회	서초구 양재천로 19길 18 (인곡빌딩 301호)			02) 417 - 0928 (F) 417 - 0953		
	대한민국공군전우회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대방동)			02) 825 - 8461~2 (F) 825 - 8460		
	대한민국해군동지회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나길 20 해군 복지마트 203호			02) 849- 6896 (F) 849 - 6862		
임관출신별 (15)	육사총동창회	노원구 화랑로 564 육사회량회관 2층			02) 971 - 3064 (F) 972 - 3064		
	해사총동창회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나길 20(2층)			02) 810 - 3087 02) 847 - 6211 (F) 847 - 6210		
	공사총동창회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92 공군항공안전단 태성관 3층			02) 823 - 1091 (F) 823 - 1092		
	국군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향군회관 6층			02) 2205-1017 (F) 070-8871- 1017		
	R O T C 중 앙 회	서초구 사평대로 98 (반포동, ROTC회관 6층)			02) 552 - 1961~3 (F) 784 - 7260		



회 명		연 락 처 (사무실)	
		주 소	전 화 번 호
임 관 출 신 별 (15)	육 군 3 사 관 학 교 총 동 문 회	서울 양천구 중앙로 312 (진주빌딩 4층)	02) 534 - 6334 (F) 534 - 6377
	학 사 장 교 총 동 문 회 (맥 회)	서울 강동구 성내로 6길33 4층 (성내동, 성광빌딩)	02) 6095 - 5141 (F) 6095 - 5142
	기술행정사관총동문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향군회관 5층	02) 468-0109 (F) 02) 468-0234
	간 부 사 관 총 동 문 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9, 4층(이태원동)	
	호 국 군 사 관 학 교 총 동 창 회	서초구 잠원로3길 20(잠원동) 중앙하이츠B동 701호	02) 537 - 0059
	전 시 사 관 학 교 우 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향군회관 5층	02) 424 - 4353 ~ 4 (F) 424 - 4354
	갑 종 장 교 전 우 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향군회관 5층	02) 416 - 5305 ~ 6 (F) 416 - 5306
	재 향 여 군 연 합 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향군회관 6층	02) 417 - 5205 (F) 499 - 5205
병 과 별 (16)	무 술 지 도 사 법 전 역 군 인 회	노원구 석계로 5길 37-6(월계동) 태광빌라 바동 101호	02) 913 - 5248 ~ 9 (F) 913 - 5250
	(사) 해 군 O C S 장 교 중 앙 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1길 8, 1층	02) 798 - 1900 (F) 02) 798 - 1919
	대 한 민 국 포 병 전 우 회	송파구 가락로 40길 3-3 창운기업 3층	02) 412-7301 070-7124-2355~6 (F) 412 - 7302
	기 갑 장 교 전 우 회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 91길 45, 103동 901호 (화성파크드림)	
	공 병 전 우 회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84길 22-15 B-1호	031) 752 - 8708 (F) 031) 758 - 8730
	병 기 동 우 회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32 903호	02) 545 - 5102 (F) 02) 404-5102
	수 송 동 우 회	서초구 바우뫼로 130, 한도빌딩 601호	02) 2281-9527 (F) 02) 2294-2800
	화 생 방 전 우 회	도봉구 시루봉로 107, 23동 405호	
별 (16)	대한민국헌병전우회	강남구 테헤란로 313(역삼동) 성지하이츠빌딩 1009호	02) 552 - 3278 ~ 9 (F) 561 - 8947
	인 사 병 과 동 우 회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9 ES타워 9층 메세이상 상임고문실	

회 명		연 락 처 (사무실)	
		주 소	전 화 번 호
병 과 별 (16)	정 훈 동 우 회	송파구 새발로 12길 8, 301호	
	재 정 동 우 회	용산구 이태원로 169 히트타운 402호	
	의 우 회	종량구 신내로 21길 16 신내대림(아) 504-1101	
	육 군 항 공 협 회	경기 하남시 검단로 19번길 23 보훈회관 2층	070-4863-8902 (F) 031) 701 - 3014
	의 정 총 동 우 회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94번길 274 104-1603	031) 287 - 0694
	병 참 동 우 회	송파구 백제고분로 509 대중빌딩 1205호	02) 418-1313 (F) 418 - 4343
	정 보 통 신 장 교 동 우 회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21호	02) 3472 - 7885 (F) 02) 3472-7885
부 대 별 (7)	합 주 단 친 목 회	동작구 흑석2동 한강현대(아) 102-904	02) 814 - 8928
	총 호 안 보 연 합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0 세화오피스텔 812호	778 - 4202 (F) 02) 773 - 1068
	특 전 사 동 지 회	광진구 아차산로51길 69, 원동빌딩 4층	02) 501 - 6050 (F) 501 - 5052
	정 보 동 우 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향군회관 5층	02) 6949- 5280 (F) 6949-5281
	J S A 판 문 점 전 우 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74 리더스프라자 6층 603호	
	대 한 민 국 K A T U S A 전 우 회	강서구 양천로 401, B동 904호	02) 3664-0815 (F) 02) 2657-6100
	U D U 예 비 역 중 앙 회	인천시 중구 흥예문로4 (2층)	032) 772-0065 (F) 032) 766 - 0911
참 전 별 (13)	해군UDT/SEAL전우회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 51-12, 1층	
	대 한 민 국 6 · 25 참 전 유 공 자 회	서울 강동구 천중로 206 호국영웅보훈회관 3층	02) 419 - 3851 (F) 419-3852
	대 한 민 국 학 도 의 용 군 회	경기 고양시 양주시 고암길 306-4, 210동 1701호(주원마을)	070-7600-2188
	한 국 유 격 군 전 우 회 총 연 합 회	종로구 비봉길 64(구기동 139) 통일회관 117호	02) 391 - 8240 (F) 396 - 8829



회 명		연 락 처(사 무 실)	
		주 소	전 화 번 호
참 전 별 (13)	백 골 전 우 회	서초구 도곡로1길 74-4, 4층	
	호 림 안 보 협 의 회	구로구 디지털로 271, 벽산디지털밸리 3차	02) 762 - 9298 (F) 919 - 9298
	대 한 호 국 무 공 훈 장 자 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일로 29번길 7, 4층	031) 755-0011 (F) 031) 722-2288
	육군본부직할 결사대 전 우 회	마포구 잔다리로 77 (서교동, 대창빌딩 6층 601호)	02) 325-4896 (F) 02) 338-1153
	백 마 고 지 참 전 전 우 회	동대문구 약령 중앙로 13-1	02) 432 - 6630 (F) 6212 - 0675
	다 부 동 전 투 구 국 용 사 회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9 라길 4, 1501호	02) 962-9904 (F) 963-9904
	영 도 유 격 부 대 전 우 회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길3번길 15, 201호 (아천동)	02) 585- 9707 (F) 02) 6455-3163
	강 화 청 소 년 유 격 동 지 회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09번길 3, 4층 (강화읍,항소급창)	032) 933 - 3448
	대 한 민 국 월 남 전 참 전 자 회	서울 강서구 강서로 56가길 45 호국보훈회관 4층 (등촌동)	02) 412 - 7445~ 6 (F) 02) 412 - 7462
	해 병 해 외 참 전 전 우 회	성북구 길음로 119 길음뉴타운 207동 303호	02) 916 - 6023
기타 (2)	기 동 봉 사 단 친 목 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향군회관 5층	
	재 향 호 국 전 우 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향군회관 6층	02) 413-6250 (F) 02) 413-6257

재향군인회 연락처

시·도회명	주 소	전 화 번 호
본 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빌딩)	02) 417-0641~5
서울시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9(인의동)	02) 763-9251~5
부산시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3-2	051) 625-2111
대구시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91	053) 521-4541~2
인천시회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6(항군회관 5층)	032) 441-2651~3
울산시회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길 3길 58, 6층	052) 291-3736
경기도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19번길 46-21 항군회관	031) 233-9790
강원도회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249(효자동)	033) 244-2921~3
충북도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189(운천동)	043) 266-3881~2
대전·충남도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0(부사동)	042) 252-9659
전북도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41	063) 284-4305
광주·전남도회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91(우산동)	062) 524-0002~3
경북도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307 (장성동 항군회관 2층)	054) 251-4353~4
경남·울산시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34	055) 288-9090~2
제주도회	제주도 제주시 신대로 166(연동)	064) 747-4605~7

제 5 편

전직지원 길라잡이 Q&A

제1장 전직지원 안내

제2장 전직지원 교육 및 취·창업지원사업

제3장 대외기관 사업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제1장 전직지원 안내

- 01. 진로설정 안내
- 02. 전직지원 기간 안내
- 03. 전직지원기간 중 기업 유급 현장연수 제도

01. 진로설정 안내

Q1 진로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 진로설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료 온라인 진로지도검사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전직지원교육 ⇒ 진로지도검사 “클릭”
- * 세부과정 : 직업가치관, 직업선호도, 창업진단, 구직준비도 검사, 중고령자 직업선호도

진로지도 검사

바로가기

- 목표 : 군 생활간 객관적인 도구를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과 전역 후 올바른 진로 선택을 가능하게 함
- 교육인원 : 4,000명
- 세부교육과정

구분	내용	수량	비고
1	직업 가치관 검사	1편	직업선택시 도움
2	직업선호도 검사(S, L)	2편	적합 직업 추천
3	창업진단 검사	1편	창업소질 진단
4	구직준비도 검사	1편	구직기술 정도 진단

② 무료 사이버교육 온라인 강좌 시청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전직지원교육 ⇒ 사이버교육 “클릭”

국방전직교육원

사이버교육원

Dream! Design! Do!

국방전직교육원이 함께 합니다.

취업

자기개발

어학

직무

IT

기타

- 전직 목표별 해당 교육과정 콘텐츠 확인 후 수강 : 총 2000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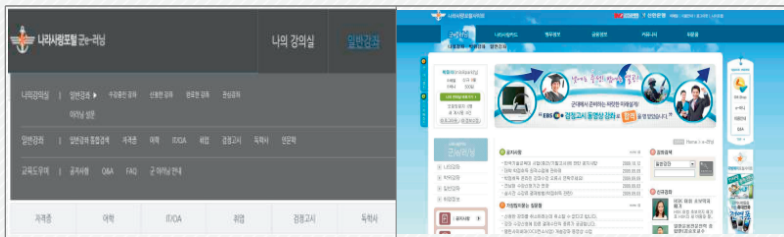
Q2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 자기개발을 위해 지원해 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나라사랑 포털(인터넷 www.narasarang.or.kr) 군 E-러닝 접속

외국어 (1,400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스페인어 등
IT/OA (190개)	컴퓨터 기초,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오피스,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 (750개)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취업준비 (360개)	일반공무원, 검찰직, 교정직, 경찰직, 기술직, 세무직, 관세직, 교원 등



② 제대군인지원센터(vnet.go.kr) 사이버연수원 : 현역시 부터 이용 가능

* 전문과정(자격증 및 채용시험), 외국어과정, 기본소양 및 직무능력향상과정 등(750여개과목)



③ 각 군별 자기개발정보센터(인트라넷) 활용

문의처

- 나라사랑포털 1522-0770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 1544-9001

02. 전직지원 기간 안내

Q1 전직지원기간이 무엇인가요?

전직지원기간이란 「군인사법」과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사회전환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복무기간별 전직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중기복무자			장기복무자		
복무기간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27년 미만	27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전직지원 기간	1개월	2개월	5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 복무기간 산정 시 현재 신분에서 임관 후 복무기간을 산정하며, 과거 군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장교, 준·부사관, 병 복무기간을 가산하여 복무기간 및 전직지원 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
- 단, 재임용·재입대자의 경우, 전직지원기간 산정 시 이전 복무 중 받은 전직지원 기간을 감하고 기간을 산정

Q2 전직지원기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직지원기간 부여 희망자는 국방전직교육원 구직카드 작성 후 전직지원서에 전직지원기간 신청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한 후 소속부대를 경유하여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로 제출합니다.



Q3 전직지원기간 시행 대상자로 선발된 후 전직지원기간 시행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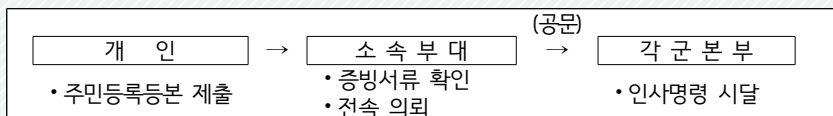
- ☞ 전직지원기간 시행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가사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전직지원기간 취소를 희망하는 자는 전직지원기간 실시 전에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전직지원기간 중에 취소신청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각 군에서 취소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Q4 전직지원기간 중 취업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전직지원기간 부여 대상자로 선발된 자로서 전직지원기간 중 취업이 확정된 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전역 희망 월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전직지원기간 동안 전속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 전직지원기간 이용 시에는 연고지 및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과 원거리 이격 시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휘 계통으로 보고하여 인근 감독책임부대로 전속 변경이 가능합니다.
- ☞ 전속 변경을 희망하는 인원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전속 변경 신청 시 동일지역 내의 타 감독책임부대 전속은 불가합니다.
- * 감독책임부대 : 각 군본부(인사참모부/실/단장), 작전사령관, 교육사령관, 각 군 사관학교장, 군수사령관, 재경군무지원대대 등

Q6 전직지원기간 중 급여는 나오나요?

- ☞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급여는 군 복무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 단, 부가적인 수당과 관련된 것만 제외됩니다. 특수지근무수당, 군인위험근무수당, 군인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교관조교수당, 함정수당, 항공수당, 군인장려수당 1, 2, 3, 4, 5, 6, 7호 가산금 (가, 나급), 8, 9호, 의료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연가보상비와 성과상여금은 개인별 교육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국군재정관리단 ☎953-6431(성과상여금), 6432(연가보상비)로 문의

Q7 전직지원기간 중 개인평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 ☞ 전직지원기간 이용 인사명령이 발령된 후 1회에 한하여 인트라넷 국방인사 정보체계에서 신청하면 5개년 평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전직지원기간 중 전속 시 부임여비 지급 여부?

- ☞ 전속 시 지급합니다. 부임 여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군인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9조와 제16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Q9

군병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 중인 경우 전직지원기간 이용이 가능한가요?

- ☞ 군병원 입원 중에는 전직지원기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질병이 완치되어 퇴원 및 원대복귀가 예정된 경우 전직지원기간 신청이 가능하며, 불가피하게 퇴원일자가 변경되어 전직지원기간 활용이 제한될 경우 반드시 감독책임 부대에 보고하여 전직지원기간 이용을 취소하고 별도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Q10

과거 징계 사실이 있는데, 전직지원기간을 이용할 수 있나요?

- ☞ 과거 징계사실로 인한 전직지원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 다만, 형벌·징계 계류 중인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전직지원기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Q11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해외에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국외자격증 취득교육 및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자는 전직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제4조(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가능합니다.
 - ☞ 신청절차는 국외여행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해외연수, 자격증 취득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부대 인사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전직지원기간 중 국외여행, 해외연수 등이 제한될 수 있음

03. 전직지원기간 중 기업 유급 현장연수 제도

Q1 유급 현장연수 제도가 무엇인가요?

☞ 전직지원기간 중에 있는 전역예정자 희망시, 각 군이 인사명령으로 승인한 기업체에서 연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2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희망하고,
 - ☞ 전직지원기간 중에 있는 전역예정자는 관련서류(중소·중견기업등록증, 근로 또는 연수 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 ☞ 각 군의 전직 및 취업지원부서로 신청
 - ☞ 각 군이 인사명령으로 승인한 기업체에서 연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 각 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전역 후 해당 업체에 취업, 전직 지원의 취지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제2장

전직지원 교육 및 취·창업지원사업

- 01. 진로설계교육
- 02. 진로교육
- 03. 전직기본교육
- 04. 맞춤형 전문교육
- 05.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
- 06.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 07. 청년장병 뉴스타트
- 08. 창업동아리 멘토링 및 창업경진대회
- 09. 내일희망지원
- 10. 전직상담

01. 진로설계교육

Q1 진로설계 교육은 무엇인가요?

- ☞ 군 복무 중 온라인 상시학습을 통해 생애설계와 전역 후 진로에 대한 준비 및 취업준비에 필요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사이버 교육입니다.
- ☞ 교육대상
 - 국방전직교육원에 구직등록을 한, 군 복무 중인 소 장병
- ☞ 교육방법
 -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진행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www.moti.or.kr)에서 사이버교육 및 진로지도검사 활용
- ☞ 교육내용
 - 직업가치관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창업 진단, 구직준비도 검사, 준고령자 직업선호도 검사
 - 진로설정 방법, 경력관리, 취창업 준비전략, 어학, 직무, IT, 생애설계 등



02. 진로교육

Q1 교육대상과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대상

- 장기복무간부 :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전역 2년 전)
- 중기복무간부 : 5~10년 미만 중기복무자(전역 2년 전)

☞ 교육기간 / 장소 : 1박 2일 / 국방전직교육원(경기 성남) 또는 온라인

☞ 교육내용

구 분	1일 차	2일 차
오 전	• 교육 입교 / 과정 소개 • 인생 2막을 위한 자기경영	• 진단을 통한 자기분석
오 후	• 진로 탐색을 위한 정보 수집 • 경험기반의 강점 발견	• 진로목표설정 • 과정 설문 및 수료

Q2 중기복무자는 언제 진로교육에 입교할 수 있나요?

☞ 진로교육은 군복무 중 개발·향상된 개인별 직무역량을 확인하고 전역 이후에도 군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력목표를 탐색·수립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 중기복무자는 전역예정일 기준 2년 전 입교할 수 있으며 입교명령은 각 군에서 실시하고 교육은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실시합니다.

☞ 진로교육은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www.moti.or.kr)에서 교육 날짜 확인 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03. 전직기본교육

Q1 전직기본교육은 무엇인가요?

☞ 전직지원교육은 의무복무 후 전역하는 중·장기 복무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 교육대상 : 중장기 전역예정 간부

- 장기복무 전역예정자는 전직지원기간 중, 중기복무 전역예정자는 전역 1년 전에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타 교육과 중복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이수가 어려울 경우 기본교육 입교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전역 전에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장기복무자(군관련직 시험준비과정, 일반취업과정)
- ② 중기복무자(군공무원 시험준비과정, 일반직 취업과정, 기술직 취업과정)
- ③ 중장기통합반(창업, 귀농귀촌)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각 교육 간 중복수강은 불가합니다.

☞ 전직기본교육 미이수 시 컨설팅 및 맞춤형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며, 직업 능력개발교육비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전역 전 알아야 하는 행정 즉, 각 부처 및 기관의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직기본교육의 신청은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www.moti.or.kr)에서 교육 날짜 확인 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Q2

전직기본교육 장소와 교육기간을 알고 싶어요.

- ☞ 전직기본교육은 소집교육 또는 실시간온라인교육으로 운영되며,
- ☞ 소집교육 시 국방전직교육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으로 출퇴근 하거나 숙박 희망자에 한해 2인 1실 숙소가 지원됩니다.
- ☞ 실시간온라인교육은 월 1~2회 편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사전 안내에 따라 비대면으로 운영됩니다.
- ☞ 전직기본교육의 교육기간은 2박 3일이며
- ☞ 교육의 신청접수는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www.moti.or.kr) 에서 교육 날짜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Q3

전직기본교육과 진로교육 입교 시 복장과 준비물은?

- ☞ 교육복장 : 단정한 사복
- ☞ 숙박 시 준비사항은 개인 세면도구 일체, 운동복(희망 시) 등 개인 필수품을 휴대하시면 됩니다.
- ※ 교육비 무료 / 숙박 희망자 숙소 제공 / 식사 미제공

Q4

교육파견 명령과 파견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 ☞ 진로교육 및 기본교육은 각 군 교육파견 명령으로 입교하게 되며,
- ☞ 명령발령은 교육 시작 일주일 이전(또는 수료 후)에 발령되어 예하 부대로 하달되고
- ☞ 파견 여비는 명령을 근거로 부대 인사실무자가 조치하게 됩니다.

04. 맞춤형 전문교육

Q1 맞춤형 전문교육(舊 군 특성화 맞춤형교육) 과정이 궁금해요.

☞ 맞춤형 전문교육은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군에서의 직무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자격과정 개발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전역예정간부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교육기간 및 진행절차

- 기간 / 장소 : 1주~4개월 /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전문 교육기관
- 교육대상 : 중기 및 장기 복무 전역예정자(희망자 교육)
- 교육절차 : 기본교육 수료후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접수
→ 취업연계성 상담/승인 → 교육입교

☞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

구 분	전 문 과 정
기 간	1주~4개월
교 육 과 정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과정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과정 • 군시설전문가 과정 • 군체력단련장관리자 과정 • 국방드론운영자 과정 • 국방보안전문가 과정 • 영상컨텐츠제작전문가 과정 • 카페베이커리전문가 과정 • 방위사업관리자 과정 • 조경전문가 과정

※ 교육비 : 무료 또는 수료 시 과정별 교육비의 90% 지원(10% 개인 부담)
단, 교육기간 80% 이상 참석 시 교육비 지원

※ 교육 과정별 특성을 고려 일부 교육과정 지원시기 조정

- 기본교육 수료 후 → 진로교육 수료 후 또는 기본교육 수료 후
- 시기 조정 과정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Q2

중기복무자도 맞춤형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중기복무자도 맞춤형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국방전직교육원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맞춤형 전문교육은 중·장기복무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 희망시 가능합니다.

※ 교육 과정별 특성을 고려 일부 교육과정 지원시기 조정

- 기본교육 수료 후 → 진로교육 수료 후 또는 기본교육 수료 후
- 시기 조정 과정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Q3

전역예정 군인이 국방전직교육원의 취업연계성 심사를 받지 않고 보훈부 직업능력개발교육비나 국방부 맞춤형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부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와 국방부의 맞춤형 전문교육은

☞ 반드시 국방전직교육원의 전직기본교육(장기기본교육, 중기기본교육, 중장기 통합기본교육)을 수료하고 취업연계성 심사를 받으신 분에게만 혜택이 주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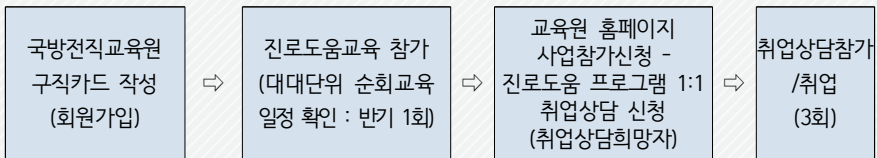
05.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

Q1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 '18년부터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과 1:1 취업상담은 기초적 진로 및 취업 교육에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1:1 취업상담과 취업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청년장병 진로도움 프로그램입니다.
- ☞ '20년부터 전군 각급부대로 확대하고 사단급 부대에 전문상담관을 전담 배치, 직접 찾아가는 단계별 체계화된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 참가신청과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 ☞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절차 및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본인인증절차 준수) 가능



Q3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청년장병(단기복무 간부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 “용사반”, “간부반”으로 구분, 대대급 단위로 전담상담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구분	교육구성(안) 예시	
	용사반	간부반
1교시	- 생애설계와 연계한 진로설정	- 2024년 취업동향
2교시	- 자기분석 및 자기진단	- 서류작성법 / 면접전략
3교시	- 일자리 정보탐색 방법	- 취업활동 계획 / 취업정보

☞ 또한, 진로도움교육을 이수한 장병 중 상담 희망 장병을 대상으로 1인당 3회 상담 및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차수에 따라 목표탐색 및 설정, 심층상담, 과제부여 및 점검, 취업처 및 취업정보 제공, 채용기업 매칭 등이 이루어집니다.

※ 부대 여건에 따라 교육 미실시한 경우에는 조건부 상담 참여가 가능합니다.

06.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Q1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최 시기는 언제인가요?

- ☞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는 국방부 주최, 국방전직교육원 주관으로 23년도에 4월(오프라인), 9월(오프라인) 실시되었습니다.
- ☞ 24년도는 전·후반기 모든 행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전반기 4월 2일간 기존과 동일한 박람회, 후반기 9월 2일간에는 취업분야 `전문가 포럼 및 장병 취업준비 경진대회 등 일자리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Q2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참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는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한 국군장병 중 취업지원이 우선으로 필요한 장병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우선 대상은 당해연도 전역예정장병입니다.
- ☞ 취업특강, 설명회, 멘토링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전역예정장병(당해연도 전역장병)에게 제공합니다.

Q3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 <https://moti.or.kr>

- ① (장병)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http://moti.or.kr>) 회원가입 완료 후 개별참가 신청 → (교육원) 신청자 명단 각군 공문 발송 → (각군) 신청자 명단 및 참여여건 보장 예하부대 전파 → (장병) 참가 신청 내역 부대 지휘관 보고 → 현장 참여
- ② (부대) 부대 단위 박람회 프로그램 참여 희망 시 참여 희망일, 참여 인원 명단 국방전직교육원, 각 군 본부 발송 → 국방부 승인 → 참여

박람회 계획 통보
(2개월 전)



부대별 참가
신청자 보고
(각 군/3~4주 전)



군별 참가
신청자 보고
(국방부/1~2주 전)



박람회
참가



07. 청년장병 뉴스타트

Q1 청년장병 뉴스타트는 무엇인가요?

- ☞ 취업 매칭 중심의 실질적인 청년장병 취업도움 프로그램으로 I 형, II 형, III형으로 구분되며, '취업역량 기본과정', '취업준비 심화과정', '찾아가는 현장 채용설명회'로 운영됩니다.
- ☞ 사전에 공문을 통해 계획을 통보하고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moti.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선발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Q2 청년장병 뉴스타트에 단기복무자도 참석 가능한가요?

- ☞ 청년장병 뉴스타트 프로그램 단기복무자 중심 취업집중 지원프로그램으로 사전에 참여 가능한 신분이 사업별로 상세하게 공고됩니다.
- ☞ 대체로 프로그램 시작 1~2개월 전에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사업 참가신청 게시판'(moti.or.kr)에 안내됩니다.
- ☞ 기업 채용 시즌을 고려하여 주로 2~11월까지 월 1~3회 시행되는 행사로 당해 연도 전역 예정인 청년장병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전역자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뉴스타트 I형(취업역량 기본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 청년장병 취업사관학교는 취업을 원하는 전역예정장병(만 34세 이하 간부 및 병사)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 교육은 목표설정과 유형별 취업역량 강화교육으로 연간 2,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개인별 취업 준비도에 따른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교육은 1일 또는 1박2일 동안 진행되며, 교육장소는 교육원 또는 외부 연수원 등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교육운영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참가를 원하는 전역예정장병은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moti.or.kr) '사업 참가신청 게시판'에서 참가 신청을 합니다.

Q4 뉴스타트 II형(취업준비 심화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맞추어 교육 후 취업을 즉시 원하는 청년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 군 특기(경력)를 활용하여 유사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 및 컨설팅 집중과정으로 연간 9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 주로 2일 동안 외부 연수원에서 청년장병 채용 수요 기업체 협력을 통해 기업과 직무이해 등 맞춤형 교육 시행 및 과정수료(전역) 후에는 취업으로 연계하는 전문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 행사 참가를 원하는 전역예정장병은 사전에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moti.or.kr)에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Q5

뉴스타트 Ⅲ형(찾아가는 현장채용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전역예정 장병의 일자리 지원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시행하고, 크게 4개 분야로서는 “기업 채용설명회”, “공직 설명회”, “귀농귀촌, 귀어귀촌”, “창업” 등으로 운영됩니다.
- ☞ 찾아가는 현장채용설명회는 '24년 전역예정인 청년장병을 대상으로 연 30회 (3~11월)에 1일 2~3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 ☞ 분야별 장병 선호 직무 및 분야, 국가 등을 계획하고 일정에 따라 사전에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및 개별 신청을 접수합니다.
- ☞ 회차별 설명회는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외부시설 및 군부대 시설 협조를 통해 소집교육 형태로서 진행되며, '21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및 참여 유형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 행사 참가를 원하는 전역예정장병은 사전에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moti.or.kr)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고, 1~2개월 전에 협조를 통하여 각 군 홈페이지에도 공지합니다.

08. 창업동아리 멘토링 및 창업경진대회

Q1

창업동아리 멘토링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 ☞ 2020년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중·대대 단위 소그룹(2~5명)으로 창업동아리를 편성하여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영내·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동아리 활동을 멘토링 하는 것입니다.
- ☞ 평일 외출 및 휴대폰 사용 등 개선된 병영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주둔지 또는 영외지역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창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 멘토를 통해 사회의 트렌드를 고려한 아이템 개발 및 사업계획 발전을 위한 멘토링을 주기적으로 진행합니다.

Q2

창업동아리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간,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 ☞ 창업동아리 멘토링을 받는 주 대상은 병사이지만 소그룹으로 창업동아리를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므로 간부들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따라서 대상은 전 장병입니다.
- ☞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역 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진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진대회 참여시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역 전에는 희망하는 시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창업인식개선교육 신청방법은 희망자가 부대 인사부서에 신청하면 종합하여 각 군 본부로 신청합니다.
- ☞ 창업동아리 멘토링 신청은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이미 동아리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 없이 멘토링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창업동아리 멘토링에 참여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창업동아리 멘토링의 지원절차입니다.



☞ 창업동아리를 편성하면 전문 멘토가 배정되어 먼저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선정된 아이템으로 창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진대회 참가 동아리는 경진대회 참여 간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역 후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 추천 등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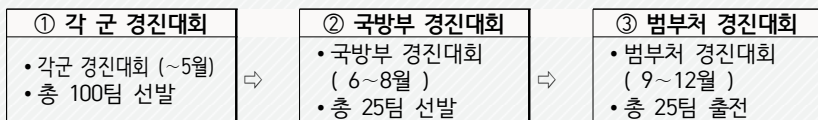
Q4

창업경진대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장병들의 생산적 군복무여건을 조성 및 군내 창의문화 확산과 창업아이템 발굴을 위해 국방부 창업경진대회를 추진합니다.

☞ 창업경진대회는 ① 각군 경진대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100팀을 선발, ② 각군에서 선발된 100팀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통해 최종 25개팀을 선발, ③ 국방부 대표로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군내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국방부 및 범부처 경진대회 간 전문가 멘토링 집중 지원)

☞ 국방부 대표로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참가를 원할 경우, 각군 경진대회를 거쳐야 하므로 각군 예선리그를 먼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참가를 원하는 팀은 추후 공지될 내용을 확인 후, 사전에 국방전직교육원 누리집(moti.or.kr)에서 참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09. 내일희망지원(MyJob+Tomorrow)

Q1

‘내일희망지원’은 무엇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내일희망지원은 전역예정인 장병들이 경력전환 시기에 초기상담부터 전역 후 취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전직지원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내용

① 내일희망지원상담 : 초기상담 + 사후관리상담

- 초기상담: 구직카드 등록된 전 장병을 대상으로 국방부 전직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안내, 사업연계 및 경력상담 지원 등
- 사후관리상담: 일자리사업 미참여자 중 전역 임박자에 대한 집중 취업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 상담

② 취업지원: 구인처 직접 개발을 통한 전역예정장병 일자리 발굴/개발 및 장병에게 적합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추천/알선을 통하여 전역 예정 장병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 대상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www.moti.or.kr)를 통해 구직등록 한 전역 예정 전 장병

☞ 서비스기간 : 구직등록 시~전역 후 6개월까지

☞ 신청방법 : 국방전직교육원 구직등록 시 자동 참여



10. 전직상담

Q1

전직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은?

- ☞ 기본교육에 참여하는 중·장기 전역예정간부 대상으로
- 기본교육 입교 시 신청서 접수하며, 전역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희망에 따라 4개 권역(14개 전직지원센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전직상담에 참여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 전문컨설턴트에 의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직 희망분야별 성공전직을 위한 역량강화, 정보제공, 구직서류 및 면접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장기복무자는 전직준비기간에 참여함으로 센터별 워크숍(6H) 및 전직활동지원이 제공됩니다.
- ☞ 중기복무자는 권역별 수시 별도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Q3

전직상담 참가 중 전역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 ☞ 전역시기와 관계없이 사후관리는 참여일로부터 차년도 12월말 까지 입니다.
- 단, 컨설팅 개시일은 반드시 전역 전, 현역 신분일 때만 가능합니다.

Q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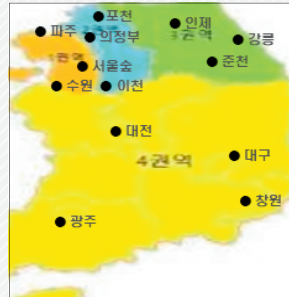
장기복무자의 경우, 전직상담 중 워크숍(6H)을 꼭 받아야 하나요? 숙식 지원이 되나요?

- ☞ 장기복무자의 경우 위탁 운영기관에서 진행되는 워크숍(6H)은 필수이며, 1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 워크숍 참가 시 별도의 숙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Q5

전직상담 참가 중 전역하게 되면 거주지역으로 컨설팅 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불가합니다. 전직상담을 최초 신청할 때 담당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12개월 동안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속 지원하기 때문에 중도에 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고객에 대한 연속성이 없어 제한됩니다.
- ☞ 최초 전직상담을 신청할 때 전역 후에 주로 활동하는 지역으로 신청하는 것이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기에 용이합니다.
- ☞ 지역별 전직상담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권역 : 영등포, 파주, 서울숲, 수원
 - 2권역 : 의정부, 이천, 포천
 - 3권역 : 춘천, 강릉, 인제
 - 4권역 : 창원, 부산, 대구, 광주



제3장

대외기관 사업

- 01. 직업능력개발교육비(국가보훈부)
- 02. 전직지원금(국가보훈부)
- 03. 내일배움카드(국가보훈부 및 고용노동부)
- 04. 취업지원프로그램(CAP@) 교육(고용노동부)
- 05. 유관기관 취업박람회
- 06.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01. 직업능력개발교육비(국가보훈부)

Q1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 ① 교육 시작일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 상태인 사람
(단, 전역예정자는 국방전직교육원 전직기본 교육수료증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②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Q2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이 궁금합니다.

☞ 신청방법

- ① 훈련신청전 전직목표에 대해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상담사와 반드시 사전 상담 실시
- ②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수강 등록 후 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단기과정(1~7일)의 경우는 교육 종료일까지 신청
- ③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에 교육비 지원신청서, 전직기본교육 이수자 확인 서류[전직기본교육 수료증, 불가피한 사유로 미입교자는 부대장(연대장급 이상) 추천서(확인서) 등], 교육비납부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지원금액

- ①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금 : 150만원 한도 내 지원(중·장기복무자 동일)
*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각 과정별 수강료 국비지원비율은 80%(개인부담금 20%)로 함
- ② 전체 수강료 중 요금할인, 환급금 등 발생 시 이를 제외한 실제 납부금을 기준으로 계산 지급합니다.
- ③ 교육비 신청시기가 지나 훈련과정 종료 전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할계산 지원합니다.



02. 전직지원금(국가보훈부)

Q1 전직지원금의 지급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 지급대상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군인연금 비대상자
-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으로서
- ☞ 전역 후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제대군인지원센터)으로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 지급 비대상(신청서 접수일 현재 기준)
 - 취업상태인 경우
 - 질병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 지급액
 - 중기복무 제대군인(5~10년 미만) : 월 55만원 최장 6개월간 지급
 - 장기복무 제대군인(10~19년 6개월 미만) : 월 77만원 최장 6개월간 지급

Q2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몇 년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 전역 후 6개월 이내까지만 신청 가능(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Q3 전직지원금은 취업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 수급기간 중 취업 시에는 잔여기간 총 지급액의 2분의 1을 일시금으로 지급

03. 내일배움카드(국가보훈부 및 고용노동부)

Q1 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인가요?

- ☞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고용창출 및 안정을 위하여 전 국민(공무원, 대규모기업 취업자 등 제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2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및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신청대상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중 전직 지원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전역예정자 임이 증명된 사람
- ☞ 신청방법 :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
- ※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고용노동부 추천) 참고



04. 취업지원프로그램(CAP@) 교육(고용노동부)

Q1 CAP@ 교육은 무엇인가요?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층 구직자 직업지도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만 34세 이하)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및 구직 기술 향상으로 빠른 취업을 돕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입니다.

* CAP@(Career Assistance Program)

Q2 CAP@ 교육대상과 교육기간 및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대상 : 중·단기복무 전역예정간부로서 각 군에서 추천 및 교육파견 명령을 받은 자

☞ 교육기간 : 연중(2~11월) 교육 회차당 4일간 진행

☞ 교육장소 : 각 지역 고용센터(상황에 따라 온라인 진행)

* 고용센터별로 운영 여부가 다르므로 운영계획과 일정 등은 워크넷을 통해 확인

05. 유관기관 취업박람회

Q1 유관기관 취업박람회의 참여대상과 장소는 어디인가요?

☞ KB굿잡 취업박람회, 강원일자리박람회, 방위산업박람회 등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하며, 장소는 주로 수도권과 강원 등 주최기관의 위치 및 행사 성격에 따라 대형전시관 혹은 온라인 방식으로 연 5~7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Q2 유관기관 취업박람회의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전역예정장병들에게 사전에 기업 채용 동향 및 취업 전략, 직무 파트별 스킬, 면접 대응전략과 수강생이 희망하는 입사컨설팅, 기업 실무담당자와의 채용상담 등 취업지원이 주 내용입니다.

06.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Q1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 구직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 '21.9.7. 시행령 개정으로, 2개월 이내 전역예정 장병도 신청 가능

☞ 지원서비스

- ①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구직방향 설정
 - ② 직업능력 향상 지원 : 직업훈련, 직장체험, 인턴,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③ 취업알선 : 이력서·면접 클리닉, 동행면접
- ※ 취업 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지원 자격

- ① I 유형 : 재산 4억원 이하 + 15~69세(중위소득 60% 이하)
 18~34세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
- ② II 유형 : 재산 무관 + 18~34세 청년층
 15~69세 특정계층
 15~69세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35~69세 중장년층(중위소득 100% 이하)

Q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방법

- ①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
- ②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
- ③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④ 제출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부 록

관련 구비서류 및 각종 양식

제품 #1

□ 국방전직교육원 구직등록카드(예시)

성명 *	김길동	구직등록번호 *	200310 - 000261		사 진
생년월일 *	1971 ▾ 년 04 ▾ 월 02 ▾ 일				
군번 *	91-10001	군별 *	육군 ▾		
입관일자 *	1991 ▾ 년 02 ▾ 월 01 ▾ 일				
휴대폰 *	010 - 1111 - 1111	SMS 수신 *	☒ 수신 ☐ 거부		
계급 *	중령 ▾ ※ 예비역 진급자는 전역시 계급입력	병과 *	보병 ▾		
전역(예정)일자 *	2023 ▾ 년 11 ▾ 월 30 ▾ 일	출신구분 *	ROTC ▾		
복무기간 *	32 ▾ 년 10 ▾ 개월 (전역일 기준)	기수 *	91 기		
전직기간(구, 직업보도교육) 시작일자 *			2022 ▾ 년 12 ▾ 월 01 ▾ 일		
주소 *	13646 우편번호 검색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 11111				
자택전화	- -		소속(사·여단급) *	32보병사단 99보병여단	
전직희망분야	☒ 취업 ☐ 창업 ☐ 귀농/귀촌/귀어 ☐ 기타				
이메일	moti @ moti.or.kr 선택 ▾		이메일수신	☒ 수신 ☐ 거부	
학력사항 *					
학교명	전공/부전공	졸업연월	졸업구분	학위	소재지
대한고등학교 ▾		2005년 06월 ㉠	졸업 ▾		- 선택 - ▾ 추가
한국대학교 ▾	한국전공 ▾ 예체/ ▾	2013년 08월 ㉠	재학 ▾	학사 ▾	서울 ▾ 삭제
영국대학교 ▾	영국전공 ▾ 인문계열 ▾	2017년 04월 ㉠	졸업 ▾	학사 ▾	서울 ▾ 삭제



경력사항(군 및 사회경력) *					
※ 재임대의 경우 재임대전 복무기간을 아래 서식에 따라 입력, 준위의 경우 총 복무기간을 아래 서식에 따라 입력					
입사년월	퇴사년월	소속(회사명)	직책	계급(직급)	담당업무
2001년 01월	2001년 12월	21사단 63연대 2대대	소대장	소위	소대 병력 관리
2015년 01월	2017년 02월	21사단 63연대 2대대	인사과장	중위	부대 인사업무
2014년 07월	2017년 02월	육군 보병학교	교관	소령	보병학교 교관/교수
교육사항(군 포함)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구분		
진로교육	국방전직교육원	3일	전직지원교육		
결혼여부	기혼	시력	좌: 1	우: 1	
신장	175 cm	체중	70	kg	
자격사항					
분류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행기관		
국가자격사항	전기산업기사	2015년 09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타자격사항	서비스전문가	2016년 월 일	서비스전문교육기관		
희망근무지 *		희망직종 *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수도권	충청권	시설관리	인사·노무 인재개발		
외국어능력					
외국어명	회화	독해	작문		
영어	가능	능통	가능		

공인평가시험			
외국어명	평가시험	점수	
영어 ▼	TEPS ▼	0	점 - 선택 - ▼ 급 추가
- 선택 - ▼	- 선택 - ▼	0	점 - 선택 - ▼ 급 삭제
- 선택 - ▼	- 선택 - ▼	0	점 - 선택 - ▼ 급 삭제

컴퓨터능력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인터넷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검색키워드
예) 인사관리, 건축, 전기기능사, 해외취업, 전역장교, 회계, 무기체계, 시험평가 등

자기소개서(주요경력 상의 특징적 내용, 지원 사유 및 기타 특기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 바랍니다.) *5000자 이내	
제목 기본 자기소개서	☒ 대표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성격의 다른 면은 내성적인 면이 남아있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도 앞에 나서서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차분히 저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친구들은 저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가 깊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단점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쉽게 그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새로 시작할 일이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분야에서 큰 결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버지께서는 제가 보았던 어떤 분들보다 일에 대한 소신이 크신 분이시고 늘 신명나게 일을 하신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모자를 우연하다는 것이 맞을 때와 지소적이 과리가 필요한 일이므로 어떤 시점 지는 왜 아버지께서는 늘 잊만 하십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	
첨부파일	등록 ※ 첨부파일 (최대 1개, 개별 최대용량: 10MB) sample_recruit_list (1).xlsx 10

※ 국방전직교육원

- 홈페이지 : www.moti.or.kr
- 전 화 : 1588-9402
- 주 소 : (우:1364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83(창곡동)



■ 구직카드 작성요령 ■

- 각 항목별 내용 추가 시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작성
- 각 항목별 비어있는 내용은 “삭제” 버튼 클릭하여 열 삭제
(단, 각 항목별 최소 1개 이상 작성 필수)
- 경력사항 (군 및 사회경력)
 - 가급적 취업희망직종과 관련한 최근의 주요 군 또는 민간경력을 기재
단, 군 경력 기재 시는 여단급 까지 정확한 부대명칭과 직책 명시
 - “담당업무” 란에는 본인이 경험한 각각의 직책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기재

• 인사관리	• 보안 및 정보 관리	• 작전 지원 및 보급	• 기획/총괄
• 조직관리	• 교관/교수	• 장비정비/관리	• 장비시험평가
• 안전관리	• 전산개발/관리	• 방위력개선	• 대외협력
• 시설관리	• 매장관리	• 대내외 홍보	• 항공기(선박) 조정

- 자격사항 : 국가자격증과 민간(기타) 자격증 구분하여 작성
- 희망근무지
 - 전역 이후 취업 시 희망하는 근무지역 선택 (2순위까지)
 - 근무지역 무관 시 “전국” 선택
- 희망직종 : 희망직종은 입력코드에서 선택 (2순위까지)
- 검색키워드
 - 구인기업 또는 교육원 구직알선 및 정보제공시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
(키워드) 입력
 - * 예시 : 인사관리, 전기기능사, 시험평가, 무기체계, 시설관리 등
- 자기소개서
 - 주요경력 상의 특징적 내용, 어필하고자 하는 역량/경력 등 기술
(5,000자 이내)
 - 구인기업 추천 시 활용되는 자기소개서로 상세기술 필요
 - 개인 이력서, 경력기술서, 기타 자기소개서 등 파일 첨부 가능

붙임 #2

2024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 이 군 경	1급1항	고 령	3,681	97	2,761	6,539
		일 반	3,681	-	2,761	6,442
	1급2항	고 령	3,471	97	1,909	5,477
		일 반	3,471	-	1,909	5,380
	1급3항	고 령	3,323	97	1,163	4,583
		일 반	3,323	-	1,163	4,486
	2급	고 령	2,955	97		3,052
		일 반	2,955	-		2,955
	3급	고 령	2,762	97		2,859
		일 반	2,762	-		2,762
	4급	고 령	2,317	97		2,414
		일 반	2,317	-		2,317
	5급	무의탁	1,919	274		2,193
		고 령	1,919	97		2,016
		일 반	1,919	-		1,919
	6급1항	무의탁	1,751	274		2,025
		고 령	1,751	97		1,848
		일 반	1,751	-		1,751
	6급2항	무의탁	1,612	274		1,886
		고 령	1,612	97		1,709
		일 반	1,612	-		1,612
	7급	무의탁	608	274		882
		고 령	608	97		705
		일 반	608	-		608
* 간 호 수 당		· 1급1항 3,061, 1급2항 2,945, 1급3항 2,832, 2급 979				
* 전 상 수 당		· 90				
재일학도	무의탁		1,612	274		1,886
의용군인	고 령		1,612	97		1,709
	일 반		1,612	-		1,612
4·19혁명공로자			· 43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 이하 : 242/277/311, 4인 이상 : 300/336/370			



○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유 족	배 우 자	전몰·순직	무 의 탁	1,939	274	2,213
			무의탁부모부양	1,939	149	2,088
			고 령	1,939	149	2,088
			일 반	1,939	-	1,939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681	274	1,955
			무의탁부모부양	1,681	149	1,830
			고 령	1,681	149	1,830
			일 반	1,681	-	1,681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617	274	891
			무의탁부모부양	617	149	766
			고 령	617	149	766
			일 반	617	-	617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	무 의 탁	1,906	274	2,180
			독 자 사 망	1,906	274	2,180
			고 령	1,906	97	2,003
			일 반	1,906	-	1,906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654	274	1,928
			고 령	1,654	97	1,751
			일 반	1,654	-	1,654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85	274	859
			고 령	585	97	682
			일 반	585	-	585
		*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 몰 · 순 직		2,249	-	2,249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1,952	-	1,952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890	-	890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 이하 : 242/277/311, 4인 이상 : 300/336/370		
6·25 자 녀 수 당				· 제적자녀 : 1,613(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372, · 신규승계자녀 : 516(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 인헌 450, 화랑 455, 충무 460, 을지 465, 태극 470
참전명예수당	· 390

□ 고엽제후유의증 및 2세 환자 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1,175	866	568
후유증2세환자수당	2,093	1,626	1,306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 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 이 군 경	1급 1항	3,681	2,761	6,442
	1급 2항	3,471	1,909	5,380
	1급 3항	3,323	1,163	4,486
	2 급	2,955		2,955
	3 급	2,762		2,762
	4 급	2,317		2,317
	5 급	1,919		1,919
	6급 1항	1,751		1,751
	6급 2항	1,612		1,612
	6급 3항	1,083		1,083
	7 급	608		608
	* 간 호 수 당		· 상시 3,061/ 수시 2,041	
	* 전 상 수 당		· 90	
	*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100 / 미성년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 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 족	배우자	전몰·순직	1,939	1,939
		상이 1~5급	1,681	1,681
		상이 6급	617	617
	부 모	전몰·순직	1,906	1,906
		상이 1~5급	1,654	1,654
		상이 6급	585	585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몰·순직	2,249	2,249
		상이 1~5급	1,952	1,952
		상이 6급	890	890
	* 부양가족수당		· 미성년 자녀 100/ 미성년 제매 200	
	* 2명 이상 사망수당		· 274	
	* 고령수당(60세 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 이하 : 242/277/311, 4인 이상 : 300/336/370		



□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재 해 부 상 군 경	1급 1항		2,577	1,933	4,510
	1급 2항		2,430	1,337	3,767
	1급 3항		2,327	814	3,141
	2 급		2,069		2,069
	3 급		1,934		1,934
	4 급		1,622		1,622
	5 급		1,344		1,344
	6급 1항		1,226		1,226
	6급 2항		1,129		1,129
	6급 3항		759		759
	7 급		426		426
	* 간 호 수 당		· 상시 3,061, 수시 2,041		
	* 부양가족수당(6급 이상)		· 배우자 100 / 미성년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 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례당시 97		
유 족	배우자	사망	1,358		1,358
		1~5급 유족	1,177		1,177
		6급 유족	432		432
	부 모	사망	1,335		1,335
		1~5급 유족	1,158		1,158
		6급 유족	410		410
	자녀 (25세 미만 장애)	사망	1,575		1,575
		1~5급 유족	1,367		1,367
		6급 유족	623		623
	* 부양가족수당		· 미성년 자녀 100/ 미성년 제대 200		
	* 고 령 수 당(60세 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례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 이하 : 242/277/311, 4인 이상 : 300/336/370			

붙임 #3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상 이 군 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 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붙임 #4

민원이용 안내

담당부처(서)	전 화	담당부처(서)	전 화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02)748-6631~6	국방전직교육원	1588-9402
군인연금과	02)748-6671~2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실	02)820-4353, 4355, 4357
군인재해보상과	02)748-6851~2	국립서울현충원 민원실	02)813-9625
예비전력과	02)748-5249	국립대전현충원 민원실	042)822-0026
민원실	1577-9090	재향군인회 교환	417-0641
국군재정관리단 민원실	02)3146-6014 ~ 6	군인공제회 공제사업팀	02)2190-2063~5
퇴직연금과	02)3146-6481 ~ 5	회원퇴직급여	02)2190-2070, 2082, 2088
퇴직급여과	02)3146-6471 ~ 5	목돈수탁저축	
육군 전직지원정책과	042)550-7411	회원대여	02)2190-2073~8
일자리개발	042)550-7421	대표전화	1544-9090 / 1599-9090
/예비역협력과			
취업지원센터	042)550-7531		
민원실	042)550-6446~7	국민권익위원회	1588-1517
해군 일자리정책과	042)553-1151~6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	02)2100-3161
민원실	042)553-0632~3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공군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231~7	노동부 상담전화	1544-1350
민원실	042)552-1541~3	경찰청 민원전화	1566-0112
해병대 일자리정책과	031)8012-2811~3	서울시청 민원안내	국번 없이 120
인사운영과	031)8012-3156		
민원실	031)8012-3059		

붙임 #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1.>

정부24(www.minwon.go.kr)에
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기간 제외)			
제대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군복무 기 간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분리

군인연금 수급여부	수급[] / 미수급[]		
지원 사항	① 직업교육훈련	② 취업지원	③ 전직지원금
	④ 교육 지원	⑤ 보철구의 지급	⑥ 대부 지원
	⑦ 법률구조 지원	⑧ 주택의 우선 공급	⑨ 의료 지원
	⑩ 공공시설의 이용	⑪ 진로·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②부터 ⑦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그에 해당하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 ① 또는 ⑪의 지원을 받으려면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 별도 회원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신청인의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병적증명서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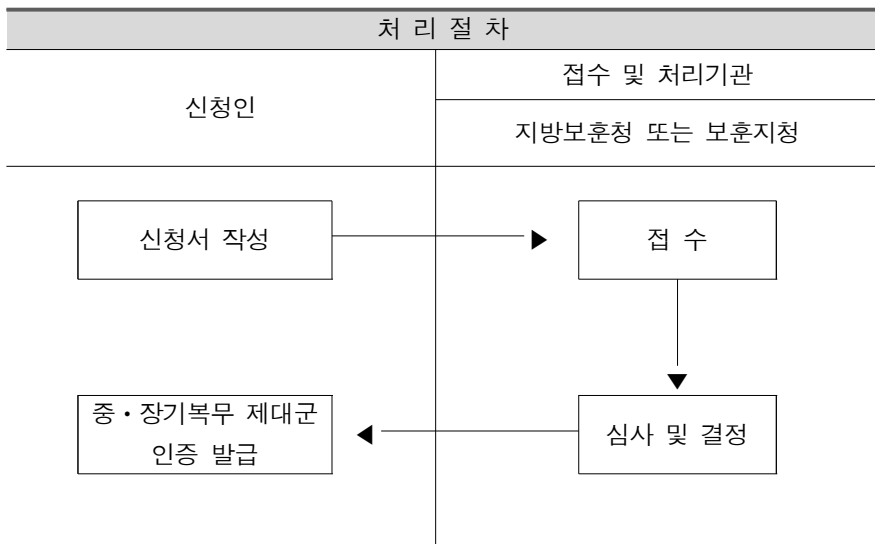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 리 질 차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붙임 #6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2. 10.>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제대 군인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제대군인 과의 관계			
취업 지원 대상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최종학력	학교 [] 졸업(예정) [] 중퇴 [] 휴학 [] 수료 [] 검정고시 [] 독학사	전공(부전공)	졸업성적 /		
	직업훈련	훈련기관	훈련과목	훈련기간 ~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자격· 면허	1 운전면허 [] 종, [] 대형 [] 보 통	2	3	4	
	외국어능 력	외국어명	수준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공인시험	등급·점수	취득일
	주요경력	취업처	직위	담당직종	재직기간 년 개월 년 개월	퇴직사유
	취업희망 조건	순위 1 2	희망직종	희망근무지역	희망직무내용(구체적으로)	
	그 밖에 희망 및 특기 사항(질병 등 건강상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취업지원 대상 여부 확인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대상 여부	[]대상	취업인	취업희 수 회
	[]비대상	원	
보훈특별고용(명), 특별채용(명)			
취업 추진사항			
일련번호	연월일	직종확보 및 상담안내 또는 상담내용	담당자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붙임 #7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군별	계급	군번		입대(입관)일		전역(예정)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훈련 희망 내용	교육기관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과정명		과정구분	오프라인()	교육기간	~	
		온라인()					
	정부 및 공공기관 연계 교육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교육비	총액(A+B)		자부담(A)		지원예정금액(B)		
	금용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 ※유의사항 - 교육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간이 교육수료확인서의 사실과 다를 경우, 교육수료확인서의 기간에 따라 지원됩니다.
- 교육과정,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사전 문의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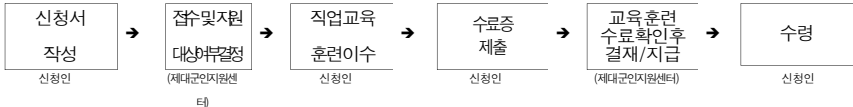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비납부 확인서류 1부 2. 비정규직 취업 확인용 증명서류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서 등 1부(해당 시)	수수료 : 없음
----------	---	----------

담당 상담사 확인사항

직업훈련 계획	(희망 훈련과정과 희망 취업분야와의 연관성 등 상담사 의견기재)		
수혜구분 : 신규 () 기수혜 ()	취업구분 : 미 취·창업 () 취·창업 ()		확인서명
교육기관 인증 여부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교육시설 (), 원격평생교육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법령에 의한 기관 (), 학교 (), 기타 ()		
중복수혜	교육기관명 (), 과목(), 기간(~)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 인

접수자	행정팀장	센터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 및 유의사항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고용보험자격(사업장명칭, 취득일, 상실일), 건강보험자격(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취득일, 상실일), 사업자등록여부, 공무원연금 가입내역(기관명, 임용일, 퇴직일)	자격조사 및 취창업 현황조사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교육수료자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식자료 포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관계기관 수료확인 명부 제공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부 장관(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적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감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교육비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는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및 전역 후 3년 이내의 재대군인 중 미취·창업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 신청일부터 교육종료일까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가. 취·창업상태에서 지원 신청한 경우(고용보험 자격취득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별도 확인)

나. 타인 양도, 교육기관과 결탁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 ■ 교육생 확인사항

• 본인은 현재 미 취·창업 상태입니다. - 단, 본인은 현재 취업상태이나 다음에 종사증입니다. - 창업상태이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 창업 1년 미만자 또는 사업자이나 국제청 소득금액상 최근 1년 월평균 소득이 월 최저임금 미만인 자입니다 • 본인은 국공립나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과 중복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료증을 제출하여 교육비를 청구하며, 기간 경과 시 교육비 지원(환급)을 포기합니다	☐ 예 ☐ 아니오 ☐ 기간제 ☐ 단시간 ☐ 파견직 ☐ 일용직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근로시작일
--	---	----------------------

위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대군인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8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1.17.>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제대군인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대군인 지원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신청인	구분			
		중기(),	장기()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구직활동 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6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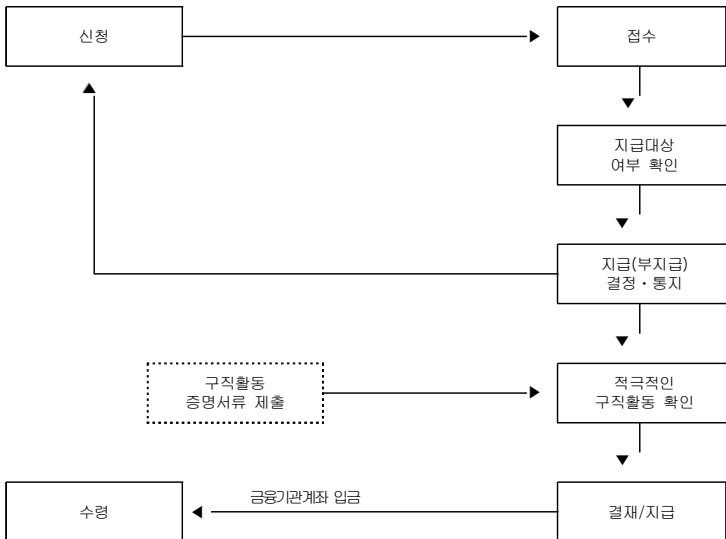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적극적인 구직활동 추진사항(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일련번호	연월일	적극적인 구직활동 내용	담당자

처리절차	
신 청 인	접수 및 처리기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제대군인지원센터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초본	인적사항 확인
군인퇴직연금급여 수급여부, 건강보험자격(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취득일, 상실일), 사업자등록여부	자격조사
전직지원금 지급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부 장관(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취업처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전직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 전직지원금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비대상으로서 지급되지라도 환수 조치됩니다.

가. 취업상태인 경우

나. 질병 등으로 근로의 능력이 없는 경우

다.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위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붙임 #9

국가보훈부 보훈(지)청 연락처

관 서 명	주 소 지	전 화 번 호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02)1577-0606 (044)202-5714 (044)202-5732 (044)202-5754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73 양지빌딩 3층	1666-9279
경북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1103호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층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경기남부보훈지청 별관 2층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10 춘천 B&I 지식산업센터 915호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 부산지방보훈청 4층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KT서마산지점 2층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대전지방보훈청 5층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자충부 3층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리로 208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층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6(한강로 1가 107)	(02)2125-0815
서울남부지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42(방배3동 985-8)	(02)3019-2300
서울북부지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50 나길 6(방학 1동 707-3)	(02)944-9260
경기남부지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031)259-1702
인천지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층	(032)430-0100
경기북부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89(의정부1동 238-8)	(031)843-5748
경기동부지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마북동)	(031)289-2311
강원서부지청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후평동 240-3)	(033)258-3609
강원동부지청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31(죽헌동)	(033)610-0606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중앙동4가)	(051)469-8991
울산지청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7(옥동)	(052)228-6500
경남동부지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도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5층	(055)981-5600
경남서부지청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82-5(초전동)	(055)752-3881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042)280-1114
충남서부지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오관리 488-2)	(041)630-3700
충남동부지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원성동)	(041)589-0912
충북남부지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분평동)	(043)285-3213
충북북부지청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230(호암동)	(043)841-8800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3층	(053)230-6010
경북북부지청	경상북도 예천군 행북1길 5(호명면)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1층	(054)820-9310
경북남부지청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55	(054)778-2600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리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2층	(062)975-6500
전라남부지청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2길 7(연향동 1692-6)	(061)720-3200
전남서부지청	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 29(용해동 490)	(061)273-0093
전북동부지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남로 10	(063)239-4500
전북서부지청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길 58-5	(063)850-3702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주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064)710-8411

붙임 #10

전국 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전화

지 역	고용(고용복지*)센터명	관 할 지 역	대표전화
서 울	서 울 고 용 복 지 * 센 터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02)2004-7301
	서 초 고 용 센 터	서초구	02)580-4900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강남구	02)3468-4794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송파구, 강동구	02)2142-8924
	성동광진고용복지+센터	성동구, 광진구	02)2047-9900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02)2077-6000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영등포구, 양천구	02)2639-2300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강서구	02)2063-6700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종랑, 노원, 도봉	02)2171-1700
	강북성북고용복지*센터	강북구, 성북구	02)3406-0900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3282-9200
부 산	부 산 고 용 복 지 * 센 터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051)860-1919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	사하구	051)520-4900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60-7100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북구, 사상구, 강서구	051)330-9900
대 구	대 구 고 용 복 지 * 센 터	대구 중구, 수성구	053)667-6000
	대구강북고용복지*센터	대구 북구, 군위군	053)606-8000
	대구동부고용복지*센터	대구 동구	053)667-6900
	경 산 고 용 복 지 * 센 터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053)667-6800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053)605-6500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군	053)605-9510
	칠 곡 고 용 복 지 * 센 터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054)970-1919
인 천	인 천 고 용 복 지 * 센 터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032)460-4701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인천 부평구, 계양구	032)540-5641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인천 서구, 강화군	032)540-2001



지 역	고용센터명	관 할 지 역	일반전화
광주	광주 고용복지+센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전남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062)609-8500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 광산구, 전남 영광군, 함평군	062)960-3200
대전	대전 고용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동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충남 금산군	042)480-6000
울산	울산 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052)228-1919
경 기	부천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032)320-8900
	김포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031)999-0900
	의정부 고용복지+센터	의정부시, 포천시	031)828-0900
	구리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구리시	031)560-5800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031)560-1919
	동두천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031)860-1700
	고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031)920-3937
	양주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양주시	031)849-2300
	파주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031)860-0401
	수원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일부(금곡동, 기산읍, 능동, 동탄면, 목동, 반송동, 반월동, 반정동, 방교동, 병점동, 산척동, 석우동, 송동, 신동, 연천동, 오산동, 장지동, 중동, 진안동, 청계동)	031)231-7864
	용인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031)289-2210
	화성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수원 관할지역 제외)	031)290-0800
	성남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031)739-3177
	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광주시, 양평군	031)799-2760
	이천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031)644-3820
	하남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031)730-7000
	안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군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031)463-0700
	광명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02)2680-1500
	안산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031)412-6600
	의왕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031)463-7460
	시흥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031)496-1900

지 역	고용센터명	관 할 지 역	일반전화
경기	평택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031)646-1205
	안성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성시	031)686-1705
	오산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031)8024-9805
강원	춘천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00
	강릉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033)610-1919
	속초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033)630-1919
	원주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033)769-0900
	태백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태백시	033)552-8605
	삼척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0
	영월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371-6260
충북	청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홍덕구	043)230-6700
	옥천 고용복지+센터	충북 옥천군, 영동군	043)730-4100
	충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043)850-4000
	제천 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단양군	043)640-9310
	음성 고용복지+센터	충북 음성군	043)880-8600
충남	공주 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041)851-8501
	논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계룡시	041)731-8600
	세종 고용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	044)865-3219
	천안 고용복지+센터	충남 예산군, 당진군,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041)620-7400
	아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아산시	041)570-5500
	보령 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041)930-6200
	서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태안군	041)661-5600
전북	전주 고용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덕진구, 완산구	063)270-9100
	남원 고용복지+센터	전북 남원시, 순창군	063)630-3900
	정읍 고용복지+센터	전북 정읍시	063)530-7500
	익산 고용복지+센터	전북 익산시	063)840-6500
	김제 고용복지+센터	전북 김제시	063)540-8400
	군산 고용복지+센터	전북 군산시	063)450-0600
	부안 고용복지+센터	전북 부안군, 고창군	063)580-0501
전남	목포 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061)280-0500
	해남 고용복지+센터	전남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061)530-2900



지 역	고용센터명	관 할 지 역	일반전화
전 남	순 천 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061)720-9114
	여 수 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061)650-0155
	광 양 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061)798-1900
경 북	포 향 고용복지+센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포항시 남구, 북구	054)280-3000
	경 주 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주시	054)778-2500
	구 미 고용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칠곡군	054)440-3300
	김 천 고용복지+센터	경북 김천시	054)429-8900
	영 주 고용복지+센터	경북 영주시, 봉화군	054)639-1122
	문 경 고용복지+센터	경북 문경시, 상주시	054)556-8200
	안 동 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054)851-8061
경 남	창 원 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055)239-0900
	마 산 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합안군, 의령군, 창녕군	055)259-1500
	김 해 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055)330-6400
	밀 양 고용복지+센터	경남 밀양시	055)350-2800
	양 산 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055)379-2400
	진 주 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055)753-9090
	하 동 고용복지+센터	경남 하동군, 남해군	055)880-5544
	거 창 고용복지+센터	경남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949-6589
	통 영 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고성군	055)650-1800
	거 제 고용복지+센터	경남 거제시	055)730-1919
제 주	제 주 고용복지+센터	제주시	064)759-2450
		서귀포시	064)710-4438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

붙임 #11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 6서식]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 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요청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8호의7서식(취업 예정 확인서) 2.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
------	--

작성방법

- 소속·직위·직급 등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붙임 #12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 서식]

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 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 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		취업예정일
채용 경위 및 채용 후 역할	채용방법 ※ 공모·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채용이유		
	채용 후 담당업무		
	역할 및 활용계획		
작성자		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기관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붙임 #14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 서식]

업무내역서(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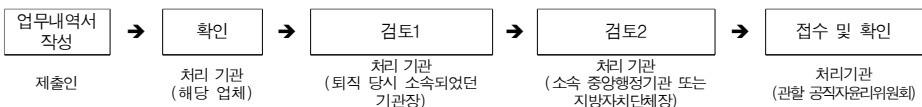
제출구분	퇴직일 기준 1년차	~	퇴직일 기준 2년차	~
업무취급승인 심사현황	심사일		심사결과	
제출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퇴직일			
	퇴직 전 2년간 소속직위 등			
취업기관 현황	기관명		취업직위	
	취업일		기관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내용			
	담당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			
업무 활동 내역	월별	주요 업무활동내역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취업기관 장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자 _____ 취업기관장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문서 접수·처리 목록 등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업무 처리절차



붙임 #15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20.10.8.>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학교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보조사업의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보조사업의 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필요한 경비 총액	지급받으려는 보조액	자기자본의 부담액	
보조금 송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대군인(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학교장)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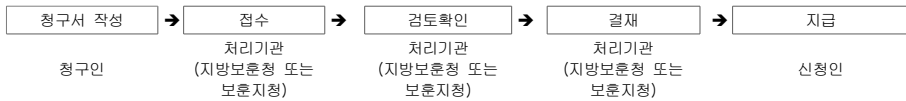
첨부서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확 인

접 수	연월일	번호	결 재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붙임 #16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10. 8.>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교육 지원 대상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과		학년	
교육 지원 기산일(시작일)				용도	입학금 및 수업료 국고보조	
제출처 (학교명)						

위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 훈 지 청 장

직인

이 증명은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 위 학생에게 휴학·퇴학·정학 등의 취학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7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연금 외 소득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연금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연금증서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에 [] 아니요
	주소		
신고 내용	소득 종류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법인명(상호)	
	직장(사업장) 주소	직장(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예상소득금액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금지급정지액의 산정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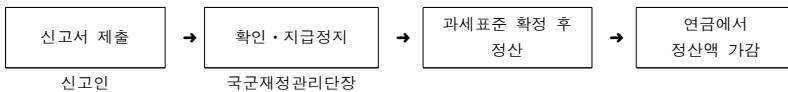
신고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작성방법

1. 신고내용의 소득 종류란에는 해당 소득의 종류에 “√” 표시를 하십시오.
2. 신고내용의 사유 발생일란에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개업 연월일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입사 연월일을 적으십시오.
3. 신고내용의 예상소득금액란에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소득금액을 적으십시오.
 ※ 과세표준 확정 후 실제 소득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연금지급정지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 연금수급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18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연금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연금증서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e-mail
신청 내용	사유 [] 퇴직(폐업) [] 소득변동	소득 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변동일(퇴직일·폐업일)	변동 소득금액	
	세부 사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등 해당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봉계약서 사본 등 해당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사업소득의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휴업사실 증명원 등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근로소득의 경우: 퇴직(경력) 증명서, 인사발령문 등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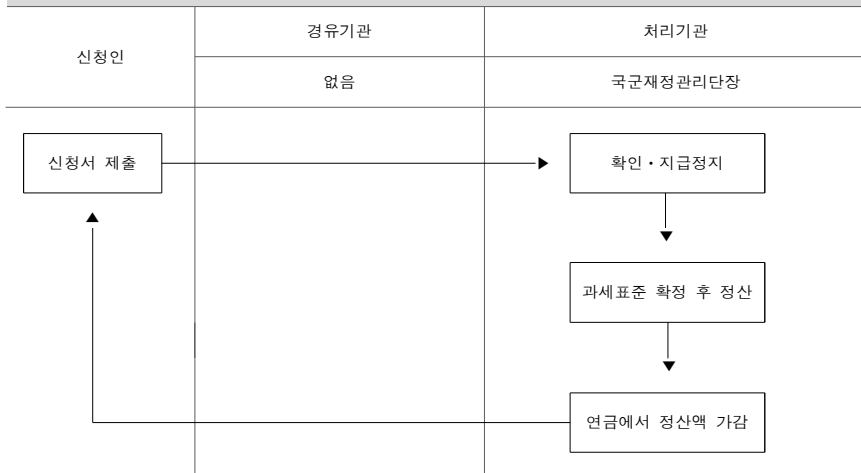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연금수급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신청내용의 변동일란에는 퇴직 또는 폐업을 한 날 등 소득이 변동된 날짜를 적으십시오.
3. 신청내용의 변동 소득금액란에는 당초 소득액에서 변동된 소득액을 적으십시오.
※ 과세표준 확정 후 실제 소득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연금지급정지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4. 신청내용의 세부 사항란은 변경 사유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연금수급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19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2.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e-mail)							
가입내용	연금종류		가입·재직(복무) 기간				퇴직급여 등 수령 여부	
	국민연금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공무원연금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령 [] 미수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령 [] 미수령
	군인연금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령 [] 미수령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령 [] 미수령
※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으신 분은 아래의 반납금 납부란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금 납부	퇴직급여 등 지급기관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일							
	반납금 납부방법		[] 일시 납부		[] 분할 납부(회)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관계			
	주소							
	신청인 확인			기관장 확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국군재정관리단장/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사실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붙임 #21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2.18.>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사망자와의 관계	동 순 위 수급권자	[] 단 독 [] 동순위자(명)	대 표 자 선정여부	[] 선 정 [] 미선정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	
동 순 위 수급권자	번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대표자 선정		※장애여부
				선정일	날 인	
	①		-			
	②					
	③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청구인과의 관계		
	주소					
	청구인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국군재정관리단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4 전역간부안내서

발행일 2024년 2월 27일
편집처 일자리정책과
발행처 대한민국 국방부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 M24010082



신고유형
보건법/테러법·보안사고(위법)
외국통/방산 스파이·군사기밀유출

성급내역
간첩선·간첩 :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 최고 1억원

신고방법
한국 어디든 1337
온라인 신고 www.dcc.mil.kr

국방 헬프콜 1303

병영생활 고충 상담
군범죄·성폭력 신고/상담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사이버 신고/상담은 **국방 헬프콜** 검색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